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2019. 12

오종현 · 김우현 · 권성오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2019. 12

오종현 · 김우현 · 권성오

서 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계에 대한 공적현물이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등이 현재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현물이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최근 정부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질의 교육, 의료, 주거 서비스는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 역할의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적현물이전이 가계에 어떻게 귀착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 이유로 현물이전에 대한 추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금이전과 달리 현물이전은 가계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가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본인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신뢰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물이전은 소비지출 등의 정보를 토대로 추정해야만 한다. 다만 대부분의 미시자료에 추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그 추정 또한 많은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계에 제공되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특히, 기존연구가 현물이전을 추정하기 위해 하나의 미시자료에 포함된 제약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정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의료혜택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의료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주거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 주거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 및 보육을 포함한 현물이전의 종합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론 개발을 통해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현물이전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도 제시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현물이전 추정 방법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물이전의 포괄범위와 자료 활용 및 처리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종현, 김우현, 권성오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교육 및 보육 혜택 관련 추정은 권성오 박사, 의료혜택 부분은 김우현 박사, 주거혜택 부분은 오종현 박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연구 착수단계부터 최종 출판단계까지 많은 검토와 조언을 해주신 서울시립대의 박기백, 송헌재 교수, 통계청의 김서영 과장, 그리고 본원의 윤성주, 우진희 박사께 감사드린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동료 박사님들과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최종 출판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주신 본원의 김평강 선임연구원, 황미연, 이은아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그 밖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목적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정책에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최근 현물이전을 통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있고, 의료 관련 정책으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거 관련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등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지원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및 보육은 유·초·중·고 등교육을 위한 공교육 정책과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정책의 효과를 포함한다. 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이 대상인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효과를 측정한다.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편익의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다. 한편, 정책 모의실험에 대한 예시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가계의 현물이전 규모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선행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계에 귀착되는 전체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하나의 미시자료에 포함된 정보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현물이전 유형별로 적

합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미시자료 분석 시 현물이전 관련 총량에 대한 정보나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특정 기준으로 통합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미시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적용한 기존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물이전의 특성 상 하나의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것 보다는 각 현물이전 유형별로 적합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기초로 분석한다. 또한 주거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주거실태 관련 정보가 풍부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한편,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해서는 현물이전 추정에 적합한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유경준 외(2018)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두 가지 이상의 미시자료를 이용하더라도 하나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물이전 규모를 통합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개별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별도로 살펴보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현물이전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규모 추정 시 해당 현물이전 정책에 적합한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를 일관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대표하여 소득 분배지표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며, 정부 재분배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기준이 되는 통계이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현물이전 규모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식별 가능한 가구의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한편, 교육 및 보육 관련 현물이전은 별도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부문의 현물이전 규모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를 대상으로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한다. 세 부문의 현물이전 추정 범위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및 보육 부문의 현물이전은 영아(만 0~2세), 유아(만 3~5세), 초중고,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을 통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수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생산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등을 이용하여 각 학교급의 1인당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생산비용을 산출하였다. OECD SOCX 기준을 따라 교육과 보육을 목적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해당 부문의 현물이전 혜택으로 간주하되 교육청 운영 등을 위한 경상비용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학교급별 혜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수혜 가구원에게 할당되었다.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를 추정한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한 정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료패널조사』에는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의료비 지출, 소득, 가구원 수, 고령 가구원 수, 아동 수, 의료급여 수혜 대상 여부 등에 회귀분석한 뒤, 해당 회귀방정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각 가구에 적용하여 의료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거 부문의 현물이전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동일한 요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의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로 정의한다. 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임대가구의 공공임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거주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현물이전 규

모는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공공 임대주택 편익을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공동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 특성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뒤, 해당 회귀방정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에 적용하여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4.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물이전 정책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가계에 귀착되는 평균 현물이전 규모는 617.5만원이다. 이중 교육을 통한 지원이 333.7만원,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243.3만원으로 현물이전 전체에서 각각 54.04%와 39.40%를 차지한다. 현물이전 전체 규모인 617.5만원은 평균적인 가계의 정상소득인 5,704.8만원의 약 10.8%에 해당된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평균적으로 정상소득의 약 10.8%가량에 해당되는 규모의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각 가계는 해당 서비스를 각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지출하여 다른 소비지출이나 저축을 그만큼 할 수 없었거나, 다른 소비지출이나 저축을 그 정도까지 줄이지 않았다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서비스를 현재 수준만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지출 수준은 삶의 질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서비스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다. 특히, 교육은 인적자본 형성을 통해, 의료는 건강한 신체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현물이전 정책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폭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현물이전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소득 1분

위 계층의 경상소득에서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06%에 달한다. 반면 소득 10분위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4.02%로 감소한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현물이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조정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현물이전)의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는 각각 23.23%, 36.46%, 27.49%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저소득층을 표적하는 현물이전 정책이 소득 분배지표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시킨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현물이전 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50㎡ 이하)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따른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고 각 정책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교 무상교육은 9.3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는 3.3만원,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은 2.9만원의 현물이 각 가계에 평균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모두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각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할 경우 현물이전 규모가 가장 작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가 각각 0.29%, 1.02%, 0.69%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물이전 규모가 더 큰 고교 무상교육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보다도 더 큰 폭의 개선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소형에 국한하여 공급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형 국민임대주택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요건이 엄격하여 다른 현물이전 정책과 비교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혜택이 더 집중된다.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물이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을 잘 표적한다면 재분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물론 현물이전의 재분배 기능은 해당 정책의 다양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한정된 자원하에서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목 차

I. 서론	21
II. 현물이전 현황	24
1. 통계청 2018년 발표 자료	24
2.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25
3. OECD 회원국의 현물이전 규모 비교	28
III. 교육 및 보육혜택 추정	31
1. 분석 개요	31
2. 우리나라의 교육 및 보육 재정	32
가. 교육재정	32
나. 보육재정	39
3. 교육혜택 추정	41
가. 초중고 교육혜택 추정	41
나. 고등교육 교육혜택 추정	53
다. 유아 교육혜택 추정	54
4. 보육혜택 추정	57
IV. 의료혜택 추정	66
1. 분석 개요	66
2. 의료 공적현물이전 추정 선행연구	69
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선행연구	69
나. 『재정패널조사』 자료 활용 선행연구	73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선행연구	74

3. 실증분석	75
가. 분석 방법 소개	75
나. 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미시자료 매칭(parametric micro under the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77
다. 실증 분석 전략	79
라. 분석 결과	86
V. 주거혜택 추정	92
1. 분석 개요	92
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제도	93
가. 주거급여	93
나. 금융지원	95
다. 공공주택 공급	96
3.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임대료 편익 추정	99
가. 활용자료	99
나. 기초자료의 특성	100
다. 임대료 편익 추정 방법	110
라. 임대료 편익 추정 결과	111
4.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결	121
가. 연결 방법	121
나.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비교	122
다. 공공임대주택 편익 추정	124
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추정	126
VI. 현물이전 추정 결과	130
1. 추정된 현물이전 총량	130

2.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	131
3. 현물이전 반영 시 소득 분배지표 변화	137
VII. 현물이전 정책 효과 분석	141
1. 분석 개요	141
2. 고교 무상교육 실시	141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153
4.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	159
가. 국민임대주택 제도 개요	159
나. 분석 방법	161
5. 종합효과	164
가.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	164
나.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	168
V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73
참고문헌	177

표목차

〈표 Ⅲ-1〉 부문별 예산 변화 추이	32
〈표 Ⅲ-2〉 재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34
〈표 Ⅲ-3〉 성질별 세출예산 분류기준	36
〈표 Ⅲ-4〉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36
〈표 Ⅲ-5〉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규모(2017년)	37
〈표 Ⅲ-6〉 고등교육기관의 회계별 교육비 규모(2017년)	38
〈표 Ⅲ-7〉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구조의 변화	38
〈표 Ⅲ-8〉 정부 각 부처의 고등교육비지원 현황(2017년)	39
〈표 Ⅲ-9〉 2017년 보육예산(국비기준)	40
〈표 Ⅲ-10〉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기타 교육지출비용	42
〈표 Ⅲ-11〉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총인건비 및 교원 호봉 비율	43
〈표 Ⅲ-12〉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인건비	44
〈표 Ⅲ-13〉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공교육비	45
〈표 Ⅲ-14〉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국공립 학생수 및 비율	47
〈표 Ⅲ-15〉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비	48
〈표 Ⅲ-16〉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50
〈표 Ⅲ-17〉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52
〈표 Ⅲ-18〉 2017년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54
〈표 Ⅲ-19〉 2017년 유아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56
〈표 Ⅲ-20〉 2017년 보육예산(국비기준)	58
〈표 Ⅲ-21〉 2017년 영아 1인당 보육혜택 할당금액	59
〈표 Ⅲ-22〉 분석 자료의 출처 목록	59
〈표 Ⅲ-23〉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구조 및 해설	60
〈표 Ⅳ-1〉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혜택 추이	70

〈표 IV-2〉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혜택 추이	70
〈표 IV-3〉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혜택 추이	71
〈표 IV-4〉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혜택 추이	72
〈표 IV-5〉 사회지출수혜(현물급여)의 소득계층별 금액 분포	72
〈표 IV-6〉 소득계층별 현물급여 수혜 분포(2009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73
〈표 IV-7〉 소득분위별 의료수혜	74
〈표 IV-8〉 소득 5분위별 사회적 현물혜택 및 의료부문 현물혜택	75
〈표 IV-9〉 각 자료 소득 정의 비교	83
〈표 IV-1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85
〈표 IV-11〉 기초통계량(『한국의료패널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기준)	87
〈표 IV-1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	88
〈표 IV-13〉 소득분위별 평균 의료 수혜 규모(2017년 기준)	89
〈표 IV-14〉 소득분위별 평균 의료 수혜 규모 민감도 분석(2017년 기준)	91
〈표 V-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94
〈표 V-2〉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94
〈표 V-3〉 주거급여 지원 실적	94
〈표 V-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96
〈표 V-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96
〈표 V-6〉 공공주택 유형	97
〈표 V-7〉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98
〈표 V-8〉 건설주체별 등록임대주택 현황	98
〈표 V-9〉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98
〈표 V-10〉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99
〈표 V-11〉 임대주택가구 관측치	101

〈표 V-12〉 임대주택가구의 구성	101
〈표 V-13〉 임대주택 유형 및 점유 유형별 관측치(2017년)	102
〈표 V-14〉 월간 균등화 경상소득 기초통계량	103
〈표 V-15〉 보증금 및 월간 임대료 기초통계량	106
〈표 V-16〉 지역별·규모별 전월세전환율	107
〈표 V-17〉 월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기초통계량	108
〈표 V-18〉 임대료 회귀분석 결과	112
〈표 V-19〉 회귀분석 해석 예시	115
〈표 V-20〉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기초통계량	116
〈표 V-21〉 균등화 임대료 편익 기초통계량	119
〈표 V-22〉 거주주택 관련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식별 정보 비교	123
〈표 V-2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 결과	125
〈표 V-24〉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추정 결과	127
〈표 VI-1〉 추정된 현물이전 총량	131
〈표 VI-2〉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비균등화 가구 단위)	133
〈표 VI-3〉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중(비균등화 가구 단위)	134
〈표 VI-4〉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균등화 개인 단위)	136
〈표 VI-5〉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중(균등화 개인 단위)	136
〈표 VI-6〉 현물이전으로 인한 분배지표 변화(비균등화 가구 단위)	138
〈표 VI-7〉 현물이전으로 인한 분배지표 변화(균등화 개인 단위)	140
〈표 VII-1〉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안)	142
〈표 VII-2〉 주요국의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교육 대상	143
〈표 VII-3〉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학년별 단계적 도입)	146
〈표 VII-4〉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전체 학년 도입)	147

〈표 VII-5〉 연도별·유형별 학생수 추계(2019년 실시)	148
〈표 VII-6〉 연도별·유형별 1인당 혜택	149
〈표 VII-7〉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	150
〈표 VII-8〉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152
〈표 VII-9〉 연도별,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154
〈표 VII-10〉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보험료	155
〈표 VII-11〉 법정본인부담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	157
〈표 VII-12〉 본인부담 상한제도 변화로 인한 소득 분위별 의료 수혜 규모 변화 ...	158
〈표 VII-13〉 국민임대주택 소득 요건 적용 기준 소득	159
〈표 VII-1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160
〈표 VII-1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 제도	160
〈표 VII-16〉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률 추정 결과	162
〈표 VII-17〉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비균등화 가구 단위) ·	166
〈표 VII-18〉 소득 대비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비중 (비균등화 가구 단위)	166
〈표 VII-19〉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균등화 개인 단위)	167
〈표 VII-20〉 소득 대비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비중 (균등화 개인 단위)	168
〈표 VII-21〉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비균등화 가구 단위)	171
〈표 VII-22〉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균등화 개인 단위)	172

그림목차

[그림 II-1] 현물이전 구성비	24
[그림 II-2] 국민계정상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 규모 추이	26
[그림 II-3] 국민계정상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 비중 추이	26
[그림 II-4] 국민계정상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의 상대적 비중 추이	27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교	28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수혜금 비교	29
[그림 II-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교	30
[그림 III-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구조(2017년 최종예산 기준)	33
[그림 III-2]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기타 교육지출비용	42
[그림 III-3]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인건비	45
[그림 III-4]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교육비	46
[그림 III-5]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국공립 학생수	48
[그림 III-6]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비	49
[그림 III-7]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51
[그림 III-8]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52
[그림 III-9] 2017년 유아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57
[그림 IV-1] 통계적 매칭	78
[그림 IV-2] 진료비 구성	80
[그림 IV-3]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통계적 매칭 환경	81
[그림 IV-4] 소득의 정의 및 구조	82
[그림 V-1] 공공주택 체계	97

[그림 V-2] 주택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장기공공임대)	104
[그림 V-3] 주택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단기공공임대)	104
[그림 V-4] 주택 유형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장기공공임대)	109
[그림 V-5] 주택 유형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단기공공임대)	109
[그림 V-6] 지역별 경상소득과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의 결합분포	117
[그림 V-7] 지역별 경상소득과 임대료 편익의 결합분포	120
[그림 VII-1] 학교단계별 진학을 추이(1965~2017년)	142
[그림 VII-2]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	151
[그림 VII-3]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153

I. 서론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정책에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최근 현물이전을 통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있고, 의료 관련 정책으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등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지원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및 보육은 유·초·중·고 등교육을 위한 공교육 정책과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정책의 효과를 포함한다. 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이 대상인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효과를 측정한다.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편익의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다. 한편, 정책 모의실험에 대한 예시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가계의 현물이전 규모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조세나 재정지출 중 현금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물이전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조세나 공적현금이전과는 달리 현물이전은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 조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물이전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려면 가계별 현물이전에 대한 엄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 주거지원 등 특정 현물이전 분

야의 개별적인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물론, 성명재·박기백(2008), 박기백(2010), 오종현 외(2017) 등 복수의 현물이전제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존재하나, 해당 연구들은 하나의 미시자료에 포함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초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계에 귀착되는 전체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하나의 미시자료에 포함된 정보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현물이전 유형별로 적합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미시자료 분석 시 현물이전 관련 총량에 대한 정보나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특정 기준으로 통합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미시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적용한 기존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물이전의 특성상 하나의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것보다는 각 현물이전 유형별로 적합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계의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기초로 분석한다. 또한 주거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계의 주거실태 관련 정보가 풍부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한편,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해서는 현물이전 추정에 적합한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유경준 외(2018)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두 가지 이상의 미시자료를 이용하더라도 하나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물이전 규모를 통합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개별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별도로 살펴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현물이전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규모 추정 시 해당 현물이전 정책에 적합한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를 일관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

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대표하여 소득 분배지표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며, 정부 재분배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기준이 되는 통계이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현물이전 규모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식별 가능한 가구의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한편, 교육 및 보육 관련 현물이전은 별도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직접 적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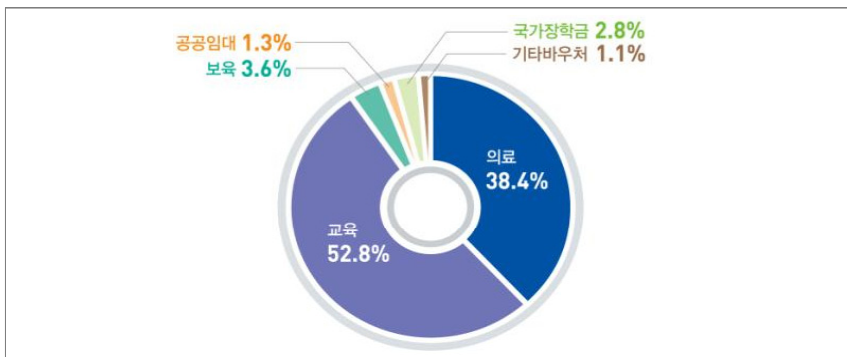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위 방법론 개발을 통해 현물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한다. 제Ⅱ장에서는 현물이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 제Ⅳ장, 제Ⅴ장에서는 각각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혜택의 추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제Ⅲ장~제Ⅴ장의 추정 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물이전의 규모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제Ⅶ장에서는 현물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제도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며, 제Ⅷ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현물이전 현황

1. 통계청 2018년 발표 자료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로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보육, 의료, 공공임대,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시험적으로 추정하여 2018년 11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균등화 소득 기준 가구당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약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며,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이다. 또한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에서 교육과 의료는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각각 3.6%와 1.3%를 차지하는 보육과 주거(공공임대)혜택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통계청 분석 기준으로 본 연구는 전체 현물이전의 약 96.1%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대부분의 현물이전을 포괄한다.

[그림 II-1] 현물이전 구성비



자료: 통계청(2018b),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 보도자료, p. 2

2.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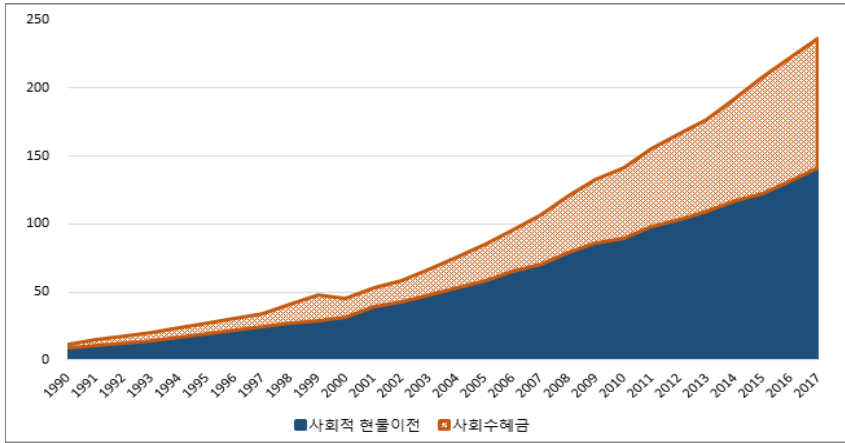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 규모에 대한 과거 추세를 국민계정을 통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제』(한국은행, 2015, pp. 196~197)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은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전액 및 건강보험 지급액, 무상교육 등 정부 최종소비지출 중 개별소비지출”이 사회적 현물이전에 포함된다. 한편,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이란 가계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예: 질병, 실직, 정년 등) 수취하게 되는 경상이전”으로 각종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¹⁾상 일반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약 9.2조원에 불과하던 절대적인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가 2017년에는 약 14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회적 현물이전의 절대적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물가상승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확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현물이전 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숙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명목 GDP로 통제할 추이를 살펴보다라도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6%였으나, 2017년에는 약 8.2%로 증가하였다.

1) 국민계정은 2015년 기준년에 대해서도 발표되었으나, 해당 자료는 현재 200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 현황 정리에서는 2010년 기준년에 대한 국민계정을 이용한다.

[그림 II-2] 국민계정상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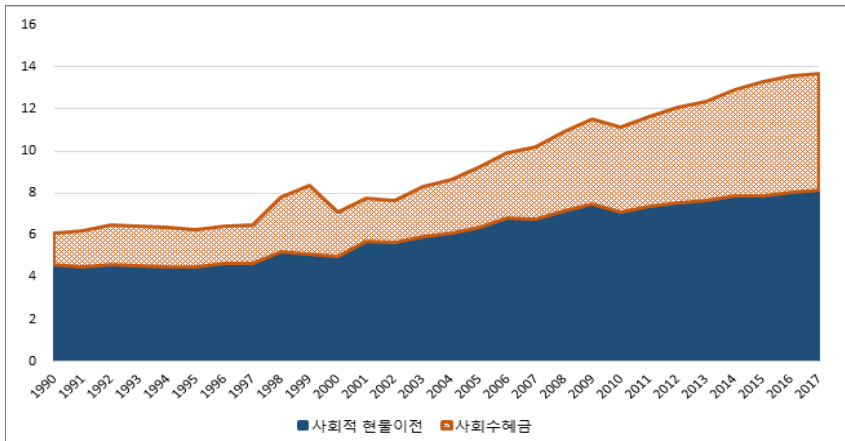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자료: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수혜금,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그림 II-3] 국민계정상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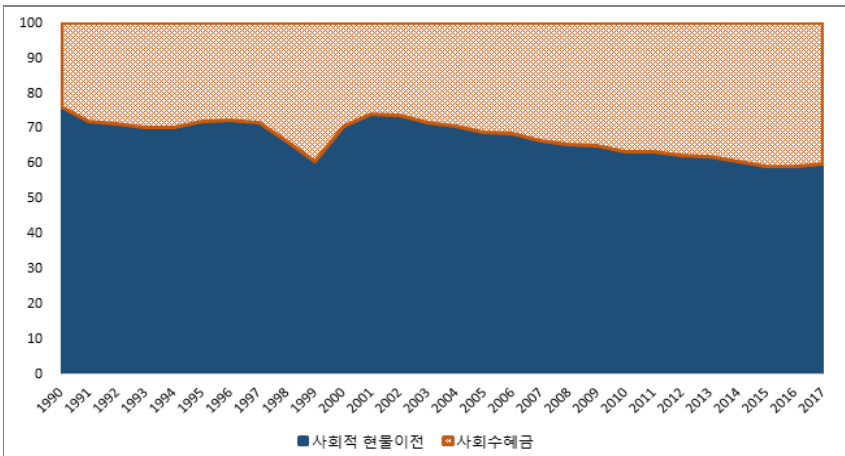


- 자료: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수혜금,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2.2.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한편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는 현금이전에 해당하는 사회수혜금보다 더 크다. 2017년의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141.3조원인 데 비해, 사회수혜금은 95.1조원이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비율로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약 8.2%인 데 비해, 사회수혜금은 5.5%였다. 이처럼 일반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현금이전인 사회수혜금 규모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사회적 현물이전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 사회지출 중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1년 전체 사회지출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약 74.0%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59.3%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9.8%로 2016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그림 II-4] 국민계정상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의 상대적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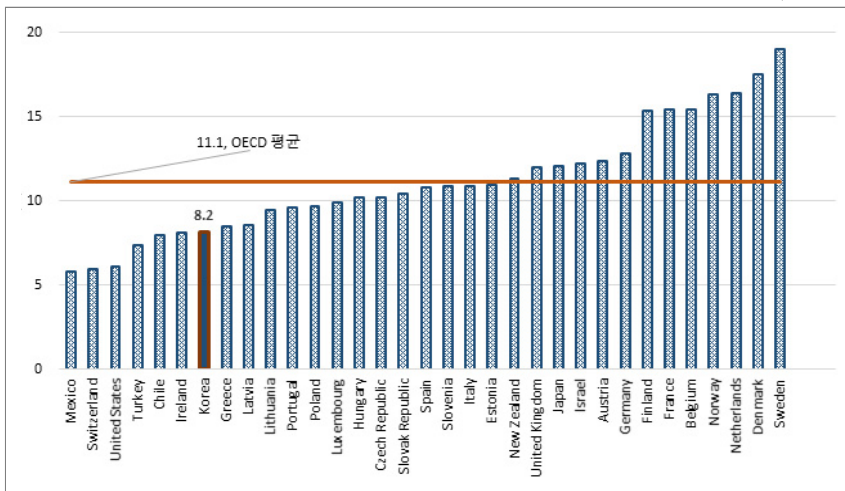
- 자료: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수혜금,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9. 3. 4)

3. OECD 회원국의 현물이전 규모 비교

앞에서 살펴본 국민계정상 우리나라 사회적 현물이전의 GDP 대비 비중은 과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8.2%이지만,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11.1%보다 약 2.9%포인트 낮다. 아이슬란드, 캐나다, 호주를 제외한 33개국 회원국²⁾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의 비중은 7번째로 낮다. 이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스위스, 미국, 터키, 칠레, 아일랜드 등이다.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교

(단위: %)



주: 터키는 2015년,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은 2016년, 그 외 국가는 2017년 기준

자료: OECD.Stat, National Account,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https://stat.oecd.org>(검색일자: 2019.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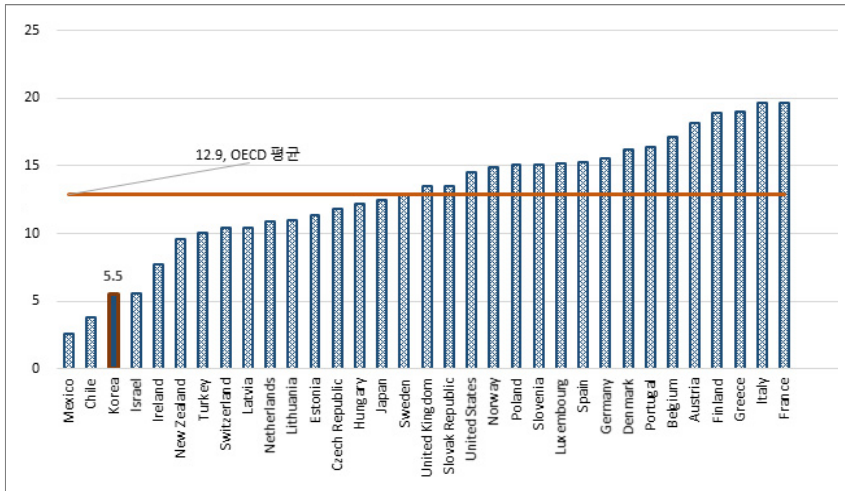
2) 아이슬란드, 캐나다, 호주는 사회적 현물이전 또는 사회수혜금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현물이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수혜금 또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의 OECD 회원국 평균이 12.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5%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7.4%포인트 낮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2개국이다.

사회적 현물이전과 사회수혜금을 합한 전체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다. 이 비율의 OECD 회원국 평균은 24.0%이지만, 우리나라는 13.7%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1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전체 사회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등 2개 국가다.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수혜금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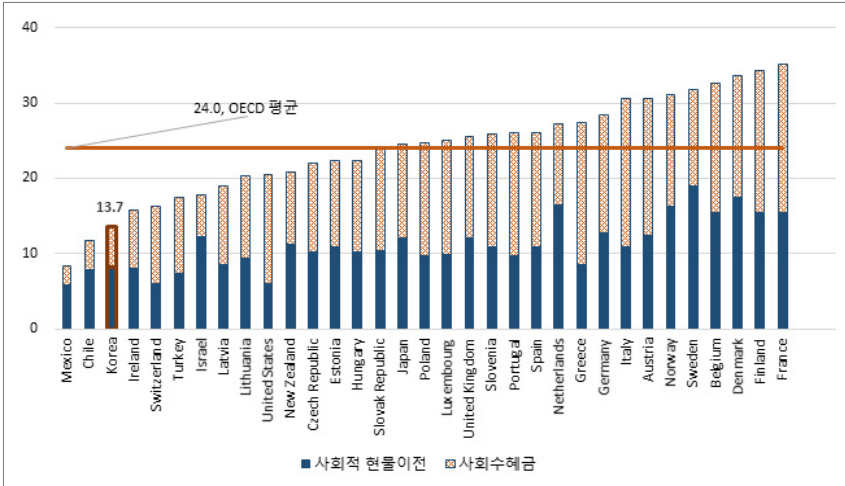


주: 터키는 2015년,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은 2016년, 그 외 국가는 2017년 기준

자료: OECD.Stat, National Account,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https://stat.oecd.org>(검색일자: 2019. 10. 16)

[그림 II-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교

(단위: %)



주: 터키는 2015년,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은 2016년, 그 외 국가는 2017년 기준

자료: OECD.Stat, National Account,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https://stat.oecd.org>(검색일자: 2019. 10. 16)

Ⅲ. 교육 및 보육혜택 추정

1. 분석 개요

이번 장에서는 교육 및 보육 부문의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수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생산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였다.³⁾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을 영아(만 0~2세), 유아(만 3~5세), 초중고,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으로 나누었고, 각 학교급의 1인당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생산비용을 산출하였다. OECD SOCX 기준을 따라 교육과 보육을 목적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해당 부문의 현물이전 혜택으로 간주하되 교육청 운영 등을 위한 경상비용은 제외하였다.⁴⁾ 이렇게 추정된 학교급별 혜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수혜 가구원에게 할당되었다.⁵⁾ 다만, 유경준 외(2018)와 통계청(2018b)은 1인당 교육 서비스 생산비용을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할당하였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평균을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교육·보육비 자료의 목록과 출처는 <표 Ⅲ-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이 유경준 외(2018), 통계청(2018b) 등의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점은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 예산 또는 회계 자료에 학생 납입금이 포함된 경우 학생부담액을 차감하여 혜택의 크기를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수요자(학생 및

3) 생산비용 접근법은 교육 및 보육 부문 현물이전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론이다.

4) 즉, 교원 인건비, 교육 운영 필요경비 등은 현물이전 혜택에 포함시켰지만, 교육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 행정비 등은 제외하였다(유경준 외, 2018).

5) 학교급별 혜택은 가구원의 교육수준 및 나이 정보를 토대로 할당되었는데, 구체적인 할당방법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학부모)가 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생납입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혜택은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학생납입금을 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⁶⁾ 대학교육의 현물이전도 교육비에서 학생이 납입한 등록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우리나라의 교육 및 보육 재정⁷⁾

가. 교육재정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2017년 기준 교육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9%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이 나머지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의 비중은 아주 작다.

〈표 III-1〉 부문별 예산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안
계	494,562 (20.5)	501,993 (20.3)	505,434 (19.3)	513,068 (19.1)	510,566 (19.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15,236 (17.3)	414,654 (16.8)	395,656 (15.1)	415,119 (15.5)	411,112 (15.3)
고등교육	73,395 (3.0)	83,661 (3.4)	106,023 (4.0)	93,793 (3.5)	95,274 (3.5)
평생·직업 교육	4,727 (0.2)	2,554 (0.1)	2,735 (0.1)	3,054 (0.1)	3,083 (0.1)
교육일반	1,205 (0.1)	1,124 (0.0)	1,020 (0.0)	1,101 (0.0)	1,098 (0.0)

주: 괄호 안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p. 1, (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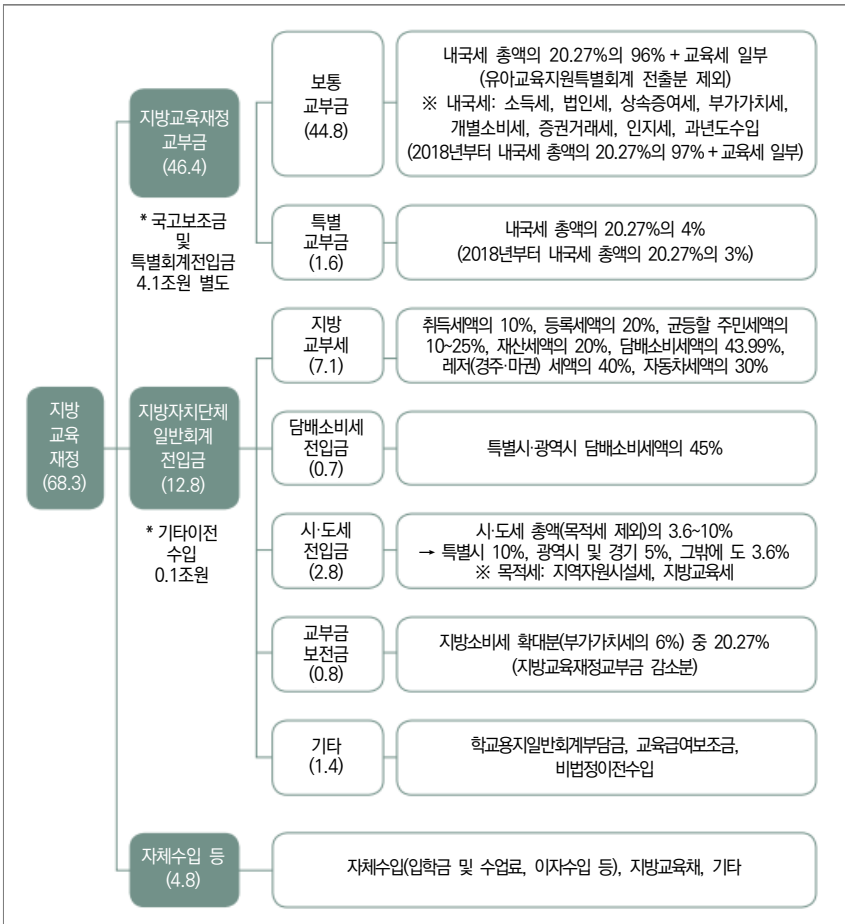
- 6) 여기에서 교육비란 정부가 교육 재정에 의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뜻한다.
7) 이하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관한 설명은 이상엽·안종석(2014)의 pp. 62~66와 국회예산정책처(2018)의 pp. 26~2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란 시·도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관할 학교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된다. 이전수입은 다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그림 III-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구조(2017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재정 2018』, p. 27.

수입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기본재원으로, 내국세 수입의 20.27%와 지방교육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삼는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는 지방세액에 일정비율을 부가세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이 있다. 자체수입에는 입학금, 수업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그 외로 지방교육채는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하는 경비이고, 주민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 아닌 기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총세입은 68.3조원 수준이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4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는 12.9조원 수준이며, 그중 지방교육세가 7.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체수입은 1.7조원으로 총세입 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

〈표 III-2〉 자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결산액	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	50,677,395	69.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66,712	64.28
보통교부금	44,808,354	61.85
특별교부금	1,758,358	2.43
국고보조금	169,801	0.23
특별회계전입금	3,940,881	5.4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916,184	17.83
법정이전수입	11,821,052	16.32
지방교육세전입금	7,028,806	9.7
담배소비세전입금	734,893	1.01
시·도세전입금	2,836,488	3.9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37,245	0.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60,789	1.33
교육급여보조금	22,831	0.03

〈표 III-2〉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결산액	비율
비법정이전수입	1,095,133	1.5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43,674	0.8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51,459	0.62
기타이전수입	109,335	0.15
민간이전수입	78,049	0.1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1,286	0.04
자체수입	1,700,098	2.35
입학금 및 수업료	946,839	1.31
사용료 및 수수료	24,180	0.03
자산수입	227,430	0.31
이자수입	110,218	0.15
기타수입 등	391,430	0.54
지방교육채 및 기타	7,040,453	9.72
지방교육채	1,143,123	1.58
교부금부담	1,143,123	1.58
자체부담	0	0
기타	5,897,330	8.14
순세계잉여금	2,049,875	2.83
보조금사용잔액	13,844	0.02
전년도이월금	3,833,611	5.29
합계	72,443,464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p. 20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는 경비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학교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2017년 세출자료를 보면 인건비 등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58%를 차지한다. 인건비에는 유·초·중등 교원 인건비 및 전문직, 행정직,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이 포함된다.

〈표 III-3〉 성질별 세출예산 분류기준

항목	내용
인건비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된 각급학교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출금 등에 포함됨
물건비	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인력운영 경비(민자사업운영비, 맞춤형 복지비,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등 제외)와 의무교육기관 교과서 구입비 등 ※ 교과서 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한 교육청은 전출금 등에 포함됨
이전지출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및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보상·보조 및 차입금 이자 등
자본지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유·무형 자산취득비, 민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금적립 등
상환지출	지방교육채무에 대한 원금 상환금
전출금 등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 전출금 ※ 민자사업운영비 포함, 단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민자사업운영비 제외
예비비 및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 등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p. 48

〈표 III-4〉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결산액	비율
인건비	38,048,015	57.99
교원	25,965,689	39.57
교육전문직원	463,978	0.71
지방공무원	3,901,086	5.95
사립학교 교직원	5,386,329	8.21
기타직	1,920,145	2.93
맞춤형복지비	410,788	0.63
물건비	2,169,288	3.31
이전지출	3,241,249	4.94
자본지출	7,094,526	10.81
토지매입비	500,919	0.76
건설비	6,159,529	9.39
유·무형 자산취득비	296,127	0.45
기타 자산취득비	137,952	0.21
상환지출	2,356,829	3.59
지방교육채	2,356,829	3.59

〈표 III-4〉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결산액	비율
전출금 등	12,668,381	19.31
공립학교	9,501,280	14.48
사립학교	3,167,101	4.83
예비비 및 기타	33,130	0.05
합계	65,611,419	10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p. 20

2) 고등교육 재정지원

2017년 기준 대학알리미에 정보가 공개된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426개이다. 이 중 국·공립기관의 수는 55개이며, 사립기관의 수는 371개이다. 총 교육비 규모는 국·공립기관의 경우 5조 9,555억원, 사립기관의 경우 24조 7,230억원 수준이다. 국·공립기관의 학생수는 511,802명이며, 사립기관의 학생수는 1,885,725명이다. 총교육비를 학생수로 나눈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기관의 경우 1,164만원, 사립기관의 경우 1,311만원이다.

〈표 III-5〉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규모(2017년)

(단위: 개, 백만원, 명, 천원)

구분	학교수	총교육비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국·공립	전문대	9	104,903	7,303	14,364
	대학	45	5,850,618	504,499	11,597
	대학원대학	1	0	0	0
	소계	55	5,955,522	511,802	11,636
사립	전문대	156	4,586,927	455,824	10,063
	대학	172	19,988,938	1,421,248	14,064
	대학원대학	43	147,114	8,653	17,002
	소계	371	24,722,980	1,885,725	13,111
전체	426	30,678,501	2,397,527	12,796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자: 2019. 10. 21)의 예·결산 공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III-6〉에서는 회계별 고등 교육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기관의 경우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고 있다.⁸⁾ 발전기금회계는 기부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이다. 2017년 기준 국·공립기관의 교육비는 대학회계가 68%를 차지하고, 산학협력단회계가 28%를 차지한다. 사립기관에서는 교비회계가 81%를 차지하고 산학협력단회계가 16%를 차지한다. 국공립기관에서 산학협력단회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 고등교육기관의 회계별 교육비 규모(2017년)

(단위: %)

구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총교육비
국·공립	전문대	76.7	0.1	18.7	0.3	4.2	100.0
	대학	68.1	0.8	28.1	0.7	2.3	100.0
	대학원대학	0.0	0.0	0.0	0.0	0.0	0.0
	소계	68.3	0.8	27.9	0.7	2.4	100.0
구분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총교육비
사립	전문대	85.8	-	10.9	0.2	3.0	100.0
	대학	79.6	-	17.7	0.6	2.1	100.0
	대학원대학	95.6	-	3.2	0.6	0.5	100.0
	소계	80.8	-	16.3	0.6	2.3	100.0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자: 2019. 10. 21)의 예·결산 공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III-7〉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구조의 변화

비고	종전		→	변경 후
	국고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대학회계
예산	국가 지원금	기성회비 등		국가 지원금 + 대학 자체 수익금
편성	정부	대학의 장 (기성회 위임)		대학의 장 (고유 권한)
심의·의결	국회	기성회 이사회		교내 재정위원회

자료: 나민주 외(2015),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설정 모형 연구』, p. 9, 〈표 II-2〉

8) 2015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대학회계를 도입하였다.

대학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크게 수요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엽·안종석, 2014). 이 중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이용하여 대학교육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교육비 지원은 대학에 직접 제공되거나, 장학금의 형태로 수요자에게 지급된다. <표 Ⅲ-8>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17년 고등교육에 지원한 금액은 총 13조원 수준으로 전체 교육비의 42.5%를 차지한다. 정부 지원액 중에서 교육부가 부담한 금액은 9조원 수준으로 정부 지원액 전체의 69.5%를 차지한다. 나머지 30.5%는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되었다.

<표 Ⅲ-8> 정부 각 부처의 고등교육비지원 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일반지원	학자금지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합계	정부지원/ 대학교육비
교육부	2,205,030	3,875,270	2,982,083	9,062,384	29.5
타 부처	3,136,254	61,486	786,424	3,984,165	13.0
합계	5,341,284	3,936,757	3,768,507	13,046,548	42.5

자료: 대학재정알리미(<http://uniarlimi.kaslo.or.kr/main>, 검색일자: 2019. 10. 21)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나. 보육재정

보육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Ⅲ-9>에 2017년 예산과 각 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2017년 보육예산은 총 5조 3,735억원 규모이다. 이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조 1,380억원 규모로 보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58.4%)을 차지한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22.8%), 어린이집 지원(17.8%)이 순서대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III-9〉 2017년 보육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 (본예산)	비중	해설	비고
합계	5,373,451	100.0%		
영유아보육료 지원	3,138,013	58.4%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9,24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771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8,817	0.5%		
어린이집 기능보강	6,447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개선	
어린이집 확충	22,370		국공립신축 90개소, 공동주택리모 델링 90개소, 장애아전문 확충 2개소	
어린이집 관리	24,758	0.5%		경상비용 으로 판단
보육사업관리	3,301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508		부모 및 영유아에게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727		교직원 보수교육, 보육자격관리 관련 운영비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92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 전관리 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 터링단 운영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74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학대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7,856		평가인증운영 및 사무국 지원	
어린이집 지원	957,679	17.8%		
공공형어린이집	55,82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후 품질관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24,184	22.8%	취학 전 영유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지원	경상비용 으로 판단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277

3. 교육혜택 추정⁹⁾

제3절에서는 유아 및 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현물이전의 크기를 추정한다.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대상으로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정확한 세부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선행연구를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유경준 외, 2018; 통계청, 2018b).¹⁰⁾

가. 초중고 교육혜택 추정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은 1인당 교육혜택에서 1인당 학생 납입금을 제외한 후 국공립 학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¹¹⁾

$$\text{학생 1인당 교육비} = [\text{기타 교육지출비용} + \text{인건비}] \div \text{학생수}$$

여기에서 기타 교육지출비용은 17개 교육청별 2018년 『교육통계연보』 중 ‘FY 2017 공립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출 합계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세출 합계는 정책 종류에 따라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일반 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 재무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각 정책의 사업 내용은 <표 Ⅲ-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0>과 <그림 Ⅲ-2>에서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기타 교육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등 학생수가 많은 곳에서 기타 교육지출비용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보다 지출비용이 높은 것도 학생수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 9) 무상교복, 무상급식, 장학금 등은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10) 사립 초·중등학교도 교육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의 약 13%를 차지한다.
11) 여기에서 교육비는 정부가 교육 재정을 통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뜻한다.

〈표 III-10〉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기타 교육지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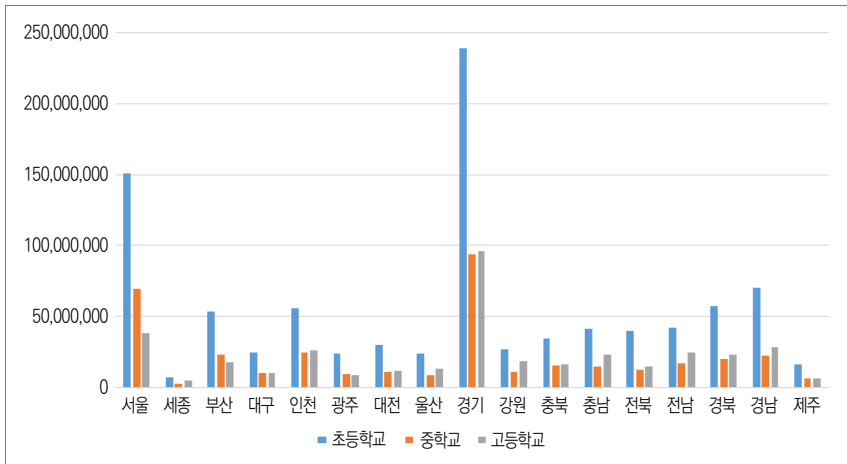
(단위: 만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50,672,463	69,546,890	38,214,304
부산	53,669,622	23,459,252	18,333,179
대구	24,535,791	10,423,286	10,612,260
인천	55,977,322	24,597,040	26,671,752
광주	24,344,751	9,372,314	8,887,935
대전	30,558,984	11,435,216	12,211,149
울산	23,808,990	9,178,890	13,621,134
세종	7,201,307	2,988,591	4,783,272
경기	238,788,035	94,184,974	96,337,949
강원	27,076,583	11,500,226	19,064,772
충북	34,818,724	15,489,958	16,890,072
충남	41,415,690	15,139,893	23,090,298
전북	39,789,416	12,490,368	14,745,374
전남	41,961,563	17,448,663	24,923,401
경북	57,288,937	20,673,186	23,529,286
경남	70,124,330	22,458,288	28,688,497
제주	16,886,036	6,607,953	6,901,597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8),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2〕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기타 교육지출비용

(단위: 만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8), 『교육통계연보』

인건비의 경우 지역별 학교급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text{인건비} = (\text{지역별}) \text{ 총인건비} \times (\text{지역별 학교급별}) \text{ 교원 호봉 비율}^*$$

$$* \text{교원 호봉 비율} = [\text{교원수} \times \text{호봉액}] \div \Sigma[\text{교원수} \times \text{호봉액}]$$

총인건비는 17개 교육청별 2017년 『교육통계연보』 중 ‘FY 2017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의 인건비 항목에서 도출하였다. 지역별 학교급별 교원 호봉 비율은 교원수에 호봉액을 곱한 호봉 인건비의 총합에서 해당 호봉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¹²⁾ 교원 호봉 비율은 17개 교육청별 2017년 『교육통계연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호봉별 교원수’ 자료와 「공무원 보수규정」의 호봉액 자료에서 도출하였다. <표 Ⅲ-11>은 초·중고 지역별 총인건비와 교원 호봉 비율을 보여주고, <표 Ⅲ-12>와 <그림 Ⅲ-3>은 이를 토대로 추정한 초·중고 지역별 인건비를 보여준다. 인건비 역시 학생수가 많은 지역과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1>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총인건비 및 교원 호봉 비율

(단위: 만원, %)

지역	총인건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351,265,066	54.4	27.2	18.4
부산	150,857,447	51.4	26.7	21.9
대구	111,482,415	53.4	25.3	21.3
인천	148,469,109	46.3	25.5	28.2
광주	77,051,187	57.0	26.6	16.5
대전	79,400,571	50.6	27.1	22.3

12)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교원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실기교사의 총합을 의미한다. 호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6일 자료 개정된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근거하여 도출하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65,500원의 근속가봉을 가산한다.

〈표 III-11〉의 계속

(단위: 만원, %)

지역	총 인건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울산	69,023,243	45.8	25.4	28.8
세종	19,150,157	47.5	26.5	26.0
경기	599,246,087	48.0	25.3	26.7
강원	124,014,659	46.4	27.0	26.6
충북	100,216,085	48.6	26.9	24.5
충남	129,035,511	50.1	25.3	24.7
전북	121,649,770	52.7	27.5	19.8
전남	148,141,499	46.5	29.1	24.4
경북	153,440,230	52.8	26.5	20.7
경남	187,475,828	52.2	24.4	23.4
제주	39,903,295	52.0	27.0	21.0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표 III-12〉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인건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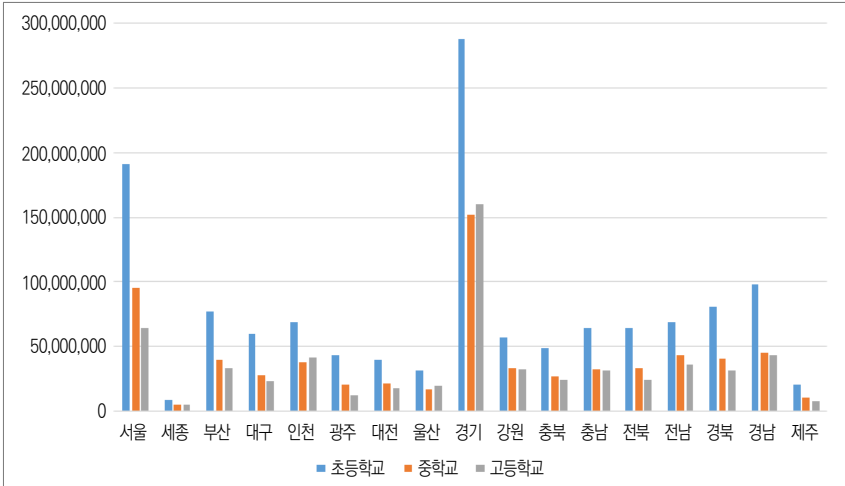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91,118,903	95,614,020	64,532,142
부산	77,533,122	40,242,143	33,082,182
대구	59,512,148	28,225,243	23,745,024
인천	68,734,884	37,892,681	41,841,544
광주	43,908,695	20,464,197	12,678,296
대전	40,155,461	21,534,658	17,710,452
울산	31,626,374	17,518,997	19,877,871
세종	9,095,641	5,079,002	4,975,513
경기	287,356,455	151,780,341	160,109,291
강원	57,536,522	33,451,011	33,027,126
충북	48,703,614	26,931,120	24,581,350
충남	64,598,440	32,611,574	31,825,496
전북	64,102,946	33,438,767	24,108,057
전남	68,874,505	43,094,144	36,172,851
경북	81,024,392	40,589,695	31,826,143
경남	97,885,572	45,786,674	43,803,583
제주	20,763,509	10,757,486	8,382,300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그림 III-3] 2017년 초·중·고 지역별 인건비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표 III-13〉과 [그림 III-4]에는 기타 교육지출비용과 인건비를 합한 공교육비가 제시되어 있다. 기타 교육지출비용과 인건비의 지역별, 학교급별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한 교육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가 각각 3조 4,179억원, 1조 6,516억원, 1조 275억원 수준이다. 경기의 경우 학교급별 교육비가 저학년부턴 5조 2,614억원, 2조 4,597억원, 2조 5,645억원 수준이다. 인구수가 적은 세종시는 1,630억원, 807억원, 976억원 수준이다.

〈표 III-13〉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공교육비

(단위: 만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341,791,366	165,160,909	102,746,446
부산	131,202,744	63,701,395	51,415,362
대구	84,047,939	38,648,529	34,357,284
인천	124,712,205	62,489,721	68,513,296
광주	68,253,445	29,836,511	21,566,231

〈표 III-13〉의 계속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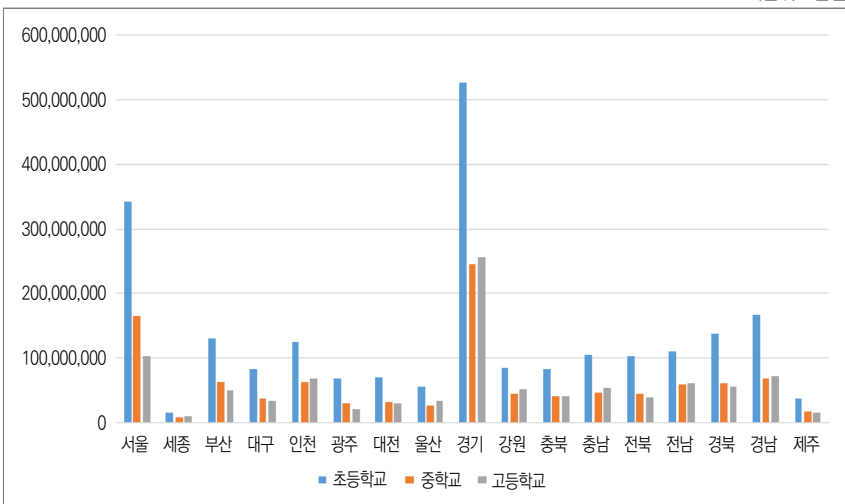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전	70,714,446	32,969,874	29,921,602
울산	55,435,364	26,697,887	33,499,005
세종	16,296,948	8,067,594	9,758,786
경기	526,144,490	245,965,315	256,447,240
강원	84,613,104	44,951,237	52,091,899
충북	83,522,338	42,421,078	41,471,422
충남	106,014,130	47,751,467	54,915,794
전북	103,892,362	45,929,136	38,853,430
전남	110,836,067	60,542,807	61,096,252
경북	138,313,329	61,262,882	55,355,429
경남	168,009,902	68,244,961	72,492,080
제주	37,649,545	17,365,440	15,283,897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그림 III-4]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교육비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표 Ⅲ-15〉와 [그림 Ⅲ-6]에는 교육비를 국공립 학생수로 나누어 구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제시되어 있다. 국공립 학생수는 17개 교육청별 2017년 『교육통계연보』 중 학교급별 개황 자료에서 도출되었다(〈표 Ⅲ-14〉, [그림 Ⅲ-5] 참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05만원, 1,478만원, 1,618만원이다. 그 다음에는 경북, 강원, 전북 순으로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높았다.

〈표 Ⅲ-14〉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국공립 학생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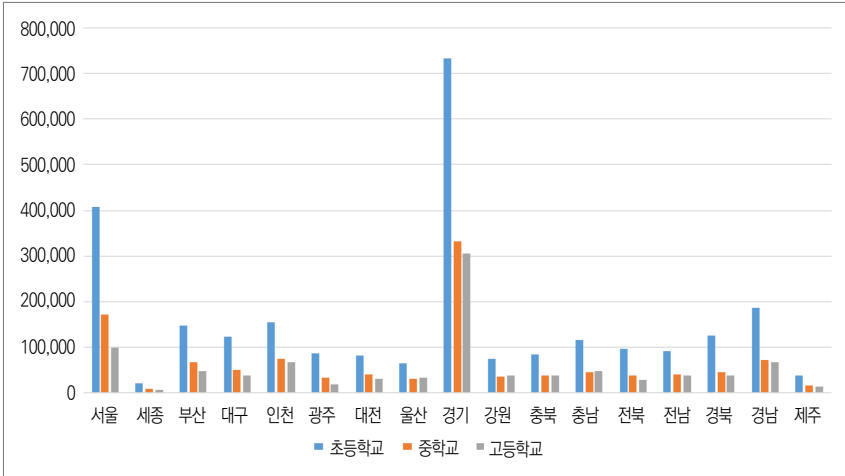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406,351	94.9	171,574	75.6	98,893	34.9
부산	148,597	98.5	66,732	82.7	48,078	48.2
대구	122,238	98.0	50,070	72.7	38,112	44.0
인천	154,686	98.9	74,648	94.7	66,372	72.0
광주	86,882	98.0	32,640	71.8	19,967	37.1
대전	82,919	98.4	40,008	89.0	31,308	58.2
울산	66,016	100.0	31,143	94.6	33,128	79.0
세종	20,764	100.0	8,602	100.0	7,106	93.0
경기	732,145	99.8	332,308	90.6	306,242	72.4
강원	74,753	98.7	36,581	88.6	37,499	74.1
충북	83,834	99.5	38,230	87.8	37,150	71.0
충남	116,806	99.9	46,814	81.4	48,226	68.5
전북	97,383	100.0	37,554	70.5	28,174	42.0
전남	92,000	98.7	40,954	82.5	37,752	59.3
경북	125,727	98.5	45,327	68.8	39,133	46.1
경남	185,801	99.6	72,144	76.9	68,491	61.4
제주	38,901	100.0	16,257	82.9	13,079	58.3

주: 비율은 총학생수 대비 국공립학생수를 의미함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5] 2017년 초·중·고 지역별 국공립 학생수

(단위: 명)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5>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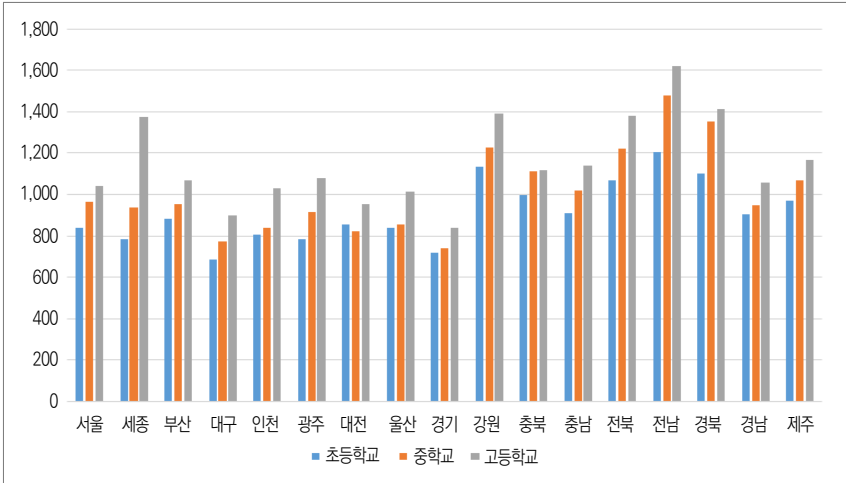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841	963	1,039
부산	883	955	1,069
대구	688	772	901
인천	806	837	1,032
광주	786	914	1,080
대전	853	824	956
울산	840	857	1,011
세종	785	938	1,373
경기	719	740	837
강원	1,132	1,229	1,389
충북	996	1,110	1,116
충남	908	1,020	1,139
전북	1,067	1,223	1,379
전남	1,205	1,478	1,618
경북	1,100	1,352	1,415
경남	904	946	1,058
제주	968	1,068	1,169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그림 III-6]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비

(단위: 명)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학생 1인당 교육혜택은 교육비에서 학생납입금을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초등·중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수업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학생납입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혜택은 교육비에서 학생부담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text{1인당 교육혜택} = \text{1인당 교육비} - \text{1인당 학생납입금}$$

1인당 학생납입금은 송기창 외(2018)에서 제시하는 추정치를 활용한다. 송기창 외(2018)는 고등학생 가구가 부담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의 단위비용을 추정하였다. 입학금의 경우 금액의 크기가 작고 인천, 대전, 강원, 경남 등의 지역에서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¹³⁾ 송기창 외(2018)에서 제시한 학생납입금의 단위비용은 연

13) 세종 등의 교육청에서도 입학금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

1,597,885원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납부금은 교육급여를 통해 전액 지원된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납입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농어민 자녀,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학비도 면제되거나 전액 지원되지만, 이 점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표 Ⅲ-16>과 [그림 Ⅲ-기]에서는 지역별, 학교급별 1인당 교육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기준 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혜택은 855만원, 929만원, 884만원이다.

〈표 Ⅲ-16〉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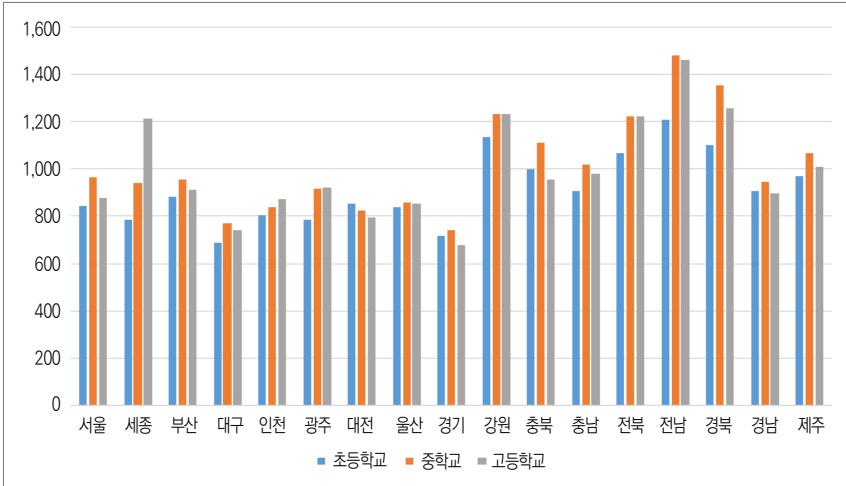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841	963	879
부산	883	955	910
대구	688	772	742
인천	806	837	872
광주	786	914	920
대전	853	824	796
울산	840	857	851
세종	785	938	1,214
경기	719	740	678
강원	1,132	1,229	1,229
충북	996	1,110	957
충남	908	1,020	979
전북	1,067	1,223	1,219
전남	1,205	1,478	1,459
경북	1,100	1,352	1,255
경남	904	946	899
제주	968	1,068	1,009
전국	855	929	884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그림 III-7]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단위: 명)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마지막으로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은 1인당 교육혜택에 국공립 학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표 III-17〉 참고). 학생 1인당 할당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할당금액은 1,189만원, 1,220만원, 865만원 수준이다. 전국기준 초·중·고 1인당 할당금액은 842만원, 769만원, 509만원이다. 이렇게 추정된 1인당 교육혜택 금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학교급 정보를 이용하여 수혜 가구원에게 할당되었다.¹⁴⁾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 1인당 교육혜택 \times 국공립 학생 비율$$

14) 앞서 언급했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납입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III-17〉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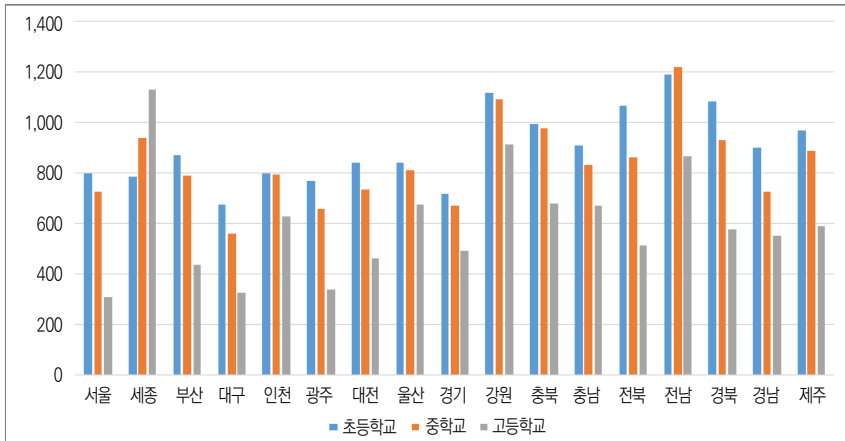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798	728	307
부산	870	789	439
대구	674	561	326
인천	797	793	628
광주	770	657	341
대전	839	733	463
울산	840	811	673
세종	785	938	1,129
경기	717	670	491
강원	1,117	1,089	911
충북	991	975	679
충남	906	830	671
전북	1,067	862	512
전남	1,189	1,220	865
경북	1,084	930	578
경남	900	727	551
제주	968	886	588
전국	842	769	509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그림 III-8〉 2017년 초·중·고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나. 고등교육 교육혜택 추정

대학 및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은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¹⁵⁾

$$\text{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 \text{1인당 교육비}^* - \text{1인당 등록금}$$

* 1인당 교육비 = 총교육비 ÷ 재학생수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혜택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는데, 이는 총교육비 자료를 제공하는 대학알리미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교육비는 총교육비를 재학생수로 나눈 것으로, 이때 총교육비는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의 합산을 의미한다.¹⁶⁾ 대학회계에는 국가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업료 세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이 받은 교육혜택은 교육비에서 학생이 부담한 수업료를 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총교육비, 학생수, 등록금에 대한 자료는 대학알리미의 공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¹⁷⁾

15) 여기에서는 2017년 기준 52개의 국공립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혜택을 추정한다. 국립대학은 일반 및 법인 국립대학과 특별법 법인대학으로 분류되는데, 특별법 법인대학은 선행연구를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유경준 외, 2018).

16)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2018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pp. 179~180)에 따르면 “① 대학회계: 인적경비+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운영비+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장학금 포함)-운영비 중 지급이자-인적경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최고경영자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 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 2017년 기성회회계 결산이 남아 있는 경우 대학회계 교육비에 포함하여 입력 ② 발전기금회계: 경상비+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 및 연구지원비+기금교수인건비 ③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일반관리비+간접비사업비 ④ 도서구입비: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중 도서구입비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된 도서구입비는 제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매해 조사되는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중 ‘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⑤ 기계기구매입비: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 ※ 기계기구매입비는 연구 및 교육용만 포함하고, 행정용은 제외함 ※ 소프트웨어 및 조달수수료는 기계기구매입비에서 제외.”

17)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학생과 휴학생을 구분함.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은 1인당 교육혜택, 국공립 학생 비율, 재학생 비율의 곱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이 사립학교를 다니거나 휴학 중일 경우 교육혜택이 과대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과 할당금액산출에 이용된 수치들은 <표 III-18>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은 167만원이다. 최종 1인당 할당금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학교급 정보를 이용하여 수혜 가구원에게 할당되었다.

$$\text{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 \text{1인당 교육혜택} \times \text{국공립 학생 비율}^* \times \text{재학생 비율}^{**}$$

** 국공립 학생 비율 = 국공립 학생수 ÷ 총학생수
 *** 재학생 비율 = 총재학생수 ÷ 총학생수

<표 III-18> 2017년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명, 만원)

총교육비	총학생수		재학생수		국공립 학생 비율	재학생 비율
		국공립		국공립		
742,105,168	3,383,925	766,120	2,434,469	551,818	0.226	0.719
1인당 교육비	1인당 등록금		1인당 교육혜택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1,345	321		1,024		167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의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9. 10. 21.

다. 유아 교육혜택 추정

유아(만 3~5세) 1인당 교육혜택은 아래와 같이 추정되었다.¹⁸⁾

$$\text{유아 1인당 교육혜택} = \text{총교육비}^* \div \text{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

* 총교육비 = 누리과정 예산액 +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

18)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들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교육정책”을 일컫는다(정책브리핑,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430>, 검색일자: 2019. 10. 21).

원칙적으로 교육을 병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혜택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병행 여부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병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유경준 외, 2018). 이 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교육, 보육 등 현물이전의 총합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총교육비는 누리과정 예산액과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액은 2017년 17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세출예산액 자료로부터 도출되며, 추경이 반영된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에는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유아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만 3~5세 유치원 재원 유아 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및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시도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는 17개 교육청별 2017년 『교육통계연보』 중 유치원 ‘호봉별 교원수’ 자료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다.¹⁹⁾ 호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6일 자료 개정된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65,500원의 근속가봉이 가산된다.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는 17개 교육청별 2017년 『교육통계연보』의 ‘연령별 원아수’와 2017년 『보육통계』의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서 제시하는 아동수의 합으로 산출되었다.²⁰⁾ 『교육통계연보』의 ‘연령별 원아수’ 자료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를 이용하였다. 『보육통계』의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자료에서는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를 이용하였다.²¹⁾

19) 본 연구에서 만 3~5세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보육혜택에 포함된다.

20)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신청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일컫는다.

21) 해당 아동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유아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금액과 그 산출에 이용된 수치들은 <표 Ⅲ-19>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 전국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유아학비 혜택은 350만원이다. 추정된 교육혜택 금액은 만 3~5세 유아 중 양육수당(현금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에게 할당되었다.

<표 Ⅲ-19> 2017년 유아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명)

지역	총교육비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	1인당 교육혜택 금액
서울	62,582,775	188,634	332
부산	24,329,519	73,423	331
대구	20,152,429	58,927	342
인천	25,770,830	75,951	339
광주	15,474,669	41,676	371
대전	13,909,495	40,045	347
울산	11,062,190	32,281	343
세종	4,575,245	10,631	430
경기	112,647,489	350,619	321
강원	13,636,714	35,220	387
충북	15,887,492	41,439	383
충남	22,004,954	58,629	375
전북	18,965,723	46,379	409
전남	18,478,452	45,389	407
경북	25,968,496	65,344	397
경남	33,887,774	91,570	370
제주	7,244,935	18,971	382
전국	446,579,183	1,275,128	350

주: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유치원 아동수와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아동수의 총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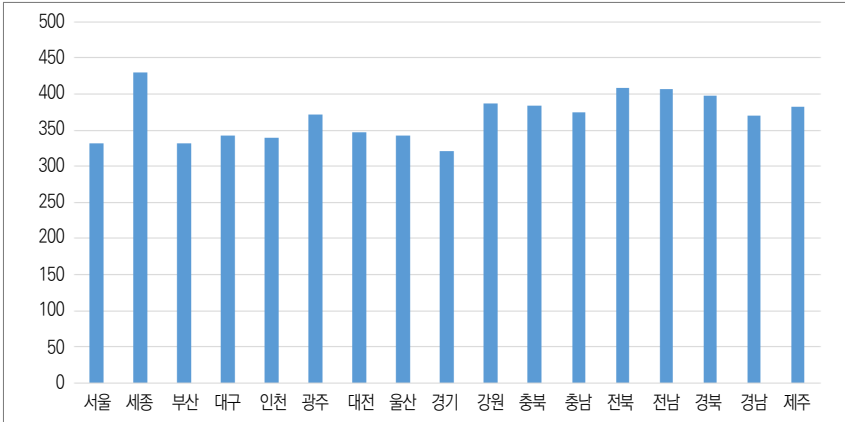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4.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r.go.kr/>), 2018공시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세출, 검색일자: 2019. 7. 17.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아동수 총합을 의미한다.

[그림 III-9] 2017년 유아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 12.
4.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a.go.kr/>), 2018공시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세출, 검색일자: 2019. 7. 17.

4. 보육혜택 추정²²⁾

영아(만 0~2세) 1인당 보육혜택은 아래와 같이 추정되었다.

$$\text{영아 1인당 보육혜택} = \text{보육예산}^* \div \text{어린이집 영아수}$$

* 보육예산 = 영유아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 어린이집 지원

보육혜택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근거하여 추정되었다. 보육예산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지원’의 합으로 정의되며, 정상비용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제외되었다. 2017년 보육예산은 <표 III-20>과 같이 구성된다. 보육예산의 총합은 약 4조 1,245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조 1,38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2) 지방비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III-20〉 2017년 보육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 (본예산)	해설	비고
합계	5,373,451		
영유아보육료지원	3,138,013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9,24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771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8,817		
어린이집 기능보강	6,447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개선	
어린이집 확충	22,370	국공립신축 9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90개소, 장애이전문 확충 2개소	
어린이집 관리	24,758		경상비용으로 판단
보육사업관리	3,301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508	부모 및 영유아에게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727	교직원 보수교육, 보육자격관리 관련 운영비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92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74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7,856	평가인증운영 및 사무국 지원	
어린이집 지원	957,679		
공공형어린이집	55,82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후 품질관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24,184	취학전 영유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277

2017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수는 1,443,535명이다. 보육예산을 영아수로 나눈 영아 1인당 보육료 혜택 할당금액은 약 286만원이다. 영아 1인당 보육료 혜택은 만 0~2세 영아 중 양육수당(현금지원)을 받지 않는 이에게 할당되었다.

〈표 III-21〉 2017년 영아 1인당 보육혜택 할당금액

보육예산 (백만원)	만 0~5세 어린이집 유아수 (명)	1인당 보육료 혜택 금액 (만원)
4,124,509	1,443,535	286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2〉 분석 자료의 출처 목록

자료명	변수명	이용 방법	주소
17개 교육청별 교육통계연보	- 기타 교육지출비용 - 인건비 - 국공립 학생수 - 호봉별 교원수 -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유치원)	-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별 교육통계연보 수집이 가능함 - 홈페이지에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함	https://school.kedi.re.kr
교원 봉급표	- 호봉액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와 제30조의2를 참고함	http://www.law.go.kr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 대학(원) 총교육비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의 '학생' 공시카테고리 중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이용함 - 국공립 자료와 국립대 법인 자료를 이용함	http://www.academyinfo.go.kr
재적 학생 현황	- 국공립 대학(원) 재학생수 - 국공립 대학(원) 학생 비율 - 대학(원) 재학생 비율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의 '학생' 공시카테고리 중 '4-마. 재적 학생 현황'을 이용함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자료를 이용함	http://www.academyinfo.go.kr
누리과정 지원 세출예산액	- 누리과정 예산액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의 '교육청재정' 항목에서 교육청별 예산 자료 이용이 가능함 - '세입세출운용상황' 항목 중 '2-3-2) 세부사업별 세출'료를 참고함	http://www.eduinio.go.kr
보육통계	-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수(어린이집) - 보육예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 중 '현황' 게시판에서 수집이 가능함	http://www.mohw.go.kr

자료: 저자 작성

〈표 III-23〉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구조 및 해설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정책분류) 인적자원운용		
기타 교직원 보수	교직원 대체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또는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등
	학교운영지원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 법령(「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 등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등
	교직원 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등
(정책분류)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 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실 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비, 학교 급식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등
기숙사 관리	기숙사 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등
보건 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 사업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등
	학교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 사업비 - 먹는물 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등
교육격차 해소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급식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비 - 무상급식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타 급식비 지원 등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돌봄 활동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표 III-23〉의 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교육격차 해소 (계속)	졸업앨범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과서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기숙사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정보화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구입비 등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컴 퓨터구입비 지원 등
	누리과정비 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유치원생 지원비 -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등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 교육복지우선,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 교육격차 해소,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 구입비 지원 등
학생복지	학생 장학금 운영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 사업비 - 학생장학금 지원 등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 (교육복지우선 사업 등) -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복지사업 운영비 등
	학생 복지 운영	학생복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졸업앨범,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 등) - 졸업앨범 제작, 학생교과서 구입, 학생증 제작, 통학차량 운영지원
(정책분류)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상)수업관리,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보충과정운영 등
	국어 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사회 교과활동	사회(역사, 도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수학 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과학 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 가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사인건비 등 ※ 과학의달 행사, 과학경진대회 출전비는[단위사업: 창의적체 험활동-자율활동]에 편성

〈표 III-23〉의 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교과활동	체육 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예술 교과활동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외국어 교과활동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등
	선택 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특수교육 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전공교과과 활동 등
	전문 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유치원 교과활동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부설기관 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등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신문제작,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등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고아원봉사, 양로원봉사, 식목활동, 자연보호활동, 봉사활동 청소용품 등
	진로활동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진로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표 III-23〉의 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정책분류)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을 위해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일스포츠강사 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 등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 자매결연학교교류 등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 독서교육 역량강화 등 독서활동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원 독서교육 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사 인건비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약부 등 교기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약부운영 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 등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에 소요되는 사업비 -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등
	기타 선택적 교육운영	외부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 등 위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비 -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등
	다문화교육 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정책분류) 교육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무실무사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 및 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등
생활지도 운영	학생생활상담 지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 상담, Wee 클래스 운영 등 교내외 학생생활 및 학생상담 지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생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등

〈표 III-23〉의 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생활지도 운영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 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등
	학생안전교육	학생 안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등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등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등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등
	공동실습소 운영	공동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공동실습소운영비 등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시청각실 등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시청각실운영비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 책·결상 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등
(정책분류) 학교일반 운영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등
	부설기관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부설기관 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등
	병설유치원 기본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 시설장비유지 등
	행정지원인력 운용	행정 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학교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용역비 등)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 시설확충 및 개선]에 편성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등	

〈표 III-23〉의 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등
	학부모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협 력에 소요되는 사업비(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등
	유관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
(정책분류)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하는 경우]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 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등
(정책분류) 학교재무 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주: ‘-’ 항목에 열거된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를 의미함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p. 108~112

IV. 의료혜택 추정

1. 분석 개요

정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은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가구 간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달성 혹은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전달할 때도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자산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게 하는 장치가 있다(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의료급여제도로 국가가 대부분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정부로부터의 보건의료 현물급여 혜택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박기백 외, 2006; 이은경 외, 2016; 오종현 외, 2017; 유경준 외, 2018). 해당 연구들은 보건의료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정책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의 단일보험자체제로 통합된 이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도 고소득 고부담의 재분배 원칙은 변함없이 제도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둘째,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부담 규모를 다양한 조건 및 소득 분포

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 하위 50%를 기준으로 상한 기준이 완화²³⁾되었으며,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개인은 소득에 대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 차등 수혜의 폭이 커지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수급권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해 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2017년 기준 6조 9,789억원(『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기준)의 의료급여기금 지출이 발생했다. 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수급권자 자격을 얻게 되므로, 보건의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의료 접근성 확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과 더불어 가구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건의로 정책 입안자는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부의 현물급여 중 보건의로 관련 수혜규모를 소득 수준별로 추정하여 보건의로 서비스 전달 과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전체의 연구 목적이 현물급여의 재분배 효과 추정이므로 앞 절에서 언급한 요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외한 의료비·의료 급여 지출 관련 가구의 의료 수혜 규모 추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로 현물급여 수혜 추정은 이상적인 분석 자료만 갖춰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행정 자료에 가구의 건보의료·의료급여 수혜 규모 정보만 함께 제공될 수 있다면 간단한 집계 과정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연구자가 이상적인 형태의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검증된 가구 소득 정보와 의료 이용 내역 및 국

23)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이하 기준.

민건강보험공단 수혜 규모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식 소득분배지표 산출용 기본 자료로 채택했지만, 해당 자료는 보건의료 현물급여 수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와 연계되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소득 자료에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등 보건의료 관련 집계 자료의 정보를 성·연령 등 일부 정보에 따라 가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구 의료비 수혜 규모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왔다.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동안 의료 수혜 규모 추정에 널리 활용되지 않았으나, 의료 지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시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건강보험의 항목별 지출을 가구 및 가구원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로부터의 의료 수혜 규모를 추정하기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식 소득분배지표 구축용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연결할 수 있는 공용 ID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을 통해 두 자료를 연결한다. 이후 연결된 미시자료를 통해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시 소득분배 변화 여부를 예시를 통해 검토하고, 위와 같은 미시자료의 매칭이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대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의료 현물 수혜 추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제3절에서 현물이전 규모 추정 및 매칭 전략 등 실증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 의료 공적현물이전 추정 선행연구

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선행연구

보건 의료 현물급여 추정을 위한 초기 선행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1950년에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가구의 소득·지출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가계동향조사는 현재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에 나뉘어 조사는 매월, 공표는 분기(소득)와 연간(지출)으로 진행하고 있다(통계청, 2018a). 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경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 수집하고 있다. 한편 본 절의 관심인 의료비 지출은 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로 분류되어 각 지출액이 집계되고 있다.

박기백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정보는 가계동향조사의 정보를 활용하되, 의료비 지출은 해당 자료의 의료비 지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에 집계된 성별·연령별 평균 급여비(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를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각 가구원의 성·연령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 지출로 조사된 의료비는 건강보험급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구분되지 않고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현물수혜는 건보급여 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체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박기백 외(2006)는 건강보험급여 서비스의 전수 집계 자료인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제시된 성과 연령에 따른 평균 급여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정보를 추출하여 가구 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따라 배분했다. 동일한 성과 연령에 동일한 평균값을 배분하는 점이 한계일 수 있으나, 활용 자료가 전수 집계 자료이며 소득분위 기준으로 집계하면 오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혜 규모 추정의 경우, 도시가계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수령한 가구에 한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가구원 수에 1인당 평균 의

료급여 금액을 배분한다.

1998~2005년 분석 결과, 건강보험 수혜의 경우 가구 소득 10분위 중 소득 6분위에서 큰 의료 수혜를 받고 있었으며, 소득 1분위가 가장 적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의료급여 수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 1분위에 수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2〉 참조).

〈표 IV-1〉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혜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분위	345	458	531	673	634	633	698	759
2분위	520	601	657	924	918	960	1,018	1,096
3분위	527	609	727	990	987	1,087	1,191	1,251
4분위	543	668	699	1,063	1,072	1,149	1,240	1,366
5분위	580	659	734	1,055	1,084	1,201	1,228	1,417
6분위	564	641	725	1,046	1,049	1,171	1,301	1,457
7분위	586	649	731	1,095	1,098	1,225	1,257	1,430
8분위	573	669	748	1,084	1,140	1,177	1,305	1,436
9분위	573	654	723	1,076	1,112	1,232	1,300	1,431
10분위	580	672	733	1,049	1,080	1,246	1,308	1,430

자료: 박기백 외(2006), p. 76. 〈표 IV-7〉 단위 조정

〈표 IV-2〉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혜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분위	246	522	528	981	1,039	906	889	1,014
2분위	147	41	12	74	60	155	168	231
3분위	7	12	11	16	25	38	32	89
4분위	0	5	0	0	0	33	38	42
5분위	0	0	0	19	0	7	18	16
6분위	0	0	6	0	15	24	18	9
7분위	0	0	0	0	0	0	8	0

〈표 IV-2〉의 계속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분위	0	0	0	0	0	0	6	0
9분위	0	0	0	0	0	0	0	0
10분위	0	0	0	0	0	0	0	0

자료: 박기백 외(2006), p. 86. 〈표 IV-14〉 단위 조정

박기백·김형준(2007)도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1998~2006년 의료 현물 수혜 규모를 추정했다. 박기백 외(2006)는 가계조사자료에서 수집된 의료비 지출 규모를 활용하지 않고 가구원의 성과 연령에 따라 평균 의료비 지출을 배분했으나, 박기백·김형준(2007)은 가계조사자료의 의료비 지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가구의 의료비지출)/(의료비 지출 평균)을 가중치로 활용했다. 이 방식을 통해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0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 혜택이 0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수혜를 추정할 수 있다. 박기백 외(2006)의 결과와 달리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수혜 규모는 증가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은 가구 소득 1분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표 IV-3〉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혜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분위	907	751	881	1,404	1,461	1,104	1,235	1,508	1,452
2분위	974	866	1,004	2,047	1,767	1,556	1,545	2,032	1,994
3분위	887	1,092	1,200	1,983	1,544	1,808	1,828	1,880	2,235
4분위	991	1,242	1,225	2,146	1,830	2,383	2,126	2,281	2,343
5분위	1,024	1,313	1,459	2,426	1,923	2,030	2,147	2,457	2,446
6분위	1,114	1,233	1,456	2,633	2,257	2,419	2,208	2,396	2,462
7분위	1,118	1,276	1,560	2,611	2,153	2,463	2,358	2,588	2,843
8분위	1,381	1,448	1,724	2,844	2,581	2,995	3,065	3,078	3,530
9분위	1,469	1,923	2,016	3,247	3,098	3,257	3,098	3,167	3,386
10분위	1,614	1,982	2,223	4,004	3,437	3,732	3,730	4,059	4,470

자료: 박기백·김형준(2007), p. 30. 〈표 III-12〉 단위 조정

〈표 IV-4〉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혜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분위	30	26	66	31	62	47	90	112	117
2분위	7	0	0	0	0	0	0	0	0
3분위	0	0	0	0	0	0	0	0	0
4분위	0	0	0	0	0	0	0	0	0
5분위	0	0	0	0	0	0	0	0	0
6분위	0	0	0	0	0	0	0	0	0
7분위	0	0	0	0	0	0	0	0	0
8분위	0	0	0	0	0	0	0	0	0
9분위	0	0	0	0	0	0	0	0	0
10분위	0	0	0	0	0	0	0	0	0

자료: 박기백·김형준(2007), p. 23, 〈표 III-7〉 단위 조정

성명재·박기백(2008) 또한 가계조사원시자료 및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 동일한 방식으로 의료 수혜를 집계했으며, 〈표 IV-5〉와 같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료 수혜 규모도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표 IV-5〉 사회지출수혜(현물급여)의 소득계층별 금액 분포

(단위: 천원, 배)

구분	1 분위 (1)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	평균	배율 (2/1)
현물 급여	2,865	3,635	4,167	4,737	4,843	4,868	5,353	5,846	5,411	6,896	4,862	2.4
의료 급여	223	0	0	0	0	0	0	0	0	0	22	0
건강 보험	1,260	1,577	2,045	2,208	2,285	2,338	2,692	3,219	2,993	4,565	2,518	3.6

자료: 성명재·박기백(2008), p. 89, 〈부표 1〉에서 일부 발췌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이 구축한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KIPFSIM10)에도 2009년 가계조사원시자료 및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료 수혜를 추정했다. 선행연구와 달리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의

료 수혜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로 인한 것인지는 이후 자료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IV-6〉 소득계층별 현물급여 수혜 분포(2009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기초 생보	790	7	0	0	0	0	0	0	0	0	80
건강 보험	1,883	1,829	1,759	1,771	1,682	1,725	1,687	1,610	1,620	1,750	1,732
교육	377	926	1,446	1,980	2,469	3,106	3,246	3,345	3,562	3,767	2,422
보육	28	69	74	94	92	93	71	18	11	0	55
주택	5	10	15	24	24	20	5	0	0	0	10
계	3,083	2,841	3,294	3,869	4,267	4,945	5,010	4,974	5,193	5,516	4,299

자료: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p. 80. 〈표 IV-29〉에서 일부 발췌

나. 『재정패널조사』 자료 활용 선행연구

『재정패널조사』는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부터 연간 5,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가구의 의료비 지출 관련 정보도 수집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의료 수혜 부담 규모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단, 설문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의료비를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보건 의료 수혜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수혜를 분리 식별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률 등의 정보를 활용한 별도의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박기백(2010)은 『재정패널조사』 1차 연도 자료(2008년)를 활용했으며 『재정패널조사』의 의료비 지출 정보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로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한약재, 성형수술, 치과 등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 서비스를 모두

식별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의료서비스 중에도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박기백(2010)의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지출 규모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은경·윤성주(2015)의 연구 역시 가구 전체의 총의료비에서 한약재, 성형수술, 치과 관련 비용을 제외했으나, 해당 서비스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한계로 밝히고 있다.

오종현 외(2017)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건강보험급여 항목 비중을 가구 총지출 의료비에 반영하여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분리 식별한 후, 급여 항목 의료비 중 공단부담 비중을 다시 반영하여 의료 수혜를 추정했다. 항목별 분석이 아닌 평균적인 비중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라 여전히 오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과거의 선행연구에 비해 총진료비에서 비급여 항목 정보의 분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의료급여에 대한 수혜 규모 추정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저소득층의 의료 수혜 규모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석 결과 소득과 의료수혜가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V-7〉 소득분위별 의료수혜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물 급여	153.8	143.5	348.8	289.0	327.1	312.2	504.6	555.8	649.1	738.7	402.4
의료 수혜	108.9	81.1	207.5	141.9	129.3	73.7	161.3	144.6	93.2	149.5	129.1

자료: 오종현 외(2017), p. 94. 〈표 V-8〉에서 일부 발췌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선행연구

소득분배지수를 생성하는 공식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의료 수혜 규모 추정의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

부터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지출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마련된 통계로 2017년부터 연간 공식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유경준 외(2018)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성·연령별 1인당 평균 급여 수혜 규모를 확보한 후, 가구의 해당 가구원에 할당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는 성·연령 기준 가구원 구성이 동일한 가구는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강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와 연결하여 의료급여 수혜 규모를 추정했다. 의료급여 혜택까지 포함된 총의료 수혜 규모 추정 결과, 소득 1분위의 의료 수혜 규모가 240만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소득 3~5분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 소득 5분위별 사회적 현물혜택 및 의료부문 현물혜택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사회적 현물혜택	439	415	405	392	354	401
의료	240	152	138	133	133	159

자료: 유경준 외(2018), p. 18, 〈표 4.2〉에서 일부 발췌

3.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 소개

앞선 서술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공신력있는 통계 자료에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의료 수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주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한 의료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자료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실증분석의 목표이다.

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통계청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약 2만 가구를 표본으로 2012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2016년 소득결과(2017년 발표)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원이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으며,²⁴⁾ 지니계수, 팔마(Palma)비율, 소득 5분위 배율, 빈곤갭 등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²⁵⁾

보건의료 혜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부담 규모의 정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자세하게 조사되지 않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표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복지부문 가구의 지출 내역 조사에서 ‘의료비’ 지출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본인부담 총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보건의료 수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②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의료비는 건강보험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서비스의 전액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정보로,²⁶⁾ 이를 통해 가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성·연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 부담금, 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역으로 반영한 건보 부담금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다.

선행연구와 같은 방식은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 수혜의 평균적인 규모를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연령 등 기초정보를 활용한 평균치 대체(imputation)는 각 가구별 특유의(idiosyncratic) 의료 수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소득 분위기를 기준으로 같은 소득 분위 내 가구를 집계하는 경우 가구 특유의 정보는 상쇄되어 ‘평균’ 소득 분위별

24) e-나라지표,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검색일자: 2019. 10. 21.

2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확대 제공」, 보도자료, 2019. 4. 11.

26)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총의료비는 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② 법정 환자 본인 부담금(급여) ③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수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의료비 지출 정보를 타 자료원에서 확보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할 수 있다면 미시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이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비급여 지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정보이긴 하지만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존재하는 외래·입원·응급 의료 서비스의 비급여 항목 지출 내역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된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료의 연결을 통한 미시 정보의 활용은 세부 정책의 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다.

이 장에서는 보다 자세한 의료 수혜 내역을 파악하는 자료원으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²⁷⁾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구 ID 등 공용 식별키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방법 중, 회귀 분석을 활용한 간단한 매칭 방법을 이용한다. D’Orazio et al.(2006) 및 변종석 외(2013)에서 자세히 소개된 회귀 대체(regression imputation) 방법은 다음 절에서 간략하게 정리한다.

나. 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미시자료 매칭(parametric micro under the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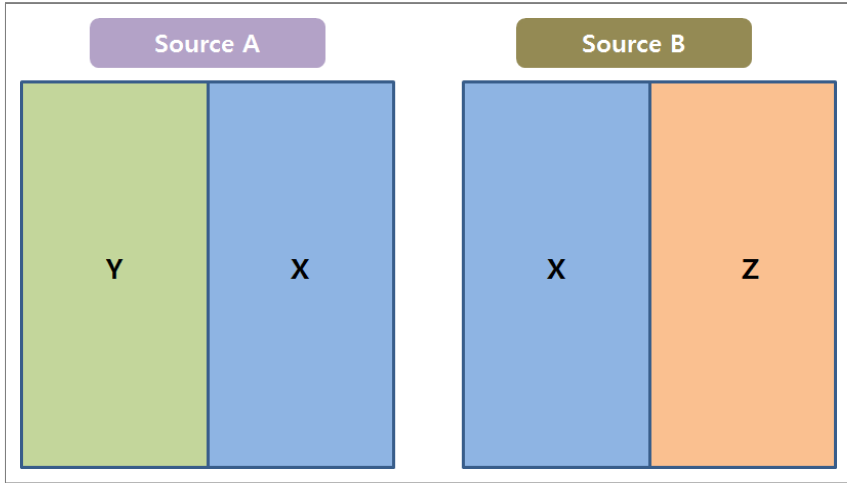
자료원 A에 변수 X와 Y가 존재하고, 자료원 B에 변수 X와 Z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그림 IV-11 참조). 만약 연구자의 관심이 Y와 Z의 관계에 있다고

27) 연구자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 패널 조사보다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고 싶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2019년 현재, 통계청 제공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예: 건강보험표본코호트DB 등)는 모두 외부 원격접속으로 자료 제공이 이뤄지는 등 물리적으로 동시 작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28) 이 절의 내용은 D’Orazio et al.(2006) 및 변종석 외(2013)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다면 자료원 A와 B를 연결해야 한다. A와 B를 연결하는 데 활용될 공용 식별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계적 매칭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두 자료원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변수 X가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V-1] 통계적 매칭



자료: D'Orazio(2013, p. 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예를 들어 자료원 A에 변수 Z를 추가하는 방식은 자료원 B에서의 X와 Z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원 B를 기반으로 변수 Z가 종속변수, 변수 X가 설명변수인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식 IV-1), 추정된 회귀 모수 추정값 및 자료원 A의 X값을 활용해서 Z의 추정치(predicted values)를 구하고 자료원 A에 결합한다(식 IV-2). 자료원 A의 결측값(missing value) Z를 타 자료원의 정보를 통해 대체(imputation)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hat{\alpha}_Z = \bar{z}_B - \hat{\beta}_{ZX} \bar{x}_B, \quad \hat{\beta}_{ZX} = \frac{s_{XZB}}{s_{XB}^2} \quad \text{식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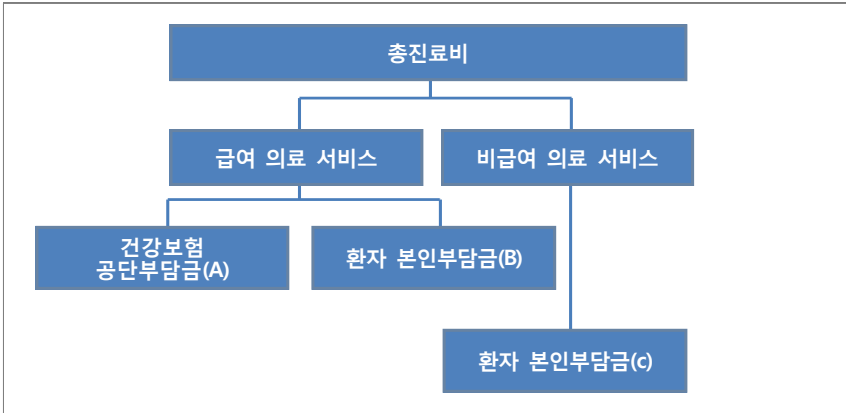
$$\hat{z}_a^{(A)} = \hat{\alpha}_Z + \hat{\beta}_{ZX} x_a \quad \text{식 (IV-2)}$$

한편 위와 같은 결합 방식은 변수 Y와 변수 Z의 관계가 변수 X에 의해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강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조건부 독립 가정,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즉, 변수 X의 정보가 주어지면 변수 Y와 변수 Z는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므로, 자료원 B에 기반한 변수 X와 변수 Z의 회귀분석 추정치를 그대로 자료원 A에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가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에서는 이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두 자료원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정보집합(그림 IV-11의 X)에 유의미한 변수를 최대한 포함하여, 최대한 가정을 덜 위반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 실증 분석 전략

우리의 분석 자료 소개에 앞서 회귀 대체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의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그림 IV-2 참조). 급여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재원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담금(A)과 환자의 본인부담금(B)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급여 서비스의 의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C)한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는 입원·외래·응급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가구의 지난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A)과 급여 환자 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B), 비급여 본인 부담금(C)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A)이 정부로부터의 보건의료 수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림 IV-2] 진료비 구성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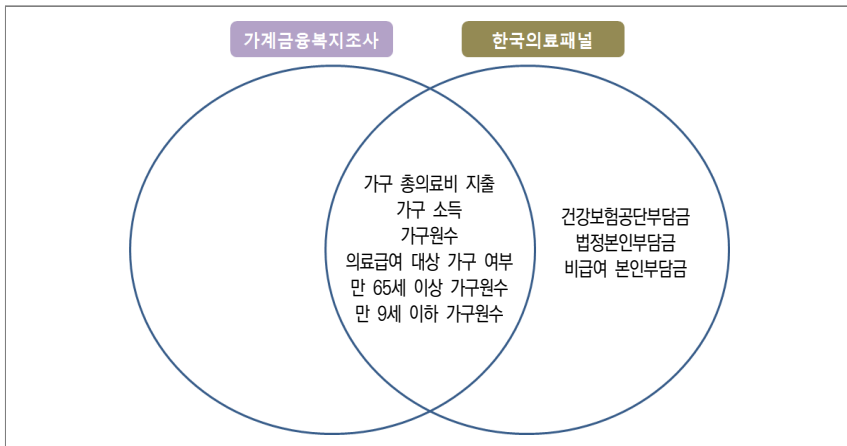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동시에 수집할 수 있으며, 앞선 의료비의 구성 요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자료에서 식별한다(그림 IV-1의 변수 X에 해당). 해당 정보로 이 연구에서는 총 6종류의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하며, 활용된 변수들은 △가구 총의료비 지출, △가구 소득, △가구원수, △가구의 의료급여²⁹⁾ 수혜 여부, △만 65세 이상 가구원수, △만 9세 이하 가구원수이다(그림 IV-3 참조). 이후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보건의료 수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종속변수로, 6종의 공통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회귀분석의 모수 추정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모수 추정치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수집된 각 가구별 6종의 공통변수 값을 적용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각 가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규모를 미시적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총의료비는 표본의 절반인 복지부문 가구에서만 조사된다는 점이다. 가구 총의료비는 가구의 의료 수혜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므로 분석에 반드시

29) 의료급여는 일반 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만 실제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 경우 표본의 또 다른 절반인 금융부문 가구가 결측값으로 인해 표본에서 이탈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접 짝짓기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방법을 활용해 복지부문과 금융부문 가구를 매칭시키고, 복지부문의 총의료비 지출을 식별된 금융부문 짝 가구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결측값을 보정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 2018a)에 따르면, 금융 및 복지 부문의 표본 배정은 조사구 내 표본 가구를 50%씩 금융 및 복지 부문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금융 및 복지 부문의 가구는 앞선 6종의 정보들에 대해서 분포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문 가구와 금융부문 가구를 최근접 짝짓기 방법으로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활용된 정보는 6종의 정보 중 결측값이 존재하는 정보인 총의료비를 제외한 5종의 정보를 활용했다.³⁰⁾

[그림 IV-3]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통계적 매칭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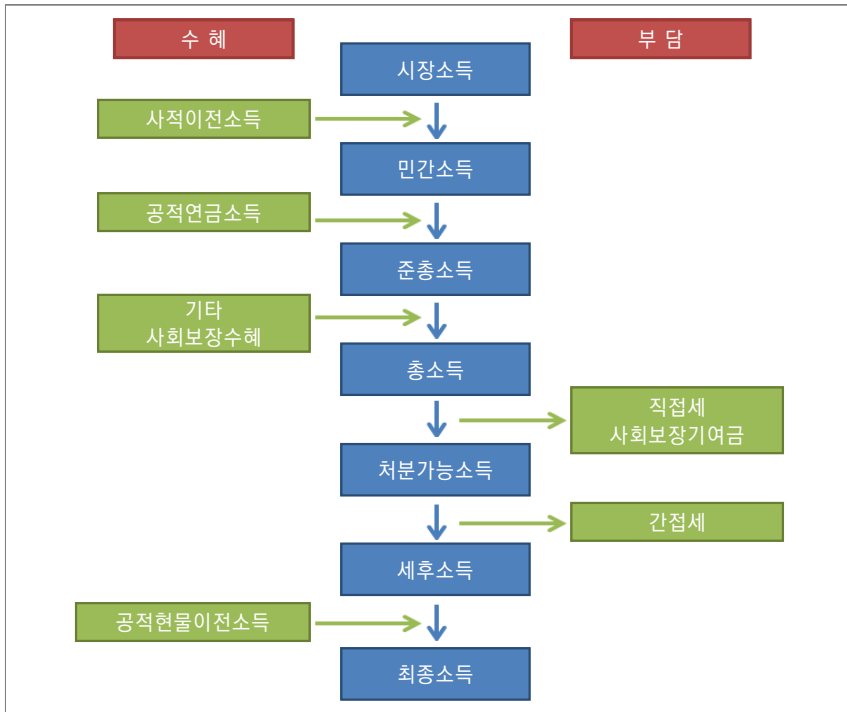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설명변수로 활용되는 정보 중 가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규모를 추정했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소득 기준으로 연구를 진

30) 통계패키지 STATA의 teffects nnmatch 명령어를 활용했다.

행했기 때문이다. 오종현·김우현(2018) 및 과거 선행연구들은 가구 소득을 소득의 구성 요인에 따라 총 6~7종류의 소득으로 분류했다. 시장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산소득은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적이전소득은 가구 간 사적 이전소득 혹은 비영리단체 등의 이전소득처럼 정부에 의하지 않은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앞서 정의된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더해져 민간소득으로 정의된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부 제도를 통한 공적인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이라 부르며, 민간소득에 이를

[그림 IV-4] 소득의 정의 및 구조



자료: 오종현·김우현(2018), p. 40, [그림 III-1] 재작성

더해 준총소득으로 정의한다. 기타 정부 제도에 의해 가구에 현금의 형태로 이전되는 기타 소득들을 기타 사회보장수혜로 구분하며, 이를 더해 가구의

총소득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세후소득에 이 연구의 관심사인 현물급여를 더해 가구의 최종소득이 형성된다(그림 IV-4 참조).

분석 대상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세부 소득 구성요인의 구분이 통일되지 않아(표 IV-9 참조), 두 자료원이 일치된 가구 소득 구성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장소득’이나 ‘총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총소득’ 정보를 회귀 분석의 설명변수인 가구소득으로 활용한다. 이는 가구가 의료비 지출을 결정할 때, 가구의 공적연금 및 현금성 사회보장수혜 등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표 IV-9〉 각 자료 소득 정의 비교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시장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금융소득		재산 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 소득	임대소득
		기타	개인연금			양도소득
			퇴직연금		민간 보험	개인연금
유·무형자산소득			민간보험 해약일시금			
사적 이전 소득			민간 보조금	부모·자녀·친인척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종교·사회단체 지원 등			
민간소득 = 시장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 연금 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 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육아휴직금	
					산재보험	
					사회보험일시금	

〈표 IV-9〉의 계속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준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연금소득			
기타 사회 보장 수혜	기초노령연금	정부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모부자 가정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정위탁금
	고용보험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산재보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농어업 정부보조금		학비지원
	보훈연금		국가유공자 보호금
	체육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장수수당	간급복지 지원금		
		기타(EITC 등)	
총소득 = 준총소득 + 기타사회보장수혜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및 『한국의료패널조사』 코드북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한국의료패널조사』 내 의료급여 가구 식별은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간주했다. 회귀 대체를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식별이 필요한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 모두 의료급여 수급 대상 가구로 간주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은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의 총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표 IV-10〉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대상자의 선정 기준 중 부양 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제시했으며, 세부 제도마다 기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 외에도 각 제도에 따라 다양한 별도의 세부 기준으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의료급여 수급을 가정하는 방식은 실제 수급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표 IV-1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준)	30%	44%	50%	40%

자료: 복지포,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검색일자: 2019. 11. 15)

활용한 자료는 『한국의료패널조사』 2011~2017년 자료(Ver. 1.6. 베타버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자료이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7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 대체에 활용한 회귀분석 모수를 추정했다. 모수 결과를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가구 정보에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규모를 가구별로 추정했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회귀모형의 오차항에 존재하는 무작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적 대체(deterministic imputation)를 활용했다(Gelman and Hill, 2006). 즉, 의료패널에 기반한 선형회귀모형의 모수 추정치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설명변수 값을 선형결합한 수치를 그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체했다. 회귀모형 추정 이후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의 추정치에 근거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확률적 대체(stochastic imputation)를 시도했으나, 실증 분석 과정에서 회귀모형의 MSE 추정치가 예상보다 큰 수치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추출된 오차항의 무작위성이 의료 지출 분포를 심하게 왜곡하는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입원 서비스에 한해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구의 한 해 의료비 지출이 0원으로 수집된 가구는 모두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 수혜 규모도 0원으로 가정했다. 회귀분석에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양(+)인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끝으로 제Ⅷ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소득 기준에 따른 법정본인부담상한의 환급분을 소득 분위별로 배분하여 평균적인 수혜 규모를 별도로 식별했다. 이 또한 제도로 인해 가구의 과도한 법정본인부담금 지출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 환급되며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수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보부담금 대신 법정본인부담금을 결과 변수로 하여 동일한 회귀 대체 작업을 시행한 후, 추정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가구별 법정본인부담금을 해당연도의 소득분위별 법정본인부담상한과 비교해 가구별 환급 금액을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추정 및 제도에 관한 설명은 제Ⅷ장 제3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라. 분석 결과

〈표 IV-11〉에는 분석에 활용된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년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했다. 가구소득 및 가구 총의료비 지출 등 일부 주요 변수의 분포가 두 자료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가구소득이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가구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고소득층의 표본이 좀 더 많이 추출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 의료비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수집함으로써 평균 의료비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했지만 표본 추출의 방식 및 설문 구성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고소득층의 누락, 의료비 정보의 부정확함 등 다양한 요인이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힌다.

〈표 IV-11〉 기초통계량(『한국의료패널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기준)

(단위: 만원, 명, %)

구분	『한국의료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구소득 (총소득 기준)	4,241	3,678	0	57,090	5,209	5,882	0	239,335
가구원 수	2.69	1.30	1	8	2.61	1.26	1	9
65세 이상 가구원 수	0.65	0.78	0	3	0.49	0.72	0	3
9세 이하 가구원 수	0.17	0.50	0	4	0.23	0.59	0	4
의료급여 수급 가구비중	5.71	-	-	-	4.16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46	796	0	5,628	-	-	-	-
법정본인부담금	139	179	0	2,960	-	-	-	-
비급여 본인 부담금	157	206	0	2,117	-	-	-	-
가구 총의료비 지출	296	320	0	3,397	166	276	0	7,000
관측치	6,408가구				18,640가구			

자료: 『한국의료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회귀 대체를 위한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가구 총의료비 지출이 1만원 증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약 1만 5천원 증가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당 의료비가 약 98.7만원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가구 총소득이 1만원 증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약 100원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률 차등화 등 의료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일부 소득재분배 요소를 가진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가구의 경우 약 439만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승과 관련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

(단위: 만원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계수
가구 총의료비 지출	15,267.5*** (872.9)
가구 소득(총소득 기준)	-100.4** (39.6)
가구원 수	97,645.6 (202,301.9)
65세 이상 가구원 수	987,294.5** (381,541.5)
0~4세 가구원 수	-325,675.3*** (105,367.1)
5~9세 가구원 수	-131,235.8 (307,431.8)
의료급여 수혜 여부	4,393,882.0** (1,844,225.0)
상수	-290,728.9 (917,074.1)
관측치	5,092
R^2	0.1182

주: 1. 합동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nalysis) 결과이며, 가구 의료비 지출이 양(+)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시행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2〉의 회귀 모형 추정 모수를 활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추정치를 대체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를 활용한 가구 준총소득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누어 『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 의료 수혜 규모를 추정하면 〈표 IV-13〉과 같다. 건강보험을 통해 수혜는 소득 1분위가 200.7만원으로 낮은 편이며, 소득 2~4분위의 수혜 규모가 각각 293.8만원, 278.6만원, 257.7만원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소득분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가구의 본인부담 환급 효과를 포함하면 소득 2~4분위를 중심으로 약 12.9만~16.7만원 규모의 평균적인 의료 수혜 증가의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중된 소득 1분위의 경우

그만큼 제도의 수혜 폭은 소득 2~4분위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의료급여 수급의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 1분위의 경우 약 162.2만원, 소득 2~3분위에는 약 18.1만~28.7만원의 의료 수혜 혜택이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 현물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물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를 모두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표 IV-13〉 소득분위별 평균 의료 수혜 규모(2017년 기준)

(단위: 원)

소득 분위 (준총소득 기준)	건강보험 수혜		의료급여 수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분위	2,007,211	2,090,842	1,621,820
2분위	2,938,350	3,079,734	286,565
3분위	2,786,166	2,953,007	180,508
4분위	2,576,785	2,706,201	59,130
5분위	2,362,439	2,462,422	8,812
6분위	2,184,530	2,252,796	3,323
7분위	2,411,776	2,520,850	4,576
8분위	2,126,903	2,186,999	0
9분위	2,189,242	2,220,176	0
10분위	2,676,172	2,730,770	0

자료: 저자 작성

자료 및 변수의 부족은 실증 분석을 하는 연구자가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공식 소득분배 지표를 구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주요 자료원을 중심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야 하지만, 자료원에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을 경우에 더욱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전수 자료에 기반한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용한 평균 수치의 대체를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회귀 대체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 수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부담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수집되어 있는 『한국의료패널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미시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식 소득 분배 지표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의료 현물급여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현물 수혜의 주 계층은 소득 2~4분위이며, 소득 1분위는 의료급여 수급을 통한 의료 수혜의 규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인 오종현 외(2017)의 의료 수혜 추정 산식을 통한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시한 회귀 대체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새롭게 제안된 방식과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오종현 외(2017)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비율을 α ,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의 비중을 β 로 가정했을 때, 가구의 의료 수혜(MED)는 전체 가구의 의료지출(MEDEXP)과 식 (IV-3)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도출했다.

$$MED = MEDEXP \times \frac{\alpha\beta}{1-\alpha\beta} \quad \text{식 (IV-3)}$$

오종현 외(2017)는 가구별 α 와 β 를 식별할 수 없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평균 α 와 β 수치를 모든 가구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식 (IV-3)을 반영했다. 이 장에서 활용한 『한국의료패널조사』에는 가구원별 응급서비스, 외래서비스, 입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부담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통해 가구 소득 10분위 기준³¹⁾으로 분위별 평균 α 와 β 를 구한 후 이 정보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소득 분위별로 반영하여 가구의 의료 수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가계금

31)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경우, 준중소득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오종현 외(2017)와의 비교 목적으로는 가구중소득을 활용했다.

용·복지조사』의 가구를 직접 매칭한 앞선 제안 방식이 아닌,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일부 집계 정보를 소득 분위별로 추정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오종현 외(2017)와는 달리 본 연구는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α 와 β 를 활용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식별하기에 보다 강건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표 IV-14>에 나타난 의료 수혜 규모의 비교 결과는 추정 수치에 격차를 관찰할 수 있고, 특히 소득 1분위의 의료급여 수혜 추정 수치에서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수혜의 규모가 소득 2~3분위 및 최고 소득 구간인 10분위를 중심으로 높게 추정되며, 소득 1분위의 건강보험 수혜 규모는 낮으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4> 소득분위별 평균 의료 수혜 규모 민감도 분석(2017년 기준)

(단위: 원)

소득 분위 (총소득 기준)	회귀 대체		식 (IV-3)에 의한 추정	
	건강보험 수혜	의료급여 수혜	건강보험 수혜	의료급여 수혜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1분위	1,648,976	1,695,174	1,606,078	770,307
2분위	2,778,608	289,274	2,484,644	225,521
3분위	2,640,992	142,809	2,608,175	151,865
4분위	2,554,177	22,703	2,255,681	9,927
5분위	2,623,651	2,329	2,431,414	68
6분위	2,247,345	10,115	1,919,365	401
7분위	2,482,873	2,247	1,983,758	-
8분위	2,231,716	-	1,816,092	-
9분위	2,270,018	-	2,085,549	-
10분위	2,781,559	-	2,584,353	-

주: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자료 수집 구성상 준총소득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총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혜를 추정

자료: 저자 작성

V. 주거혜택 추정

1. 분석 개요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 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민 계층에는 주택 및 전세자금 등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주거혜택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가계의 임대료 수혜 규모를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부문(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 혹은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³²⁾을 의미한다. 주거혜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가계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에 주거하였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인한 가계의 수혜로 정의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가계의 임대료 편익 이외의 다른 주거혜택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거와 관련된 현물이전으로 주거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한 부분인 주거급여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보조금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조사된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생계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되지만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 『주거실태조사』 또한 주거급여를 단독으로 보고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거급여는 성격상 현물급여로 분류할 수

32) 국토해양부(2012), p. 4.

있지만, 현금급여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이를 분리할 수 없어 본 연구의 주거혜택에서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현물이전으로는 정부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이다. 주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해당 대출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가계 금융·복지조사』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식별할 수 없어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종현 외(2017)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대출로 인한 주거수혜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 중 공공 분양주택 또한 현물이전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자료에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장은 다음의 순서로 가계의 주거혜택에 대해 논의한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제4절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추정된 결과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본 장의 방법론을 통해 추정된 가계의 주거혜택 추정 결과는 제Ⅶ장에서 다른 현물이전 추정 결과와 함께 제시된다. 또한 제Ⅷ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 10호 공급할 경우의 소득 분배지표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제도

가.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소득은 2018년 중위 소득의 43%에서 2019년 44%로 확대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에 따른 소득환산액까지 고려한 소득이다. 기준소득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별로 상이한데, 2019년 기준은 <표 V-1>과 같다.

〈표 V-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193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은 〈표 V-2〉와 같다.

〈표 V-2〉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1인	21.3	18.7	15.3	14.0
2인	24.5	21.0	16.6	15.2
3인	29.0	25.4	19.8	18.4
4인	33.5	29.7	23.1	20.8
5인	34.6	30.8	24.2	21.8
6인	40.3	36.4	27.6	25.2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193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경보수의 경우 378만원, 중보수의 경우 702만원, 대보수의 경우 1,026만원을 한도로 지원”³³⁾한다.

과거 주거급여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83.1만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임차가구가 75.5만가구이며, 월평균 12.1만원이 지급되었다.

〈표 V-3〉 주거급여 지원 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기준연도	2015.6	2015.12	2016.12	2017.12	2018.9
수급자 수	68.6만	80.0만	80.4만	81.0만	83.1만
- 임차가구	-	72.1만	72.7만	73.7만	75.5만
- 자가가구	-	7.8만	7.7만	7.3만	7.6만
예산(백만원)	-	1,123,073	1,028,936	947,098	1,125,210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193

33) 국토교통부,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보도자료, 2018. 8. 6.

나. 금융지원

정부는 월세, 전세, 주택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주 혹은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게 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³⁴⁾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제도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공유형모기지 등이 존재한다.³⁵⁾ 이와 같은 대출은 시중에서 주거생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자금마련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출 금리를 시장 금리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소득 보조와 주거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 가구 선정에 있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7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호당 2억원이며, 대출 금리는 <표 V-4>와 같다. 특히, 2018년 12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가 3.19%³⁶⁾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4) 복지포, 복지서비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395>, 검색일자: 2019. 10. 21.

35) 주택도시보증, 개인상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검색일자: 2019. 10. 21.

3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2.2.1.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시장금리, <http://ecos.bok.or.kr/>, 최종 검색일자: 2019. 10. 21.

〈표 V-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단위: %)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2천만~4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4천만~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29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는 소득 기준이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는 전세가격의 70% 이내로 수도권외의 경우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이다. 한편,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 그 외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금리는〈표 V-5〉와 같다.

〈표 V-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단위: %)

소득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2.7	2.8	2.9

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300

다.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V-6〉과 같다.

[그림 V-1] 공공주택 체계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196

〈표 V-6〉 공공주택 유형

구분	내용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196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건설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주택 건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공공부문 8.1만호 중 6.3만호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다.

〈표 V-7〉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단위: 천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87	440	515	765	726	653	554
공공부문	110	80	63	76	76	77	81
- 분양	52	10	6	6	5	9	18
- 임대	58	70	57	70	71	68	63
민간부문	477	360	452	689	650	576	473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380

국토교통부의 『주택 업무 편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주택 수는 2,031만호이며, 이 중 임대용주택은 780만호, 등록임대주택은 246만호 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36.5만 호이며, 이 중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 129.2만호이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 7.3만호이다.

〈표 V-8〉 건설주체별 등록임대주택 현황

(단위: 천호)

연도	총 임대 주택	공공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국가 (나)	지자체 (지방 공사)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소계	5년	10년	소계	단기	준공공	기업형
2015	1,938	870	232	156	83	73	680	676	4	-
2016	2,273	945	243	170	96	74	915	856	17	42
2017	2,460	1,032	265	160	87	73	1,003	868	57	78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397

〈표 V-9〉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천호, %)

연도	① 임대용 주택 (추계)	② 등록 임대주택 (②/①)	장기공공 임대주택	장기공공 임대 재고율	영구	50년	국민	장기 전세	10년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 주택
2015	7,667	193.8 (25.3%)	1,163	5.9%	196	108	471	28	135	82	142	1
2016	7,793	227.3 (29.2%)	1,256	6.3%	199	108	509	32	148	92	166	2
2017	7,799	246.0 (31.5%)	1,365	6.7%	217	109	524	33	168	103	195	16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397

3.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임대료 편익 추정

가. 활용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 가구의 주거혜택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주거 관련 변수가 충분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가계의 임대료 편익을 가구의 특성변수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하여 앞에서 논의한 다른 현물이전 혜택과 비교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임대료 편익 추정에 활용하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2017년 기준 분석은 교육혜택 등 다른 현물급여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이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도 공표되었으나, 교육 및 의료 혜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2017년 자료를 활용한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 표본수는 60,640가구로 2016년의 20,133가구와 비교해 표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주기는 2016년까지는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었다.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되 신축아파트와 멸실아파트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표 V-10>과 같다.

<표 V-10>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 항목
I.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마련	가구주가 된 연도, 현재주택 거주연도, 점유형태 생애 최초 주택마련 경험(시기, 마련기간, 규모) 거주 외 주택 보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자가: 주택마련시기, 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 구입자금 조달방법(상환 여부, 잔여 대출금, 연체 여부, 월 원리금 상환액) 차가: 임대주택유형, 임차료, 재계약 여부, 계약변동사항 및 금액, 임차료 체납 여부, 임차자금 마련 방법(상환여부, 잔여대출금, 연체 여부, 월 원리금 상환액), 임차료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 주택의 임차료 및 월 대출 상환 부담 수준, 대출금 및 이자 연체 여부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유형, 쪽방 유무, 주택 위치, 주택건축연도, 주택구조, 주택면적, 주택 내부시설, 주택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표 V-10〉의 계속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 항목
Ⅱ.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이사경험	이사경험 여부, 이사횟수, 직전주택 지역, 직전주택 주택유형, 직전주택 점유형태, 직전주택 위치, 직전주택 구조, 직전주택 면적
	이사의향 및 이사 계획	이사계획, 이사 이유(현재/향후), 이사계획 중인 지역, 이사계획 중인 주택 유형, 이사계획 중인 점유형태
	주거의식 조사	주택보유의식
Ⅲ.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 여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 및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그 이유, 공유주택(세어하우스) 입주의향
		주거불안 경험 유무, 주거불안 상담 경험, 주거상담 이용 의향, 원하는 주거상담 방법
Ⅳ.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가구구성(출생연도, 성별,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실제동거 여부, 장애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급여 종류, 주거급여 수급형태, 주거급여가 도움이 된 점, 주거급여 중지 및 탈락 이유)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월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동절기, 하절기, 간절기),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총자산, 부채유무 및 부채액
Ⅴ. 배경문항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통근수단, 통근시간)	
특수가구 추가 조사항목	신혼부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자녀 보육시설, 가족계획
	노인가구	주택개조

주: 밑줄()은 2016년도 조사표와 비교하여 추가된 항목임
 자료: 국토교통부(2017),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p.8, 〈표 1-2〉

나. 기초자료의 특성

1) 임대주택가구 분포

2017년도의 표본에 임대주택가구가 약 2만가구가 포함되어 분석에 충분한 관측치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약 18.3%인 3,555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가구이다. 한편, 2016년도의 임대주택가구는 6,853가구로 2017년도와 비교해 약 1/3 수준이며, 공공임대주택가구 또한 938가구로 2017년도의 관측치보다 적다.

〈표 V-11〉 임대주택가구 관측치

(단위: 가구, %)

연도	전체가구	임대주택가구	전체가구 대비 임대주택가구 비중
2016	20,133	6,853	34.04
2017	60,460	19,455	32.18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2〉 임대주택가구의 구성

(단위: 가구, %)

구분		2016		2017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전체 임대주택가구		6,853	100.00	19,455	100.00
주택 유형	민간임대주택	5,899	86.08	15,713	80.77
	공공임대주택	938	13.69	3,555	18.27
	- 장기임대주택	845	12.33	3,285	16.89
	- 단기임대주택	93	1.36	270	1.39
	기타임대주택	16	0.23	105	0.54
	모름 또는 무응답			82	0.42
점유 유형	전세	2,928	42.73	7,879	40.50
	월세	3,779	55.14	11,169	57.41
	- 보증금 있는 월세	3,549	51.79	10,524	54.09
	- 보증금 없는 월세	230	3.36	645	3.32
	사글세 또는 연세	146	2.13	406	2.09
	일세	0	0.00	1	0.01

주: 임대주택유형에서 2016년 '기타' 항목으로 조사된 것을 2017년에는 '기타임대주택' 과 '모름/무응답'으로 구분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주거실태조사』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자 3,555명 중에서는 장기임대주택자가 3,2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임대주택자는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자와 국민임대주택자로 구성된다. 또한 임대유형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자의 임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가 유사한 비중으로 구성된다. 전체 15,713가구 중 전세는 7,231가구이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7,453가구이다.

〈표 V-13〉 임대주택 유형 및 점유 유형별 관측치(2017년)

(단위: 가구)

구분	임대주택 유형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전체
민간임대	7,231	7,453	623	405	1	15,713
장기공공	420	2,852	12	1	0	3,285
영구임대주택	57	946	3	0	0	1,006
50년 임대주택	62	190	0	0	0	252
국민임대주택	32	1,152	4	0	0	1,188
10년 공공임대주택	94	324	0	0	0	418
장기전세주택	86	0	0	0	0	86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68	123	5	1	0	197
행복주택	0	0	0	0	0	0
기타	2	57	0	0	0	59
모름/무응답	19	60	0	0	0	79
단기공공	102	165	3	0	0	270
기타임대	88	14	3	0	0	105
모름/무응답	38	40	4	0	0	82
전체	7,879	10,524	645	406	1	19,455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거주유형별 소득분포

2017년 『주거실태조사』 가구의 월간 균등화 경상소득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다.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한 균등화 경상소득은 가구의 총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자의 소득분포는 민간임대주택자의 소득 분포보다 저소득 구간으로 더 치우쳐 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자의 평균 균등화 경상소득은 월 195만원인데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자의 소득은 140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자의 소득보다 낮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자의 평균 균등화 소득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자의 경우 월 117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자의 월 170만원보다 낮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거주자의 평균 균등화 소득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자의 경우 월 68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자의 월 119만원보다 낮다. 반면 단기공공임대주택자의 소득 수준이 민간임대주택자의 소득 수준보다 뚜렷하게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자보다 단기공공임대주택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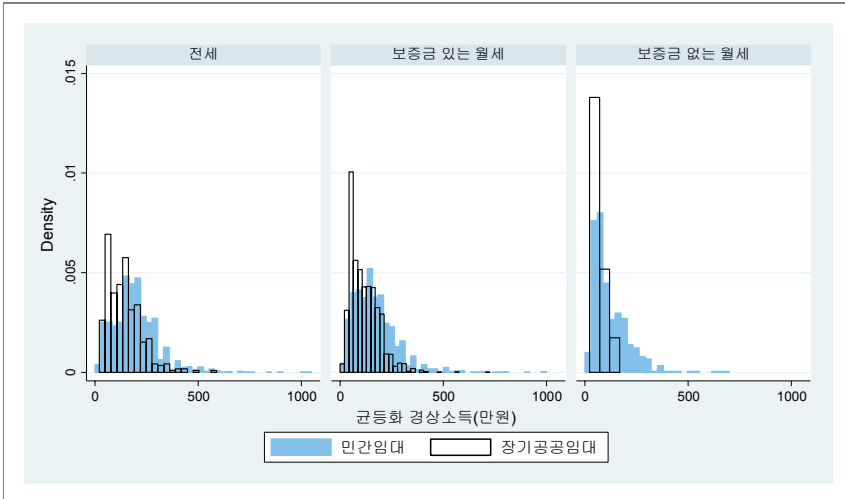
〈표 V-14〉 월간 균등화 경상소득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60,403	171.10	114.91	0	5,196
자가	38,246	175.41	116.33	0	2,550
임대	19,380	168.05	111.94	0	5,196
전세	7,841	192.17	122.90	0	5,196
민간임대	7,197	194.51	124.94	0	5,196
장기공공임대	416	140.19	81.85	20	589
단기공공임대	102	220.32	103.22	0	520
기타	88	222.48	81.53	100	577
보증금 있는 월세	10,490	155.55	101.04	0	2,000
민간임대	7,426	170.00	107.98	0	2,000
장기공공임대	2,845	116.82	68.37	0	727
단기공공임대	165	174.12	72.99	30	389
기타	14	170.14	120.55	0	350
보증금 없는 월세	643	117.52	88.14	0	700
민간임대	621	119.24	88.92	0	700
장기공공임대	12	67.82	37.03	23	167
단기공공임대	3	71.27	30.38	50	106
기타	3	70.47	14.15	57	85
사글세 또는 연세	405	105.39	84.74	0	700
민간임대	404	105.16	84.71	0	700
장기공공임대	1	200.00	-	200	200
일세	1	40.00	-	40	40
민간임대	1	40.00	-	40	40
무상	2,777	133.01	107.76	0	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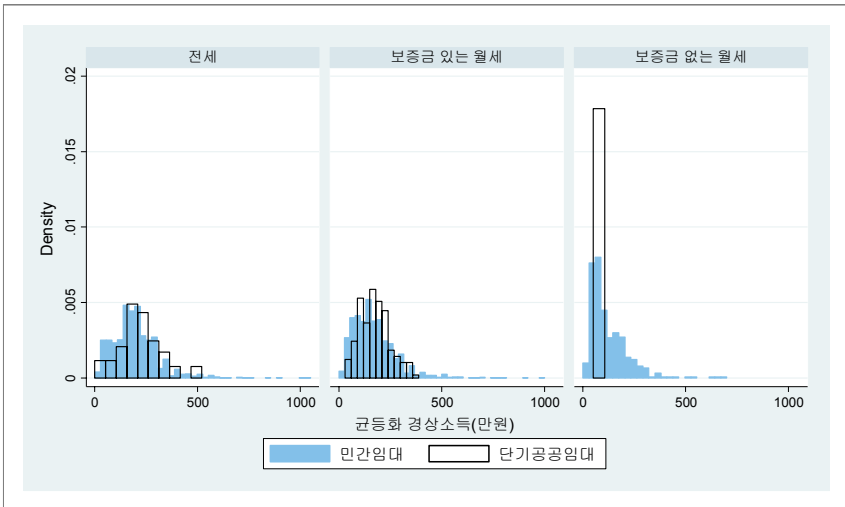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2] 주택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민간임대 vs. 장기공공임대)



주: 민간임대주택자는 월간 균등화 경상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에도 존재하나 위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 주택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민간임대 vs. 단기공공임대)



주: 민간임대주택자는 월간 균등화 경상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에도 존재하나 위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임대유형별 임대료 분포

임대가구의 총임대료는 입주 시 일시적으로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받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임대료로 구분된다. 2017년 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6,826만원과 월 임대료 21만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세가구는 월 임대료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주 초기에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보증금이 다른 거주유형보다 높다.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 3,824만원이다. 장기공공임대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8,991만원으로 민간임대와 단기공공임대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증금 2,271만원에 월세 29만원을 지불한다. 장기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보증금이 높지만 월세는 낮은 반면 단기공공임대보다는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낮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 월 임대료는 25만원 수준이다. 장기공공임대가구의 월세는 12만원으로 민간임대가구의 월세인 26만원과 비교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기공공임대가구의 월세는 9만원으로 민간임대와 장기공공임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표본이 3개뿐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계라고는 할 수 없다.

〈표 V-15〉 보증금 및 월간 임대료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구분	관측치	보증금				월간 임대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대	19,354	6,825.87	10,923.72	0	210,000	17.06	21.38	0	400
전세	7,837	13,823.53	13,658.17	30	210,000				
민간임대	7,192	14,229.05	14,027.38	30	210,000				
장기공공임대	419	8,990.59	6,856.79	200	56,000				
단기공공임대	101	13,751.19	4,504.91	2,500	30,000				
기타	88	4,082.55	5,317.31	247	15,000				
보증금 있는 월세	10,469	2,270.78	4,346.58	10	90,000	28.91	21.35	1	400
민간임대	7,415	2,081.20	4,802.04	10	90,000	34.94	21.94	1	400
장기공공임대	2,836	2,560.56	2,830.03	10	20,000	13.85	8.81	1	150
단기공공임대	164	5,776.45	2,651.47	150	10,000	18.20	12.34	3	55
기타	14	3,728.57	3,623.52	200	7,700	7.93	4.98	3	13
보증금 없는 월세	645					25.18	13.60	1	130
민간임대	623					25.64	13.50	1	130
장기공공임대	12					12.25	9.52	2	40
단기공공임대	3					9.33	2.08	7	11
기타	3					7.00	5.29	3	13
사글세 또는 연세	402					28.05	16.90	1	150
민간임대	401					28.05	16.92	1	150
장기공공임대	1					25.00	-	25	25
일세	1					5.00	-	5	5
민간임대	1					5.00	-	5	5

주: 일세는 하루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월간 임대료 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세 및 보증금을 월간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조사시점인 2017년 6~9월의 지역별·규모별 평균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한다. 즉, 임대료는 월세와 보증금을 월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이다.

$$\text{월간 임대료} = (\text{보증금} \times \text{전월세전환율}) / 12 + \text{월세}$$

〈표 V-16〉 지역별·규모별 전월세전환율

(단위: %)

지역	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전국	5.100	4.300	4.300
서울특별시	4.350	3.900	4.075
부산광역시	5.275	4.300	4.125
대구광역시	4.875	4.200	4.050
인천광역시	5.100	4.500	4.625
광주광역시	5.675	4.600	4.475
대전광역시	6.125	4.375	4.275
울산광역시	5.250	4.400	4.200
세종특별자치시	4.975	4.525	4.575
경기도	4.800	4.400	4.400
강원도	7.625	5.325	4.725
충청북도	6.725	4.850	4.725
충청남도	6.675	5.025	4.675
전라북도	6.625	5.250	4.950
전라남도	9.150	4.400	4.050
경상북도	6.575	5.075	4.400
경상남도	5.625	4.825	4.700
제주특별자치도	5.000	4.725	4.825

주: 2017년 6~9월 평균

자료: 한국감정원, 규모별 전월세전환율,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
검색일자: 2019. 7. 5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 월간 평균 임대료는 약 30만원 수준이다. 이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의 제공근을 이용하여 균등화한 임대료이다. 표본이 충분히 확보된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가구의 장기공공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료가 민간임대와 단기공공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료보다 낮았다. 장기공공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료는 전세의 경우 22만원,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17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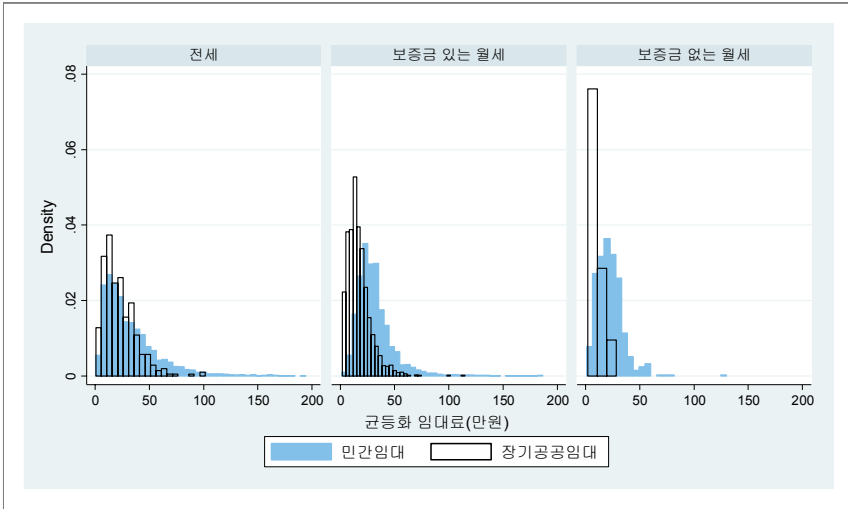
〈표 V-17〉 월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임대	19,354	29.12	22.24	0.23	436.25
전세	7,837	31.80	26.67	0.23	356.56
민간임대	7,192	32.61	27.28	0.23	356.56
장기공공임대	419	22.24	15.17	0.56	101.50
단기공공임대	101	33.69	11.88	7.51	66.09
기타	88	9.65	12.96	0.69	39.70
보증금 있는 월세	10,469	27.81	18.85	1.04	436.25
민간임대	7,415	31.97	19.81	1.04	436.25
장기공공임대	2,836	17.05	10.47	1.77	114.75
단기공공임대	164	26.62	12.26	4.66	68.63
기타	14	14.11	11.89	3.02	39.40
보증금 없는 월세	645	21.93	12.27	1.00	130.00
민간임대	623	22.37	12.17	1.00	130.00
장기공공임대	12	9.43	7.13	2.00	28.28
단기공공임대	3	5.64	1.89	3.50	7.07
기타	3	5.24	3.43	3.00	9.19
사글세 또는 연세	402	22.58	11.70	0.58	106.07
민간임대	401	22.57	11.71	0.58	106.07
장기공공임대	1	25.00	-	25.00	25.00
일세	1	5.00	-	5.00	5.00
민간임대	1	5.00	-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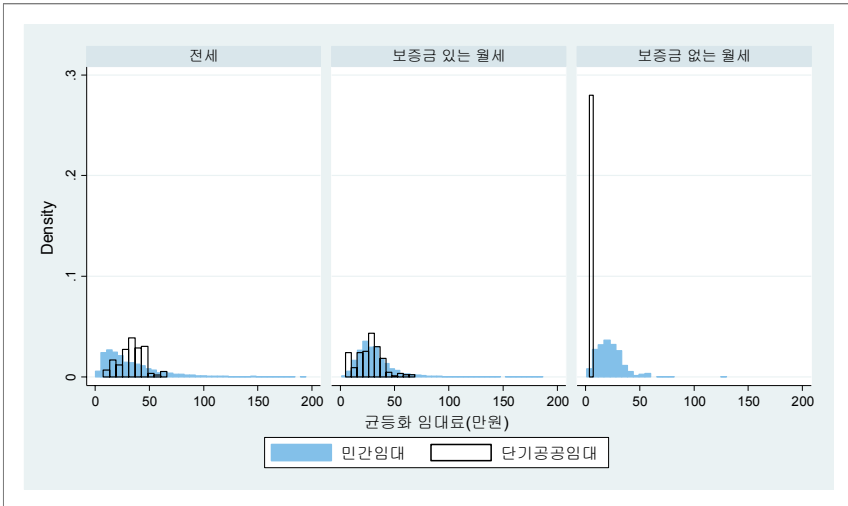
주: 일세는 하루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4] 주택 유형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장기공공임대)



주: 민간임대주택자는 균등화 임대료 200만원 초과 구간에도 존재하나 위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5] 주택 유형별 전월세전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민간임대 vs. 단기공공임대)



주: 민간임대주택자는 균등화 임대료 200만원 초과 구간에도 존재하나 위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임대료 편익 추정 방법

유경준 외(2018)와 통계청(2018b)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대상 가계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편익 추정이 포함되었다. 유경준 외(2018)와 통계청(2018b)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행정자료인 등기부 등본자료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 가구 여부를 파악하여 주거혜택을 추정하였다. 특히, 가계의 임대료 편익은 대상가구에 대한 실거래 전세가액 추정치와 조사 전세가액의 차액을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한 월세금액으로 전환하여 추정하였다. 실거래 전세가격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지오코딩(geocoding)방법으로 역거리추정법을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인근 가구들의 전세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유경준 외(2018), 통계청(2018b)과 달리 유승동·김주영(2017)이 사용한 방법론을 준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혜택 규모를 추정한다. 유경준 외(2018)와 통계청(2018b)의 방법과 같이 등기부 등본자료를 활용하려면 가계의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해당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의 지역 정보는 수도권 여부만 제공되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석도 적합하지 않다.

유승동·김주영(2017)은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세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유승동·김주영(2017)과 달리 월세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월세는 유량(flow) 변수에 속하는 반면, 보증금은 저장(stock) 변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월세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경우 임대료 혜택 금액을 동일한 유량 변수인 소득에 직접 반영하거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승동·김주영(2017)은 식 (V-1)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였다. 임대료의 차이는 가구특성, 주택특성, 지역특성 등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된다. 하지만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택의 임대료를 결정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희박해 보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여 분석한다. 소득, 가구주 연령 및 학력, 가구원 수 등과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임대주택 선택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대료와 상관관계가 높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특성이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특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유형, 규모, 지역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의 소득의 높고 낮음, 가구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은 해당 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log(\text{rent}) = f(T, H, S, E, R) \quad \text{식 (V-1)}$$

- *T*: 임대주택유형(주택유형, 공공임대주택 세부 유형)
- *H*: 주택유형(주택유형, 공공임대주택유형)
- *S*: 주택의 물리적 특성(건축연도, 방의 개수와 면적)
- *E*: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소득)
- *R*: 지역특성 터미(광역자치단체 수준)

라. 임대료 편익 추정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단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다.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는 서울이 가장 크고, 제주, 울산, 경기 순으로 임대료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지역별 편차보다 민간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가 더 크며, 특히 서울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축연한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연한이 21~25년인 임대주택에서 민간과 공공임대주택 간의 임대료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가 일반단독주택은 더 커지지만 다가구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간임대의 월간 임대료는 전용면적, 지역, 건축연한,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르며 분석 결과는 직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임대의 경우 전용면적이 1% 증가할 경우 임대료는 0.5%가량 증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경기, 제주, 인천 순으로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도 나타난다. 건축연한이 오래된 주택일수록 임대료가 낮아진다. 다만 건축연한 10년 이내의 주택은 임대료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건축연한 10년까지는 임대료에 큰 변화가 없다가 11년 이후부터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에 비해 일반단독주택의 임대료는 낮지만 다가구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8〉 임대료 회귀분석 결과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주택유형더미 (민간임대주택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3.818***	(0.134)
	단기공공임대주택	-3.699***	(0.144)
ln(면적(m ²)) x 공공임대주택더미(장단기공공임대=1)		0.709***	(0.032)
지역더미 (서울특별시 기준) x 공공임대주택더미 (장단기공공임대=1)	부산광역시	0.492***	(0.043)
	대구광역시	0.551***	(0.045)
	인천광역시	0.521***	(0.049)
	광주광역시	0.536***	(0.049)
	대전광역시	0.659***	(0.055)
	울산광역시	0.312***	(0.058)
	세종특별자치시	0.609***	(0.083)
	경기도	0.385***	(0.034)
	강원도	0.619***	(0.055)
	충청북도	0.793***	(0.052)
	충청남도	0.420***	(0.055)
	전라북도	0.640***	(0.051)
전라남도	0.800***	(0.058)	

〈표 V-18〉의 계속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지역더미 (서울특별시 기준) x 공공임대주택더미 (장단기공공임대=1)	경상북도	0.667***	(0.058)
	경상남도	0.621***	(0.054)
	제주특별자치도	0.283***	(0.060)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x 공공임대주택더미 (장단기공공임대=1)	건축연한 3~5년	-0.083**	(0.041)
	건축연한 6~10년	-0.308***	(0.037)
	건축연한 11~15년	-0.353***	(0.040)
	건축연한 16~20년	-0.234***	(0.043)
	건축연한 21~25년	-0.502***	(0.042)
	건축연한 26~30년	-0.370***	(0.048)
	건축연한 30년 초과	-0.163**	(0.066)
주택유형더미 (아파트 기준) x 공공임대주택더미 (장단기공공임대=1)	일반단독주택	-0.988***	(0.277)
	다가구단독주택	0.320***	(0.059)
	영업겸용단독주택	0.258	(0.276)
	연립주택	-0.038	(0.141)
	다세대주택	0.574***	(0.075)
ln(전용면적(m ²))		0.476***	(0.011)
지역더미 (서울특별시 기준)	부산광역시	-0.626***	(0.020)
	대구광역시	-0.697***	(0.021)
	인천광역시	-0.532***	(0.021)
	광주광역시	-0.746***	(0.026)
	대전광역시	-0.694***	(0.025)
	울산광역시	-0.546***	(0.025)
	세종특별자치시	-0.799***	(0.031)
	경기도	-0.371***	(0.015)
	강원도	-0.754***	(0.032)
	충청북도	-0.845***	(0.029)
	충청남도	-0.789***	(0.024)
	전라북도	-0.870***	(0.027)
	전라남도	-0.928***	(0.029)
	경상북도	-0.808***	(0.026)
	경상남도	-0.652***	(0.022)
	제주특별자치도	-0.435***	(0.033)

〈표 V-18〉의 계속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건축연한 3~5년	0,017	(0.027)
	건축연한 6~10년	0,003	(0.025)
	건축연한 11~15년	-0.151***	(0.024)
	건축연한 16~20년	-0.282***	(0.024)
	건축연한 21~25년	-0.362***	(0.023)
	건축연한 26~30년	-0.499***	(0.024)
	건축연한 30년 초과	-0.596***	(0.024)
주택유형더미 (아파트 기준)	일반단독주택	-0.678***	(0.020)
	다가구단독주택	-0.528***	(0.013)
	영업겸용단독주택	-0.343***	(0.026)
	연립주택	-0.455***	(0.025)
	다세대주택	-0.557***	(0.018)
상수	2,872***	(0.054)	
관측치	14,220		
결정계수(R ²)	0.650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위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특정 조건 기준으로 해석하면 〈표 V-19〉와 같다. 서울의 전용면적 59m²의 신축 아파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39.57% 수준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단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57% 수준으로 상승한다.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를 서울이 아닌 충청북도에서 임대할 경우 주변 민간임대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87.46%로 상승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서울보다 충청북도가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른 조건을 유지한 채 건축연한이 11~15년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의 27.8%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단독주택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의 54.5% 수준으로 상승한다. 전용면적이 59m²에서 84m²로 넓어질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의 50.8% 수준으로 상승한다.

〈표 V-19〉 회귀분석 해석 예시

구분	기준		단기	총청복도	건축연한 11~15년	다가구 단독주택	면적 84m ²
공공임대 장단기 여부	장기	0.0220	0.0247	0.0220	0.0220	0.0220	0.0220
지역	서울	1.0000	1.0000	2.2100	1.0000	1.0000	1.0000
건축연한	신축	1.0000	1.0000	1.0000	0.7026	1.0000	1.0000
주택유형	아파트	1.0000	1.0000	1.0000	1.0000	1.3771	1.0000
면적	59m ²	18.0108	18.0108	18.0108	18.0108	18.0108	23.1374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0.3957	0.4457	0.8746	0.2780	0.5450	0.5084

자료: 〈표 V-18〉의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평균적으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5.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평균임대료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약 27.6~81.3% 수준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27.6% 수준으로 가장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종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같은 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81.3% 수준으로 그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은 대체로 건축연한이 오래된 주택일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연한이 3년 미만인 신축 주택의 임대료 격차는 약 64.3%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이 가장 낮은 시점은 건축연한이 21~25년된 시점으로 그 비중은 약 28.7%이다.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은 주택유형별로도 편차가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그 비율은 약 44.9% 수준이다.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그 비율이 약 20.9%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표본이 7개에 불과해 모집단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세대주택의 경우 그 비율이 72.3%로 다른 유형의 주택과 비교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간의 임대료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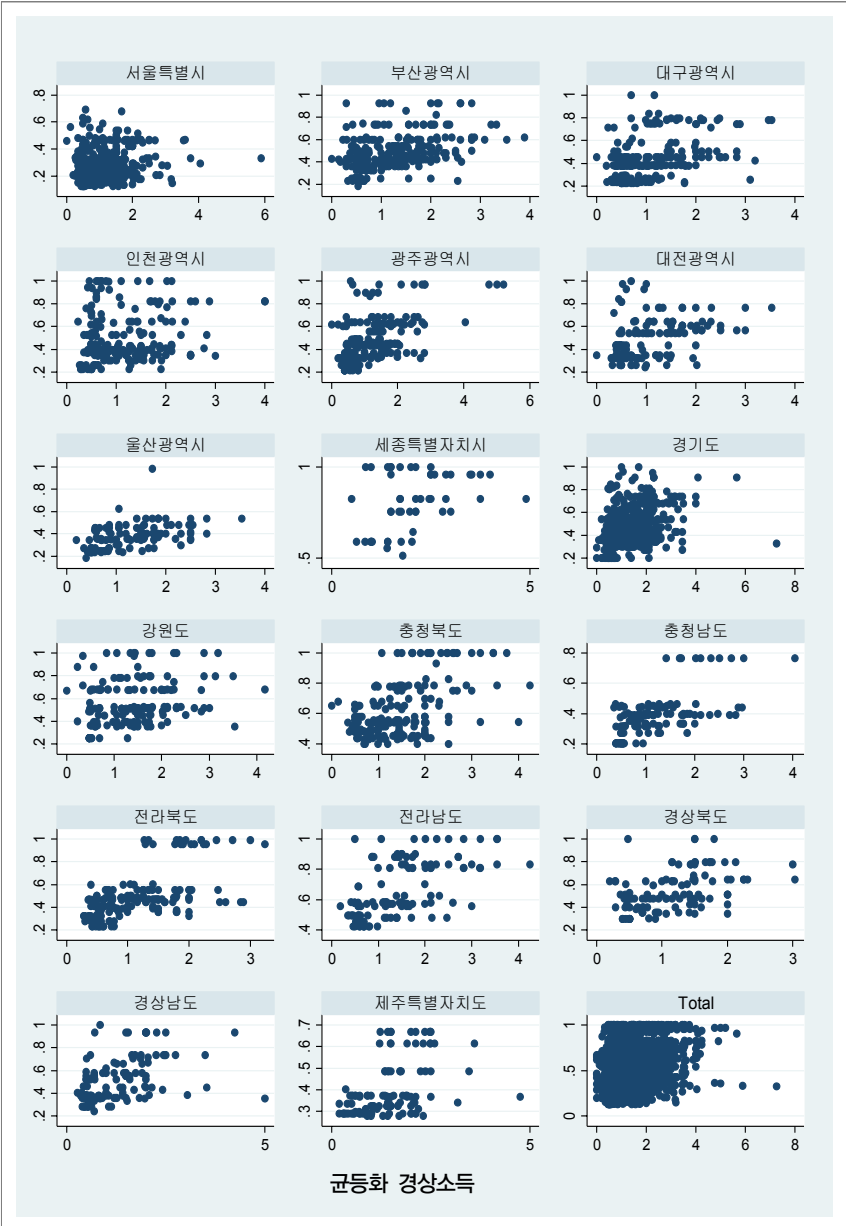
〈표 V-20〉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3,555	0.4588	0.1929	0.1266	1.0000
공공임대 유형	장기	3,285	0.4341	0.1717	0.1266	1.0000
	단기	270	0.7584	0.1855	0.1811	1.0000
지역	서울특별시	446	0.2762	0.1090	0.1266	0.6910
	부산광역시	276	0.4715	0.1657	0.1811	0.9258
	대구광역시	242	0.4239	0.1757	0.2269	1.0000
	인천광역시	197	0.5038	0.2195	0.2282	1.0000
	광주광역시	220	0.4717	0.1848	0.2165	1.0000
	대전광역시	144	0.4867	0.1788	0.2394	1.0000
	울산광역시	115	0.3779	0.1117	0.1811	0.9847
	세종특별자치시	50	0.8129	0.1553	0.5146	1.0000
	경기도	733	0.4412	0.1492	0.1991	1.0000
	강원도	164	0.5638	0.1966	0.2515	1.0000
	충청북도	192	0.6096	0.1768	0.3978	1.0000
	충청남도	125	0.3792	0.1391	0.2063	0.7643
	전라북도	175	0.4899	0.1942	0.2336	0.9873
	전라남도	122	0.6641	0.1824	0.4230	1.0000
	경상북도	113	0.5344	0.1756	0.2958	1.0000
	경상남도	126	0.5115	0.1882	0.242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115	0.3989	0.1260	0.2782	0.6665	
건축연한	3년 미만	555	0.6429	0.2063	0.2971	1.0000
	3~5년	522	0.5590	0.1730	0.1414	0.9873
	6~10년	936	0.4165	0.1007	0.2204	0.9311
	11~15년	384	0.4244	0.1176	0.1801	0.8752
	16~20년	328	0.3897	0.1549	0.1790	0.9381
	21~25년	367	0.2639	0.0862	0.1266	0.8214
	26~30년	221	0.2865	0.1127	0.1406	0.7221
	30년 초과	80	0.4713	0.2001	0.2282	1.0000
주택유형	일반단독주택	7	0.2091	0.0465	0.1301	0.2619
	다가구단독주택	144	0.5681	0.2419	0.1414	1.0000
	영업겸용단독주택	7	0.6493	0.1601	0.4088	0.8591
	아파트	3,308	0.4485	0.1847	0.1266	1.0000
	연립주택	14	0.4147	0.1220	0.3123	0.7172
	다세대주택	74	0.7226	0.1942	0.3478	1.0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6] 지역별 경상소득과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의 결합분포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을 이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월 임대료 편익은 전국 평균 약 23만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구원 수를 통제한 균등화 임대료 편익 기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이 가장 높아 45만원이며, 세종의 임대료 편익은 약 6만원으로 가장 낮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28만원, 제주 27만원, 울산 26만원, 부산 21만원 순이다. 전라남도의 임대료 편익은 9만원으로 세종 다음으로 낮다.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6~20년 경과한 주택의 임대료 편익이 26만원으로 가장 높다. 건축연한을 30년 초과한 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14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신축 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17만원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임대료 편익은 평균 24만원이다. 다가구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각각 14만원과 9만원 수준으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려면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 편익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하지만, [그림 V-기을 통해 소득과 임대료 편익 간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료 편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 높은 민간임대주택자와 자가 소유자와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자 간의 임대료 편익은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1〉 균등화 임대료 편익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3,536	23.22	17.67	0.00	234.32
공공임대 유형	장기	3,268	24.33	17.69	0.00	234.32
	단기	268	9.70	10.37	0.00	66.23
지역	서울특별시	445	44.80	26.63	1.11	234.32
	부산광역시	275	21.20	11.94	0.96	141.92
	대구광역시	242	18.77	9.13	0.00	56.20
	인천광역시	193	18.44	13.37	0.00	53.47
	광주광역시	220	16.23	7.87	0.00	40.94
	대전광역시	144	15.68	8.84	0.00	41.26
	울산광역시	115	25.66	9.36	0.94	49.19
	세종특별자치시	50	5.51	4.38	0.00	17.77
	경기도	724	28.42	16.71	0.00	233.83
	강원도	163	15.77	10.33	0.00	45.60
	충청북도	192	12.46	8.68	0.00	41.96
	충청남도	125	20.20	10.19	6.35	79.10
	전라북도	174	15.41	9.22	0.39	48.92
	전라남도	121	9.10	5.50	0.00	29.91
	경상북도	113	14.42	8.24	0.00	39.96
	경상남도	126	20.62	14.78	0.00	80.07
	제주특별자치도	114	27.29	9.07	4.90	54.22
건축연한	3년 미만	554	16.48	14.60	0.00	151.90
	3~5년	520	23.29	17.03	0.39	133.65
	6~10년	928	27.91	15.74	1.11	113.18
	11~15년	384	23.30	12.45	0.75	67.51
	16~20년	326	25.90	21.31	1.13	234.32
	21~25년	366	25.88	20.16	1.65	233.83
	26~30년	219	23.50	20.61	1.83	174.91
	30년 초과	80	13.77	11.70	0.00	51.04
주택유형	일반단독주택	7	57.39	76.14	1.58	224.46
	다가구단독주택	142	14.23	17.11	0.00	68.94
	영업겸용단독주택	6	15.25	15.86	1.70	39.84
	아파트	3,292	23.88	17.16	0.00	234.32
	연립주택	14	18.14	17.47	1.83	58.95
	다세대주택	74	8.60	12.11	0.00	67.51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7] 지역별 경상소득과 임대료 편익의 결합분포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결

가. 연결 방법

제3절에서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였다.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가계의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계의 소득분포에 대한 연구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많이 활용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주거혜택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편익 추정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다만, 현물이전에는 주거혜택뿐만 아니라 교육, 보육, 의료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며, 현물이전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거혜택 이외의 다른 현물이전 혜택을 추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물이전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임대료 편익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해야 한다. 이는 제Ⅳ장 제3절 「나. 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미시자료 매칭」에서 논의한 방법과 동일하게 두 자료에서 유사한 특성의 가구는 유사한 주거혜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식별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의 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식별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식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자료의 연결은 두 가지 회귀방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임대주택 거주 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에 대한 회귀방정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료 편익에 대한 회귀방정식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별 임대주택 가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주거혜택은 두 회귀방정식으로 도출한 추정치의 곱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주거혜택을 반영하여 분배지표를 계산할 경우 지니계수와 같이 개별 관측치 수준에서 정확히 추정되어야 하는 지표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배지표로 지니계수보다는 5분위 배율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 소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니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의 오차항에 대한 난수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 특성을 비교한 위 두 자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두 회귀방정식의 추정 방법과 결과를 살펴본다.

나.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비교

『주거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임대료 편익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할 때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식별 가능한 가구의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원 수 등의 인구사회적인 특성과 소득과 자산 등의 정보,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중 거주주택에 대한 정보의 경우 『주거실태조사』에는 상당히 풍부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그렇지 못해 『주거실태조사』에서 분석된 부분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결하면 정보가 소실되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인데,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시·도 이상의 자세한 지역 정보가 존재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거주지역의 수도권 여부만 식별 가능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연결을 위한 분석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서 거주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다만, 임대료의 경우 수도권 내외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 여부로만 구분할 경우 많은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두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별도로 보고한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계가 월세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가계의 월세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거주비에 다른 주거 관련 지출을 포함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월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해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연결하는 회귀방정식에서는 월세는 고려하지 않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고려한다. 이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임대료 편익을 연결하면 월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표 V-22>와 같이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간의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지역 정보와 월세 정보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거주자의 보다 상세한 지역정보와 월세 정보를 공개한다면 현재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22> 거주주택 관련 『주거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식별 정보 비교

구분	『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역	• 시·도 등 지역정보	• 수도권 여부만 식별 가능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는 주거비에 통합 보고하여 식별 불가
주택유형	• 일반단독주택 • 다가구단독주택 • 영업겸용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건물 등) 내 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기타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기타
점유유형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 또는 연세 • 일세 • 무상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설계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연결한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임대료 등 거주실태에 대한 조사는 2017년 기준이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2017년 소득과 임대료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7년 『주거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소득은 전년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에 두 자료의 연결을 위해 소득변수를 활용할 경우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2016년 기준 소득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 연동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2018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된 가계에 대해서는 2016년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18,640개 가계 중 24.29%의 가구인 4,527개 가계가 2018년에 처음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계의 2016년 소득은 조사 가계의 2016년 소득과 그 밖의 식별 정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보완하였다.

다. 공공임대주택 편익 추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제3절에서 추정된 임대료 편익을 『주거실태조사』 가구의 특성변수에 회귀분석하여 도출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그 분석 결과는 〈표 V-2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임대료 편익은 전월세보증금, 장애인가구원 존재 유무, 수도권 여부, 가구주 연령과 성별, 가구원 수, 거주주택의 점유유형과 주택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소득(전년도 경상소득³⁷⁾이나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종사상 지위는 임대료 편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각 가계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으로는 〈표 V-23〉의 모형 (8)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37)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은 2016년에 대한 소득을 조사한다.

〈표 V-2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ln(전세보증금)	0.504*** (0.032)	0.501*** (0.032)	0.500*** (0.032)	0.496*** (0.032)	0.504*** (0.032)	0.503*** (0.032)	0.500*** (0.032)	0.499*** (0.032)
ln(월세보증금)	0.364*** (0.016)	0.365*** (0.016)	0.362*** (0.015)	0.363*** (0.015)	0.364*** (0.015)	0.367*** (0.015)	0.361*** (0.015)	0.364*** (0.015)
ln(전용면적 (m ²))	-1.449*** (0.050)	-1.448*** (0.050)	-1.454*** (0.050)	-1.453*** (0.050)	-1.454*** (0.050)	-1.448*** (0.050)	-1.458*** (0.050)	-1.453*** (0.050)
ln(전년도 경상소득)	-0.027 (0.024)	-0.005 (0.022)	-0.029 (0.024)	-0.008 (0.022)	-	-	-	-
장애가구원 존재 유무	-0.061* (0.032)	-0.074** (0.032)	-0.062* (0.032)	-0.076** (0.032)	-0.060* (0.032)	-0.074** (0.032)	-0.061* (0.032)	-0.075** (0.032)
수도권 여부	0.663*** (0.023)	0.663*** (0.023)	0.664*** (0.023)	0.664*** (0.023)	0.668*** (0.023)	0.668*** (0.023)	0.669*** (0.023)	0.669*** (0.023)

가구주 특성

연령	0.014** (0.005)	0.016*** (0.005)	0.016*** (0.005)	0.018*** (0.005)	0.014** (0.005)	0.016*** (0.005)	0.016*** (0.005)	0.018*** (0.005)
(연령) 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 (남=1, 여=2)	0.062** (0.027)	0.059** (0.027)	0.060** (0.026)	0.058** (0.026)	0.066** (0.027)	0.061** (0.026)	0.065** (0.026)	0.060** (0.026)

가구원 수(1명 = 1)

2명	0.155*** (0.032)	0.153*** (0.032)	0.161*** (0.032)	0.161*** (0.032)	0.146*** (0.031)	0.151*** (0.031)	0.151*** (0.031)	0.157*** (0.030)
3명	0.190*** (0.040)	0.188*** (0.040)	0.195*** (0.040)	0.193*** (0.040)	0.177*** (0.038)	0.187*** (0.038)	0.180*** (0.038)	0.190*** (0.037)
4명	0.206*** (0.044)	0.202*** (0.044)	0.205*** (0.044)	0.201*** (0.044)	0.190*** (0.042)	0.200*** (0.042)	0.188*** (0.042)	0.198*** (0.042)
5명	0.217*** (0.063)	0.208*** (0.063)	0.219*** (0.063)	0.211*** (0.063)	0.194*** (0.061)	0.201*** (0.061)	0.196*** (0.061)	0.202*** (0.061)
6명 이상	-0.019 (0.141)	-0.034 (0.141)	-0.020 (0.141)	-0.033 (0.141)	0.008 (0.137)	0.010 (0.137)	0.005 (0.137)	0.008 (0.137)

가구주 교육 수준(초등학교 이하 = 1)

중학교	0.042 (0.038)	0.044 (0.038)	-	-	0.038 (0.038)	0.042 (0.038)	-	-
고등학교	0.018 (0.037)	0.022 (0.037)	-	-	0.014 (0.037)	0.021 (0.037)	-	-
대학교	-0.020 (0.046)	-0.019 (0.045)	-	-	-0.021 (0.046)	-0.015 (0.045)	-	-
대학원 이상	-0.184* (0.094)	-0.184* (0.094)	-	-	-0.172* (0.094)	-0.167* (0.093)	-	-

〈표 V-23〉의 계속

구분	(1)	(2)	(3)	(4)	(5)	(6)	(7)	(8)
중사상 지위(상용근로자 = 1)								
임시·일용 근로자	0.028 (0.037)	-	0.039 (0.037)	-	0.033 (0.037)	-	0.044 (0.036)	-
고용원 있는 사업자	-0.047 (0.100)	-	-0.060 (0.100)	-	0.029 (0.096)	-	0.015 (0.096)	-
고용원 없는 자영자	0.014 (0.041)	-	0.019 (0.041)	-	0.015 (0.041)	-	0.019 (0.041)	-
기타	-0.078** (0.040)	-	-0.071* (0.039)	-	-0.061* (0.037)	-	-0.054 (0.036)	-
점유유형(전세 = 1)								
보증금 있는 월세	1.679*** (0.273)	1.642*** (0.273)	1.665*** (0.273)	1.623*** (0.272)	1.682*** (0.273)	1.655*** (0.273)	1.669*** (0.273)	1.639*** (0.273)
보증금 없는 월세	3.604*** (0.324)	3.585*** (0.324)	3.568*** (0.323)	3.546*** (0.323)	3.609*** (0.324)	3.606*** (0.324)	3.573*** (0.323)	3.570*** (0.322)
주택유형(단독주택 = 1)								
아파트	0.886*** (0.054)	0.888*** (0.054)	0.886*** (0.054)	0.888*** (0.054)	0.884*** (0.054)	0.888*** (0.054)	0.885*** (0.054)	0.888*** (0.054)
연립주택	-0.426*** (0.086)	-0.425*** (0.086)	-0.421*** (0.086)	-0.420*** (0.086)	-0.429*** (0.086)	-0.429*** (0.086)	-0.424*** (0.086)	-0.424*** (0.086)
기타	0.909 (0.637)	0.978 (0.637)	0.876 (0.637)	0.947 (0.637)	0.917 (0.639)	0.969 (0.638)	0.887 (0.638)	0.944 (0.638)
상수	2.795*** (0.327)	2.651*** (0.322)	2.793*** (0.327)	2.656*** (0.322)	2.667*** (0.319)	2.589*** (0.318)	2.661*** (0.319)	2.589*** (0.318)
관측치 결정계수(R ²)	3,525 0.461	3,525 0.459	3,525 0.460	3,525 0.458	3,536 0.461	3,536 0.460	3,536 0.460	3,536 0.459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추정

임대주택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을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 결과는 〈표 V-24〉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추정한 임대료 편익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에는 가계의 소득, 가구주의 학력과 중사상 지위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총자산을 설명변수에 포함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에 대한

설명력이 사라진다. 이는 전세 거주자의 경우 총자산과 전세보증금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설명변수에서 총자산을 제외하고 전세보증금 등 다른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형 (5)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표 V-24〉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추정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ln(전세보증금)	0.022 (0.035)	0.026 (0.035)	0.009 (0.034)	0.012 (0.034)	-0.148*** (0.031)	-0.147*** (0.031)	-0.171*** (0.030)	-0.172*** (0.030)
ln(월세보증금)	0.398*** (0.023)	0.402*** (0.023)	0.394*** (0.023)	0.398*** (0.023)	0.232*** (0.017)	0.233*** (0.017)	0.221*** (0.017)	0.220*** (0.017)
ln(전용면적(m ²))	-0.849*** (0.051)	-0.855*** (0.050)	-0.864*** (0.050)	-0.872*** (0.050)	-0.915*** (0.050)	-0.925*** (0.050)	-0.937*** (0.050)	-0.949*** (0.049)
ln(전년도 경상소득)	-0.303*** (0.026)	-0.307*** (0.024)	-0.313*** (0.026)	-0.321*** (0.024)	-0.352*** (0.025)	-0.361*** (0.023)	-0.366*** (0.025)	-0.381*** (0.022)
ln(총자산)	-0.229*** (0.020)	-0.234*** (0.020)	-0.237*** (0.020)	-0.242*** (0.019)	-	-	-	-
장애가구원 존재 유무	0.446*** (0.054)	0.446*** (0.054)	0.451*** (0.054)	0.452*** (0.053)	0.465*** (0.053)	0.467*** (0.053)	0.473*** (0.053)	0.478*** (0.053)

가구주 특성

연령	0.058*** (0.007)	0.057*** (0.006)	0.060*** (0.006)	0.059*** (0.006)	0.053*** (0.007)	0.051*** (0.006)	0.054*** (0.006)	0.053*** (0.006)
(연령) 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 (남=1, 여=2)	0.046 (0.037)	0.046 (0.037)	0.063* (0.037)	0.065* (0.037)	0.064* (0.037)	0.066* (0.037)	0.087** (0.037)	0.093** (0.036)

가구원 수(1명 = 1)

2명	0.328*** (0.045)	0.328*** (0.045)	0.336*** (0.045)	0.338*** (0.045)	0.344*** (0.045)	0.345*** (0.045)	0.353*** (0.045)	0.358*** (0.044)
3명	0.443*** (0.053)	0.444*** (0.053)	0.452*** (0.053)	0.454*** (0.053)	0.477*** (0.053)	0.479*** (0.053)	0.488*** (0.053)	0.492*** (0.053)
4명	0.477*** (0.058)	0.474*** (0.058)	0.483*** (0.058)	0.480*** (0.057)	0.518*** (0.057)	0.516*** (0.057)	0.528*** (0.057)	0.525*** (0.057)

〈표 V-24〉의 계속

구분	(1)	(2)	(3)	(4)	(5)	(6)	(7)	(8)
5명	0.651*** (0.083)	0.644*** (0.083)	0.665*** (0.083)	0.658*** (0.083)	0.699*** (0.083)	0.691*** (0.082)	0.719*** (0.082)	0.711*** (0.082)
6명 이상	0.502*** (0.166)	0.509*** (0.166)	0.497*** (0.166)	0.508*** (0.165)	0.540*** (0.165)	0.551*** (0.165)	0.538*** (0.165)	0.554*** (0.165)

가구주 교육 수준(초등학교 이하 = 1)

중학교	-0.052 (0.059)	-0.051 (0.058)	-	-	-0.066 (0.058)	-0.063 (0.058)	-	-
고등학교	-0.116** (0.056)	-0.119** (0.056)	-	-	-0.158*** (0.056)	-0.163*** (0.056)	-	-
대학교	-0.215*** (0.066)	-0.223*** (0.065)	-	-	-0.286*** (0.065)	-0.300*** (0.065)	-	-
대학원 이상	-0.482*** (0.113)	-0.483*** (0.113)	-	-	-0.564*** (0.112)	-0.571*** (0.111)	-	-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 1)

임시·일용 근로자	-0.020 (0.049)	-	0.007 (0.048)	-	0.001 (0.048)	-	0.038 (0.048)	-
고용원 있는 사업자	-0.444*** (0.099)	-	-0.452*** (0.100)	-	-0.486*** (0.099)	-	-0.500*** (0.099)	-
고용원 없는 자영자	-0.088* (0.052)	-	-0.078 (0.052)	-	-0.113** (0.052)	-	-0.102** (0.051)	-
기타	-0.030 (0.052)	-	-0.010 (0.052)	-	-0.016 (0.052)	-	0.011 (0.051)	-

점유유형(전세 = 1)

보증금 있는 월세	-2.090*** (0.280)	-2.101*** (0.279)	-2.177*** (0.277)	-2.189*** (0.277)	-2.107*** (0.277)	-2.113*** (0.277)	-2.217*** (0.275)	-2.225*** (0.274)
보증금 없는 월세	-1.555*** (0.299)	-1.566*** (0.298)	-1.702*** (0.295)	-1.722*** (0.295)	-1.686*** (0.297)	-1.691*** (0.297)	-1.874*** (0.294)	-1.894*** (0.293)

주택유형(단독주택 = 1)

아파트	2.250*** (0.045)	2.253*** (0.045)	2.245*** (0.045)	2.246*** (0.045)	2.223*** (0.044)	2.224*** (0.044)	2.214*** (0.044)	2.213*** (0.044)
연립주택	0.615*** (0.066)	0.621*** (0.066)	0.620*** (0.066)	0.626*** (0.066)	0.613*** (0.066)	0.621*** (0.066)	0.618*** (0.066)	0.628*** (0.066)

〈표 V-24〉의 계속

구분	(1)	(2)	(3)	(4)	(5)	(6)	(7)	(8)
기타	-1.206*** (0.325)	-1.219*** (0.324)	-1.237*** (0.328)	-1.252*** (0.327)	-1.247*** (0.329)	-1.267*** (0.328)	-1.310*** (0.337)	-1.338*** (0.337)
상수	1.911*** (0.332)	1.978*** (0.325)	1.943*** (0.329)	2.033*** (0.322)	2.022*** (0.329)	2.126*** (0.322)	2.049*** (0.326)	2.184*** (0.319)
관측치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pseudo-R ²	0.476	0.475	0.475	0.473	0.468	0.466	0.466	0.464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Ⅵ. 현물이전 추정 결과

1. 추정된 현물이전 총량

앞에서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공적현물이전이 가계에 귀착되는 혜택의 추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에서 논의한 방법을 통해 추정된 2017년 기준 공적현물이전의 규모는 약 121.6조원이다. 이는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에서 2017년 일반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인 153.7조원³⁸⁾의 약 79.1% 수준이다. 국민계정의 사회적 현물이전과 비교해 본 연구에서는 오락, 문화, 종교, 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현물이전이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 부문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³⁹⁾이 빠져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주거 부문에서 추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국민계정의 사회적 현물이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석 대상 전체 공적현물이전 중에서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93.4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혜택은 분석 대상 현물이전의 54.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혜택은 39.40%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혜택은 분석 대상 현물이전 전체의 약 3.15%를 차지해 비중 면에서 다른 현물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3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 최종 검색일: 2019. 10. 18.

39)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현물이전도 분석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표 VI-1〉 추정된 현물이전 총량

(단위: 억원, %)

구분	현물이전 규모	비중
합계	1,216,217	100.00
• 교육 및 보육	661,876	54.42
- 교육	657,202	54.04
- 보육	4,674	0.38
• 의료	516,023	42.43
- 건강보험	479,221	39.40
- 의료급여	36,803	3.03
• 주거(공공임대주택)	38,317	3.15

자료: 저자 작성

2.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

앞에서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가계에 귀착되는 혜택의 추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추정된 각 현물이전 혜택 규모에 대하여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소득분위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경상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의 시장소득과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된 소득이다.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의 전체 평균 규모는 연간 약 617.5만원으로 분석된다. 가계에 연간 이전되는 현물이전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지원이 333.7만원으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지원이 243.3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다. 보육 지원과 의료급여는 각각 2.4만원과 18.7만원 수준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혜택은 약 19.5만원으로 분석된다.

현물이전 규모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현물이전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의 규모는 1분위 370.8만원에서 10분위는 821.3만원으로 증가한다. 저소득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현물이전 고소득층에 이전되는 이유는 교육 지원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현물이전의 경우 1분위에 귀착되는 평균 규모는 각각 43.0만원인 반면, 10분위에 귀착되는 평균 규모는 약

539.5만원으로 나타난다. 교육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귀착되는 이유는 고소득층의 가구 구성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소득층의 경우 대체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다. 소득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생애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40~50대에 교육의 대상자인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혜택과 주거혜택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귀착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혜택의 경우 2분위의 혜택이 308.3만원으로 가장 높고, 9분위의 혜택이 221.7만원으로 가장 낮다. 소득수준이 낮아 질수록 의료혜택이 커지는 것은 수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고려되는 의료급여 때문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1분위의 혜택은 91.0만원인 반면 6분위의 혜택은 1.6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7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은 소득분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과 감소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의료혜택은 의료비 지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혜택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가 아닌 높은 수가의 비급여 대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혜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혜택이 소득수준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의 경우에도 2분위에서 39.4만원으로 혜택이 가장 큰 반면, 10분위의 평균 혜택은 3.8만원으로 가장 낮다.

〈표 VI-2〉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만원)

소득 계층	경상 소득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 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전체	5,704.8	617.5	336.1	333.7	2.4	262.0	243.3	18.7	19.5
1분위	690.3	370.8	43.0	43.0	0.0	291.1	200.1	91.0	36.7
2분위	1,423.2	460.3	112.7	111.8	0.9	308.3	246.5	61.8	39.4
3분위	2,220.9	503.9	202.7	200.8	1.9	276.4	254.3	22.2	24.8
4분위	3,091.2	553.5	260.2	258.4	1.8	267.1	260.0	7.0	26.3
5분위	3,994.4	601.1	332.3	329.9	2.4	250.1	246.9	3.2	18.6
6분위	4,935.9	661.9	398.7	395.1	3.7	245.7	244.0	1.6	17.5
7분위	6,074.0	693.7	433.0	428.3	4.7	247.3	247.3	0.0	13.4
8분위	7,581.0	758.4	513.3	509.3	4.0	236.6	236.6	0.0	8.6
9분위	9,793.0	750.9	523.6	521.4	2.2	221.7	221.7	0.0	5.6
10분위	17,256.8	821.3	541.7	539.5	2.2	275.9	275.9	0.0	3.8

자료: 저자 작성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현물이전 절대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물이전 규모를 소득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의 평균 비율은 10.83%이며,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분위의 53.72%에서 10분위의 4.76%로 감소한다. 뒤에서 현물이전이 소득 분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분배지표 변화의 방향성에는 현물이전의 절대 규모보다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율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현물이전이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이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와 주거 혜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상대적인 규모가 낮아지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경상소득 대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지원이 1분위에서 각각 28.99%와 13.18%인 반면, 10분위에서는 각각 1.60%와 0%이다. 경상소득 대비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또한 1분위의 5.31%에서 10분위의 0%로 소득수준과

함께 감소한다. 한편, 경상소득 대비 교육 및 보육 지원 비율은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가 관찰된다. 특히 3~6분위에서 경상소득 대비 교육 및 보육지원 비율이 높다. 특히, 경상소득 대비 교육 지원의 경우 3분위에서 9.04%로 가장 높다.

〈표 VI-3〉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중(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

소득 계층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10.83	5.89	5.85	0.04	4.59	4.27	0.33	0.34
1분위	53.72	6.23	6.23	0.00	42.17	28.99	13.18	5.31
2분위	32.35	7.92	7.85	0.06	21.66	17.32	4.34	2.77
3분위	22.69	9.13	9.04	0.09	12.45	11.45	1.00	1.12
4분위	17.91	8.42	8.36	0.06	8.64	8.41	0.23	0.85
5분위	15.05	8.32	8.26	0.06	6.26	6.18	0.08	0.47
6분위	13.41	8.08	8.00	0.07	4.98	4.94	0.03	0.36
7분위	11.42	7.13	7.05	0.08	4.07	4.07	0.00	0.22
8분위	10.00	6.77	6.72	0.05	3.12	3.12	0.00	0.11
9분위	7.67	5.35	5.32	0.02	2.26	2.26	0.00	0.06
10분위	4.76	3.14	3.13	0.01	1.60	1.60	0.00	0.02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는 소득분위를 가구원 수를 통제하지 않은 가구의 총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소득분위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소득분포와 어떤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많은 경우 가구원 수를 통제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한다. 따라서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할 경우의 현물이전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이전의 규모 또한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균등화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균등화한 경우 분석 단위를 가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한다. 이는 가계의 가구원 각각에게 균등화된 소득이 발생하고 균등화된 현물이 이전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해 공표하는 지니계수를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한다. 기술적으로는 각 가계의 가중치를 원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수치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를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살펴보면 비균등화 가구 단위 기준 분석결과와 비교해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앞에서는 전체 현물이전 규모가 소득과 함께 증가하였는데,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물이전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3분위의 이전 규모가 428.9만원으로 가장 높고 9분위의 이전 규모가 381.4만원으로 가장 낮다.

현물이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보육 지원의 경우 비균등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진다. 9~10분위의 교육과 보육 혜택이 3~4분위보다 낮다.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은 1~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3분위 이상 계층에서는 소득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의료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지원 규모는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혜택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규모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율이 1분위의 54.06%에서 10분위의 4.02%로 감소한다. 현물이전 유형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현물이전 유형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율이 대체로 높아진다. 특히, 교육혜택의 경우 비균등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그 혜택 규모가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하면 소득에 따라 그 혜택 규모가 단조 감소하는 차이점이 관찰된다.

〈표 VI-4〉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규모(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만원)

소득 계층	경상 소득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 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전체	3,665.2	406.1	245.1	243.4	1.7	150.7	142.1	8.6	10.4
1분위	747.1	403.9	156.3	155.1	1.2	220.6	159.0	61.5	27.1
2분위	1,375.3	427.6	234.5	232.5	2.0	175.6	156.4	19.2	17.4
3분위	1,893.8	428.9	257.1	255.8	1.3	157.4	153.4	4.0	14.5
4분위	2,348.2	405.9	272.1	270.0	2.1	121.8	120.8	1.0	12.0
5분위	2,795.2	396.3	232.4	229.9	2.5	153.8	153.6	0.2	10.1
6분위	3,274.1	418.0	257.0	254.9	2.1	152.7	152.5	0.2	8.4
7분위	3,873.5	397.9	262.6	260.6	2.0	129.3	129.3	0.0	5.9
8분위	4,629.0	402.3	282.6	281.3	1.3	116.6	116.6	0.0	3.1
9분위	5,803.9	381.4	250.2	248.9	1.3	128.4	128.4	0.0	2.8
10분위	9,917.2	399.1	245.9	244.9	1.0	150.9	150.9	0.0	2.3

자료: 저자 작성

〈표 VI-5〉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비중(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

소득 계층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 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전체	11.08	6.69	6.64	0.05	4.11	3.88	0.24	0.28
1분위	54.06	20.91	20.76	0.16	29.52	21.29	8.23	3.62
2분위	31.09	17.05	16.91	0.14	12.77	11.37	1.40	1.27
3분위	22.65	13.58	13.51	0.07	8.31	8.10	0.21	0.76
4분위	17.29	11.59	11.50	0.09	5.19	5.14	0.04	0.51
5분위	14.18	8.31	8.22	0.09	5.50	5.49	0.01	0.36
6분위	12.77	7.85	7.79	0.06	4.66	4.66	0.01	0.26
7분위	10.27	6.78	6.73	0.05	3.34	3.34	0.00	0.15
8분위	8.69	6.10	6.08	0.03	2.52	2.52	0.00	0.07
9분위	6.57	4.31	4.29	0.02	2.21	2.21	0.00	0.05
10분위	4.02	2.48	2.47	0.01	1.52	1.52	0.00	0.02

자료: 저자 작성

3. 현물이전 반영 시 소득 분배지표 변화

앞에서 측정된 현물이전을 소득에 반영할 경우의 소득 분배지표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정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은 Aaberge et al.(2010), 유경준 외(2018) 등과 같이 처분가능소득에 앞에서 추정된 현물이전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소득이다. 현물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정처분가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의 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현물이전의 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때 소비지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현주 외(2012; 2018)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대신 가계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고정비용으로 보아 처분가능소득에서 이 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정부의 현물이전 증가는 가계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지출을 감소시켜 조정처분가능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물이전 규모에 대한 추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다른 방법은 소득이 아닌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상에 나타난 총소비지출에 현물이전을 더한 소비지출을 실제 최종소비지출로 정의하여 두 소비지출 간의 분배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다만,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비지출을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현물이전의 재분배 효과 분석 시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을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분배지표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사용한다. 소득 분배 정도는 다양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지니계수이다. 하지만 지니계수는 개인단위에서 정밀하게 조사된 소득이나 추정된 현물이전 규모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연구의 현물이전은 개인 단위에서 엄밀하게 추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분배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개인 단위에서의 측정 오차는 그 오차에 체계적인 방향성이 없다면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에 대한 평균치에는 영향을 덜 미친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10개

혹은 5개의 집단에 대한 평균이나 총량을 기준으로 분배지표가 측정되는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는 개인 단위에서의 현물이전 규모 측정오차 문제에 지니계수보다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물이전은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한 분배지표를 살펴보자. 현물이전 전체를 반영할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는 각각 20.79%, 34.42%, 26.17% 개선된다. 현물이전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다라도 모든 유형의 현물이전이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지원이 분배지표를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은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각각 12.48%, 23.48%, 17.74% 개선시킨다. 한편, 현물이전 규모가 가장 큰 교육지원의 경우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각각 4.47%, 2.93%, 3.23%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교육혜택의 절대 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 교육혜택의 비율은 소득수준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또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각각 1.95%, 5.74%, 3.95% 개선시키지만, 개선 정도는 교육이나 건강보험을 통한 현물이전과 비교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거지원을 통한 현물이전의 절대 규모가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규모보다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VI-6〉 현물이전으로 인한 분배지표 변화(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배, %)

분배 지표	경상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공공임대 주택
수 준	10분위 분배율	0.35	0.38	0.45	0.39	0.39	0.38	0.43	0.42	0.39	0.38
	10분위 배수	25.00	22.32	14.64	21.67	21.66	22.32	15.33	17.08	19.38	21.04
	5분위 배수	12.80	11.69	8.63	11.31	11.31	11.69	9.01	9.62	10.79	11.23

〈표 VI-6〉의 계속

(단위: 배, %)

분배 지표	경상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 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개선폭	10분위 분배율	-	0.03	0.08	0.02	0.02	0.00	0.06	0.05	0.01	0.01
	10분위 배수	-	2.68	7.68	0.65	0.65	-0.00	6.98	5.24	2.94	1.28
	5분위 배수	-	1.11	3.06	0.38	0.38	0.00	2.68	2.07	0.90	0.46
개선율	10분위 분배율	-	8.33	20.79	4.51	4.47	0.05	15.27	12.48	2.86	1.95
	10분위 배수	-	10.72	34.42	2.92	2.93	-0.02	31.29	23.48	13.18	5.74
	5분위 배수	-	8.65	26.17	3.25	3.23	0.03	22.91	17.74	7.70	3.95

- 주: 1.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2.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3.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4.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해당 현물이전을 합한 소득
 5.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이 양수이면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
 6.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경상소득 대비
 7.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자료: 저자 작성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한 소득 분배지표 또한 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해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가 각각 23.23%, 36.46%, 27.49% 개선된다. 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한 분배지표 개선율은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한 분배지표 개선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된 소득 분배지표 개선 정도와 비교하여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소득 분배지표의 개선 정도를 현물이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보육 지원의 분배지표 개선 정도는 더 높아지고, 의료 및 주거지원의 분배지표 개선 정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수의 경우 교육 지원으로 인한 개선율이 각각 12.51%와

14.57%로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으로 인한 개선율인 8.52%와 13.11%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다. 교육은 미성년자 및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의료는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가구 구성은 소득 수준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는 저소득층에 노인 가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에 자녀를 부양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가구의 특성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일부 통제된다. 이로 인해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분배지표 개선 정도는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7〉 현물이전으로 인한 분배지표 변화(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배, %)

분배 지표	경상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전체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공공임대 주택	
				소계	교육	보육	소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수준	10분위 분배율	0.64	0.69	0.85	0.78	0.78	0.69	0.76	0.75	0.70	0.70
	10분위 배수	13.27	12.38	7.87	10.19	10.21	12.36	9.30	10.04	11.26	11.87
	5분위 배수	7.41	6.92	5.02	5.91	5.91	6.91	5.79	6.02	6.62	6.76
개선폭	10분위 분배율	-	0.05	0.16	0.09	0.09	0.00	0.07	0.06	0.01	0.01
	10분위 배수	-	0.89	4.51	2.19	2.17	0.02	3.09	2.35	1.13	0.52
	5분위 배수	-	0.48	1.90	1.02	1.01	0.01	1.13	0.91	0.30	0.17
개선율	10분위 분배율	-	7.44	23.23	12.61	12.51	0.10	10.08	8.52	1.60	1.28
	10분위 배수	-	6.71	36.46	17.67	17.56	0.18	24.92	18.96	9.09	4.19
	5분위 배수	-	6.55	27.49	14.68	14.57	0.16	16.33	13.11	4.33	2.39

- 주: 1.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2.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3.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4.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해당 현물이전을 합한 소득
 5.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이 양수이면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
 6.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경상소득 대비
 7.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자료: 저자 작성

VII. 현물이전 정책 효과 분석

1. 분석 개요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공적현물이전의 가계 소득계층별 귀착 규모를 추정하여 현물이전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향후 정부가 공적현물 이전 관련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이에 대한 재분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기여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와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의 정책에 도입해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해 본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다. 의료 관련 정책으로는 2018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효과를 검토하고,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10만호 수도권 공급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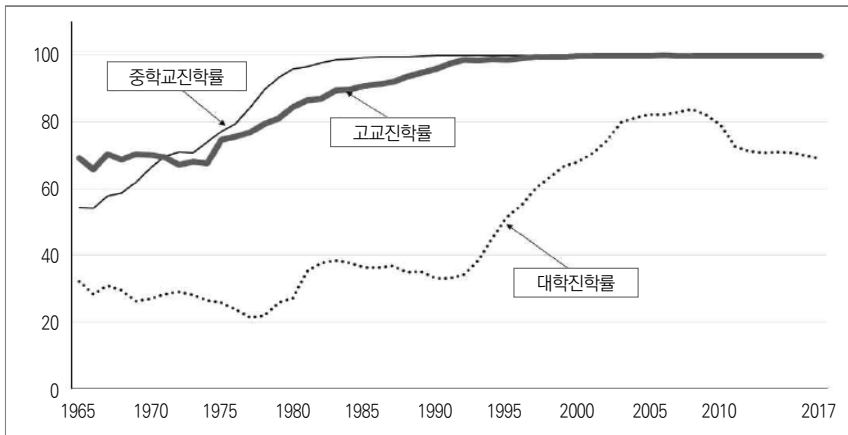
2. 고교 무상교육 실시

2019년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지원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그

것이 입법·정책화되지는 않았다. 고교 교육의 보편화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 및 분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고등학생 전 학년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약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국고 지원 분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림 VII-1] 학교단계별 진학률 추이(196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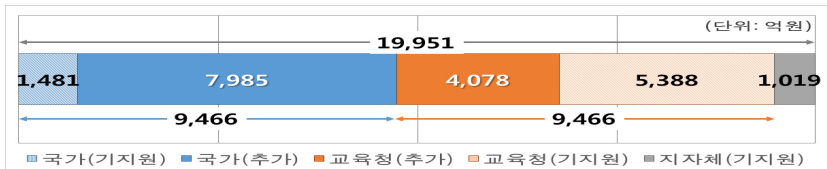


자료: 송기창 외(2018), p. 42, [그림 III-1]

<표 VII-1>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단위 : 억원)

연도	총액	국가	지자체	교육청
2021년	19,951	9,466	1,019	9,466
완성연도	100.0%	47.5%	5.0%	47.5%



주: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9. 4. 9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구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2019). 특히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기창 외, 2018). 현재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고교 학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고, 농어민자녀,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학비도 면제되거나 전액 지원되고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공기업 및 일부 사기업에서도 자녀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 고등학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표 VII-2>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의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교육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고교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교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VII-2〉 주요국의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교육 대상

국가명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대상			
	기간	시작 연령	종료 연령	초	중	고	대학
그리스	9년	6	15	●	●	●	●
네덜란드	12년	5	18	●	●	●	×
노르웨이	10년	6	16	●	●	●	●
뉴질랜드	10년	6	16	●	●	●	×
덴마크	10년	6	16	●	●	●	●
독일	11~12년	6	18~19	●	●	●	●
라트비아	9년	5	16	●	●	●	×
룩셈부르크	12년	4	15	●	●	●	×
리투아니아	10년	6	16	●	●	●	●
멕시코	14년	4	18	●	●	●	×
미국	10~14년	주에 따라 다름	주에 따라 다름	●	●	●	×
벨기에	12년	6	18	●	●	●	×
스웨덴	9년	7	16	●	●	●	●

〈표 VII-2〉의 계속

국가명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대상			
	기간	시작 연령	종료 연령	초	중	고	대학
스위스	11년	4	15~16	●	●	●	×
스페인	10년	6	16	●	●	●	×
슬로바키아	10년	6	16	●	●	●	●
슬로베니아	9년	6	15	●	●	●	●
아이슬란드	10년	6	16	●	●	●	●
아일랜드	10년	6	16	●	●	●	●
에스토니아	12년	6	18	●	●	●	●
영국	11~12년	4~5	16	●	●	●	×
오스트레일리아	12년	6	17	●	●	●	×
오스트리아	10년	5	15	●	●	●	×
이스라엘	12년	6	18	●	●	●	×
이탈리아	10년	6	16	●	●	●	×
일본	9년	6	15	●	●	●	×
체코	9년	6	15	●	●	●	●
칠레	12년	6	18	●	●	●	×
캐나다	11년	6~7	16~18	●	●	●	×
터키	12년	5	17	●	●	●	●
포르투갈	9년	6	18	●	●	●	×
폴란드	9년	5	16	●	●	●	●
프랑스	10년	6	16	×	●	●	●
핀란드	10년	6	15	●	●	●	●
헝가리	10년	6	16	●	●	●	×

주: 1. ● 무상교육, × 무상교육이 아님

2. 고등교육의 무상은 국·공립대학의 수업료에 한함. 국가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는 무상이지만 대학 입학금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 송기창 외(2018), pp. 11~15, 〈표 II-2〉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9).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로, 이는 고등학교·고등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의미한다. 대상 제외학교 기준도 초·중학교 의무교육 지원 제외기준과 동일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에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지원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립학교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비를 지원할 경우 학교 납부금 인상을 야기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귀착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도 지원대상 제외의 근거가 된다.

지금부터는 송기창 외(2018)에서 제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 및 대상 학생수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 교육·보육 부문의 현물이전 크기를 추정해 보겠다. 송기창 외(2018)는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의 단위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입학금의 경우 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고 현재 인천, 대전, 강원, 등의 지역에서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⁴⁰⁾

〈표 VII-3〉에서 지원 항목별 소요 추계액을 합산하여 도출한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도별 총소요 재원은 2019년 7,730억원, 2020년 1조 4,005억원, 2021년 2조 73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비도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학교의 소요 재원은 연도순으로 70억원, 132억원, 192억원이며, 공립학교의 소요 재원은 4,539억원, 8,228억원, 1조 2,204억원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소요 재원은 연도순으로 3,120억원, 5,646억원, 8,338억원으로 예상된다. 설립형태에 따라 추정액 규모가 크게 다른 것은 학생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40) 현재 세종 등의 교육청에서도 입학금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

〈표 VII-3〉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학년별 단계적 도입)

(단위: 백만원)

연도	설립	2019년 도입 고3부터
2019	국립	7,049
	공립	453,880
	사립	312,026
	합계	772,955
2020	국립	13,159
	공립	822,753
	사립	564,594
	합계	1,400,506
2021	국립	19,212
	공립	1,220,382
	사립	833,781
	합계	2,073,374

자료: 송기창 외(2018), p. 129, 〈표 V-31〉

고교 무상교육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의 소요 자원 추정액은 〈표 VI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총소요 재원을 살펴보면 2019년 2조 1,886억원, 2020년 2조 957억원, 2021년 2조 734억원, 2022년 2조 12억원으로 예상된다. 총소요 재원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고교 학생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국립학교의 소요 자원은 연도순으로 203억원, 194억원, 192억원, 178억원 수준이고, 공립학교의 소요 자원은 1조 2,853억원, 1조 2,333억원, 1조 2,204억원, 1조 1,877억원 수준이다. 사립학교의 소요 자원은 연도순으로 8,829억원, 8,431억원, 8,338억원, 7,95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표 VII-4〉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전체 학년 도입)

(단위: 백만원)

연도	설립	학교유형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2019	국립	12,250	-	-	8,071	20,321
	공립	913,353	171,972	143,486	56,512	1,285,322
	사립	699,573	179,910	-	3,442	882,925
	합계	1,625,175	351,882	143,486	68,025	2,188,567
2020	국립	11,844	-	-	7,533	19,377
	공립	878,789	165,435	135,992	53,053	1,233,269
	사립	670,574	169,275	-	3,213	843,061
	합계	1,561,207	334,710	135,992	63,799	2,095,707
2021	국립	11,745	-	-	7,467	19,212
	공립	870,423	162,419	135,044	52,496	1,220,382
	사립	664,330	166,269	-	3,181	833,781
	합계	1,546,497	328,689	135,044	63,144	2,073,374
2022	국립	11,354	-	-	6,469	17,823
	공립	854,363	157,250	128,439	47,630	1,187,683
	사립	639,492	153,362	-	2,814	795,667
	합계	1,505,209	310,612	128,439	56,913	2,001,173

자료: 송기창 외(2018), p. 131, 〈표 V-33〉

〈표 VII-5〉는 2019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도별 정책대상 학생수는 2019년 479,094명, 2020년 869,477명, 2021년 1,287,896명 수준이다. 지원학년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대상 학생수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도별 대상 학생수는 2019년 1,358,068명, 2020년 1,301,947명, 2021년 1,287,896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원대상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5〉 연도별·유형별 학생수 추계(2019년 실시)

(단위: 명)

도입 방식	연도	설립	고등학교 유형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고3부터 실시	2019	국립	2,578	-	-	1,512	4,090
		공립	203,788	41,809	26,584	11,706	283,887
		사립	150,816	39,514	-	788	191,117
		합계	357,182	81,322	26,584	14,005	479,094
	2020	국립	4,764	-	-	2,874	7,638
		공립	368,481	77,774	47,404	22,205	515,863
		사립	271,978	72,532	-	1,465	345,975
		합계	645,223	150,306	47,404	26,544	869,477
	2021	국립	7,091	-	-	4,081	11,172
		공립	549,128	114,698	70,046	31,783	765,655
		사립	404,050	104,923	-	2,096	511,069
		합계	960,269	219,621	70,046	37,960	1,287,896
전체 실시	2019	국립	7,383	-	-	4,411	11,794
		공립	575,809	121,037	74,323	34,145	805,313
		사립	425,341	113,353	-	2,268	540,962
		합계	1,008,532	234,390	74,323	40,824	1,358,068
	2020	국립	7,151	-	-	4,118	11,269
		공립	554,414	116,837	70,542	32,118	773,911
		사립	407,835	106,816	-	2,117	516,767
		합계	969,399	223,653	70,542	38,353	1,301,947
	2021	국립	7,091	-	-	4,081	11,172
		공립	549,128	114,698	70,046	31,783	765,655
		사립	404,050	104,923	-	2,096	511,069
		합계	960,269	219,621	70,046	37,960	1,287,896

자료: 송기창 외(2018), p. 111, 〈표 V-16〉

〈표 VII-6〉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1인당 교육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혜택은 앞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을 지원대상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무상교육 혜택은 연도 및 단계적 확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

상교육을 실시할 경우의 1인당 혜택은 2019년 161.3만원, 2020년 161.1만원, 2021년 161.0만원 수준이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의 1인당 혜택은 연도순으로 161.2만원, 161.0만원, 161.0만원 수준이다.

〈표 VII-6〉 연도별·유형별 1인당 혜택

(단위: 만원)

도입 방식	연도	설립	고등학교 유형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고3부터 실시	2019	국립	-	-	-	-	172.3
		공립	-	-	-	-	159.9
		사립	-	-	-	-	163.3
		합계	-	-	-	-	161.3
	2020	국립	-	-	-	-	172.3
		공립	-	-	-	-	159.5
		사립	-	-	-	-	163.2
		합계	-	-	-	-	161.1
	2021	국립	-	-	-	-	172.0
		공립	-	-	-	-	159.4
		사립	-	-	-	-	163.1
		합계	-	-	-	-	161.0
전체 실시	2019	국립	165.9	-	-	183.0	172.3
		공립	158.6	142.1	193.1	165.5	159.6
		사립	164.5	158.7	-	151.8	163.2
		합계	161.1	150.1	193.1	166.6	161.2
	2020	국립	165.6	-	-	182.9	171.9
		공립	158.5	141.6	192.8	165.2	159.4
		사립	164.4	158.5	-	151.8	163.1
		합계	161.0	149.7	192.8	166.3	161.0
	2021	국립	165.6	-	-	183.0	172.0
		공립	158.5	141.6	192.8	165.2	159.4
		사립	164.4	158.5	-	151.8	163.1
		합계	161.0	149.7	192.8	166.3	161.0

자료: 〈표 VII-3〉~〈표 VII-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제Ⅲ장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제공된 교육혜택을 추정하기 위하여 1인당 교육비에서 1인당 학생납입금을 차감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납입금이 없으므로 교육비와 교육혜택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text{1인당 교육혜택} = \text{1인당 교육비*} - \text{1인당 학생납입금}$$

* 1인당 교육비 = [기타 교육지출비용** + 인건비] ÷ 학생수

** 기타 교육지출비용 = 'FY 2017 공립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출 합계

〈표 VII-7〉과 〈그림 VII-2〉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 1인당 교육혜택을 비교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혜택이 11~23%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기준으로 살펴보면,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교육혜택은 884만원 수준이고,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을 경우의 1인당 혜택은 1,044만원 수준이다.

〈표 VII-7〉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단위: 만원)

지역	고교 무상교육 X	고교 무상교육 O
서울	879	1,039
부산	910	1,069
대구	742	901
인천	872	1,032
광주	920	1,080
대전	796	956
울산	851	1,011
세종	1,214	1,373
경기	678	837
강원	1,229	1,389
충북	957	1,116
충남	979	1,139

〈표 VII-7〉의 계속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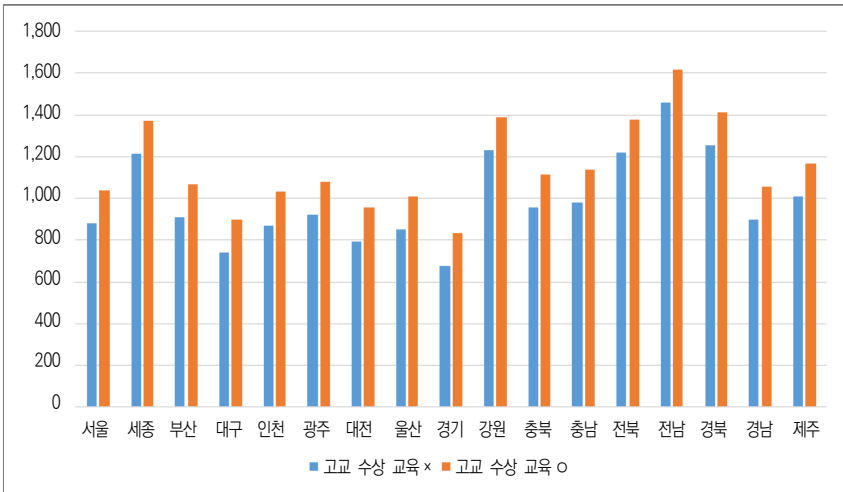
지역	고교 무상교육 X	고교 무상교육 O
전북	1,219	1,379
전남	1,459	1,618
경북	1,255	1,415
경남	899	1,058
제주	1,009	1,169
전국	884	1,044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2018),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12.

〔그림 VII-2〕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2018),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12.

마지막으로 1인당 교육혜택에 국공립 학생 비율을 곱하여 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을 산출하였다. 〈표 VII-8〉과 그림 VII-3에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 여부에 따른 1인당 할당금액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가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할당금액이 11~23%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기준으로는 1인당 할당금액이 50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18% 정도 증가한다.

$$\text{1인당 교육혜택 할당금액} = \text{1인당 교육혜택} \times \text{국공립 학생 비율}$$

〈표 VII-8〉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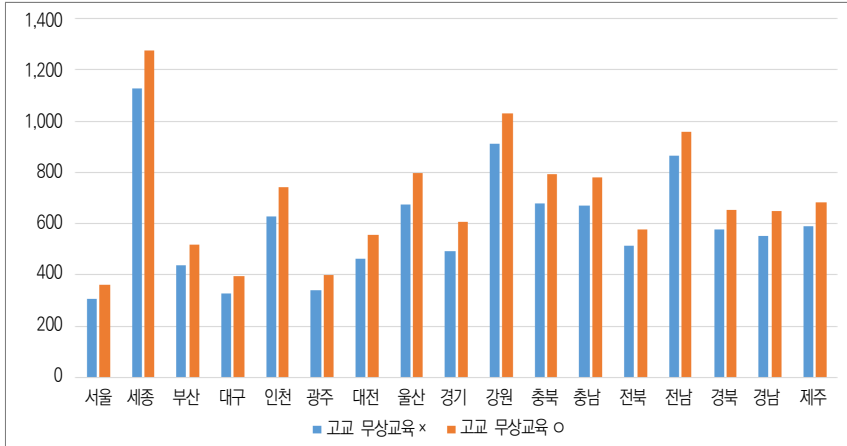
지역	고교 무상교육 X	고교 무상교육 O
서울	307	363
부산	439	516
대구	326	396
인천	628	743
광주	341	400
대전	463	556
울산	673	799
세종	1,129	1,277
경기	491	606
강원	911	1,030
충북	679	793
충남	671	780
전북	512	579
전남	865	960
경북	578	652
경남	551	649
제주	588	682
전국	509	601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2018),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 3.12

[그림 VII-3]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시 고등학생 1인당 지역별 교육혜택 할당금액

(단위: 만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2017, 2018), 『교육통계연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액 자료, 검색일자: 2019.3.12.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이 절에서는 앞서 소개된 회귀 대체 방법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대체된 세부적인 의료비 지출 정보를 바탕으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본인부담 상한제 변화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자료의 연결 및 활용이 실제 보건 의료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환자가 지출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하는 제도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항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를 통해 본인부담금 총액에 합산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6개월 동안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을 상환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본인부담 상한 기준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표 VII-9〉 참조). 2009년 최초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 분위별로 상한 금액에 차등을 두게 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후 본인부담 상한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세하게 변화하다가, 2018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대상의 본인부담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표 VII-9〉 연도별,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단위: 만원)

연도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 분위)	3구간 (4~5 분위)	4구간 (6~7 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						
2009년 1월		연간 200(하위 50%)			300(중위 30%)		400(상위 20%)	
2014년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5년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년		121	152	203	254	305	407	509
2017년		122	153	205	256	308	411	514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4	155	208	260	313	418	523
	그 밖의 경우	80	100	150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	157	211	280	350	430	580
	그 밖의 경우	81	101	152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도자료, 2019. 2. 1

한편 본인부담 상한을 규정하는 소득 분위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가구 소득이 아닌 부과된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표 VII-10>에 소개된 기준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척도가 다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하여 각 집단별로 소득 분위기를 계산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문재인케어의 본격적인 도입 첫해인 2018년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하위 50% 상한액 인하 효과를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속한 가구가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알 수 있다면, 2018년 변화한 제도의 상한을 2017년 자료에 반영하여 2017년 대비 의료 수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구 의료비 지출은 급여서비스를 위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가구가 지출한 법정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식별해야 하므로, 앞선 분석 방법과 동일한 회귀 대체 방식을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의 법정본인부담금 정보의 결측값을 대체한다. 이때 회귀분석에 활용되는 설명변수는 앞서의 6종 변수들과 동일하다.

〈표 VII-10〉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보험료

(단위: 원)

구분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소득 1분위	36,720 이하	10,050 이하
소득 2~3분위	36,720~52,020	10,050~27,110
소득 4~5분위	52,020~74,040	27,110~62,860
소득 6~7분위	74,040~111,380	62,860~117,270
소득 8분위	111,380~143,740	117,270~155,170
소득 9분위	143,740~196,740	155,170~208,330
소득 10분위	196,740 초과	208,330 초과

주: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는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248호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1. 15

또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VII-10>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분위를 결정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표 VII-9>에서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분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출을 파악하고 있지만, 가구의 직장·지역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정보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가구 중 한 명이라도 상용직에 종사하면 직장가입으로 ② 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만 존재하면 지역가입자로 간주하기로 한다. 또한 ③ 가구에 상용직, 자영업자 둘 다 존재하고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직장 및 지역 가입의 구분이 어려워 <표 VII-10>의 기준보험료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보험료 평균값을 상한으로 활용했으며 ④ 가구에 상용직, 자영업자 모두 존재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 역시 평균값을 적용했다. 이와 같은 가정이 주어진 자료하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소 현실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급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회귀 대체하기 위해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활용한 회귀모형 추정의 결과는 <표 VII-11>과 같다. <표 IV-12>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의 총의료지출이 증가할수록,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원이면 가구의 법정본인부담금은 증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지며, 이는 의료급여 제도로 인한 수급권자의 낮은 본인부담 정도를 의미한다. 특이한 것은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정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는 예상 밖의 음(-)의 상관관계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가구소득 1만원당 약 15원의 본인부담 감소이므로 해석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 VII-11〉 법정본인부담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
(2011~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

(단위: 만원, 명)

법정본인부담금	계수
가구 총의료지출	3,694.7 *** (228.9)
가구 소득(총소득 기준)	-14.7 *** (4.8)
가구원 수	2,762.7 (12,165.6)
65세 이상 가구원 수	193,759.5 *** (23,615.9)
0~4세 가구원 수	-38,549.8 (26,077.1)
5~9세 가구원 수	23,011.3 (28,308.1)
의료급여 수급 여부	-460,254.3 *** (48,576.8)
상수	157,531.2 *** (55,908.1)
관측치	5,078
R^2	0.5792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가구별 법정본인부담금을 회귀 대체하여 집계한 결과가 〈표 VII-12〉와 같다.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소득 정보를 통해 가구별 준총소득을 산출하고, 소득 10분위를 구분하여 소득 분위별로 평균 법정본인부담금을 집계한다. 이후 〈표 VII-9〉와 〈표 VII-10〉에 의해 산출된 각 가구별 법정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2017년도와 문재인케어 적용 이후인 2018년으로 구분하여 2017년 제도 기준 건강보험 상한제로 인한 평균 수혜와 2018년 제도 기준 건강보험 상한제로 인한 평균 수혜⁴¹⁾를 각각 계산한다.

41)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장기 입원의 기준(120일 초과)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이 달라지는 제도 설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 효과를 식별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모든 가구가 요양병원 120일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낮은

우선 2017년도 제도 효과부터 검토하면, 소득 2~4분위의 수혜규모가 타 분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이 상위 분위에 비해 낮은 제도의 설계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득 1분위의 제도로 인한 수혜 효과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소득 1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층 본인부담 상한 기준은 2017년 기준 308만~514만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저소득 분위의 가구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표 VII-12〉 본인부담 상한제도 변화로 인한 소득 분위별 의료 수혜 규모 변화
(단위: 원)

소득분위 (준총소득 기준)	평균 법정본인부담금	2017년 제도 평균 수혜	2018년 제도 변화 이후 평균 수혜 추정	제도 변화로 인한 수혜 규모 변화
1분위	580,423	83,631	141,311	57,679
2분위	814,521	141,385	232,055	90,670
3분위	807,923	166,841	254,788	87,947
4분위	771,925	129,417	192,483	63,067
5분위	738,290	99,983	135,424	35,442
6분위	710,355	68,267	90,572	22,305
7분위	779,037	109,074	121,765	12,691
8분위	718,700	60,097	65,463	5,366
9분위	743,936	30,934	36,694	5,761
10분위	892,856	54,598	56,658	2,060

주: 1. 모든 정보는 회계 대체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체된 추정치임을 유의
2. 2018년도 제도 변화 이후 평균 수혜는 2017년도의 자료에 2018년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 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한 효과가 아님을 유의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개정된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변화에 따라 소득 하위 50%의 상한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로 인한 제도 효과가 두드러진다. 소득 2~3분위에 연간 약 8.8만~9.1만원의 추가 수혜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

단계의 본인부담 상한(소득 1분위: 80만원, 소득 2~3분위: 100만원, 소득 4~5분위: 150만원)을 적용받는다 가정한다.

으며, 소득 1, 4, 5분위에도 그보다 낮은 3.5만~6.3만원의 의료 수혜가 추가 귀속된다. 그러나 소득 상위 50%의 경우 상한 기준의 변화가 물가상승분 반영에 불과해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 이처럼 소득 하위 50%를 정책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정량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4.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가. 국민임대주택 제도 개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소형(전용면적 50㎡미만)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⁴²⁾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2019년 적용 소득 요건은 <표 VII-13>에 제시하였다. 또한 총자산가액이 2억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499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표 VII-13> 국민임대주택 소득 요건 적용 기준 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70%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
3인 이하 가구	3,781,270	2,700,907
4인 가구	4,315,641	3,082,601
5인 가구	4,689,906	3,349,933
6인 가구	5,144,223	3,674,445
7인 가구	5,598,541	3,998,958
8인 가구	6,052,859	4,323,471

주: 2019년 적용 기준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9. 7. 3

42) 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 검색일자: 2019. 10. 18)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한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표 VII-14>와 같이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한 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표 VII-1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구분	대상자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검색일자: 2019. 10. 18

배점은 <표 VII-15>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태아 포함 부양가족 수와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추가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아진다. 또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다.

<표 VII-1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 제도

구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 수(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⑤ 미성년자녀 수(만 20세 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
⑥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표 VII-15〉의 계속

구분	3점	2점	1점
㉘ 사회취약계층 - 별표3 제1호 가목~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 3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3점			
㉚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자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			

주: 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2항 단서)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택 업무 편람』, p. 221

나. 분석 방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에서 해당 정책을 통해 새롭게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계를 선정하고, 가구의 특성변수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각 가계의 배점을 계산한 뒤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얻는 임대료 편익은 해당 지역의 임대료 편익의 평균을 적용한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정보가 시·군 단위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가 존재하여 이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지역 정보로 수도권 여부에 대해서만 식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정책 효과 분석과 같이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의 임대료 편익은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에 대해 추정된 임

대로 편익의 평균으로 가정한다. 2017년의 경우 이렇게 추정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47,600원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가계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모든 가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 가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확률을 적용한다. 즉, 수도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 해당 가계가 얻는 최종적인 임대료 편익은 앞에서 추정된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임대료 편익인 47,600원에 해당 가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률을 곱한 값이 된다. 『주거실태조사』는 ‘정책평가 및 정책육구’에 대한 조사 부분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주할 의향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식별 가능한 변수들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도출한다. 『주거실태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표 VII-16>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중 모형 (1)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표 VII-16>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률 추정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ln(전세보증금)	-0.116*** (0.020)	-0.123*** (0.020)	-0.123*** (0.020)	-0.131*** (0.020)	-0.179*** (0.019)	-0.187*** (0.019)	-0.191*** (0.019)	-0.202*** (0.019)
ln(월세보증금)	0.032** (0.013)	0.030** (0.012)	0.030** (0.013)	0.028** (0.012)	-0.023** (0.011)	-0.027** (0.011)	-0.027** (0.011)	-0.033*** (0.011)
ln(전용면적 (m ²))	-0.079*** (0.029)	-0.091*** (0.029)	-0.082*** (0.029)	-0.097*** (0.029)	-0.105*** (0.029)	-0.120*** (0.029)	-0.111*** (0.029)	-0.129*** (0.029)
ln(전년도 경상소득)	-0.083*** (0.018)	-0.069*** (0.017)	-0.087*** (0.018)	-0.078*** (0.016)	-0.118*** (0.018)	-0.110*** (0.016)	-0.126*** (0.018)	-0.126*** (0.016)
ln(총자산)	-0.093*** (0.008)	-0.095*** (0.008)	-0.095*** (0.008)	-0.099*** (0.008)	-	-	-	-
장애가구원 존재 유무	0.127*** (0.040)	0.110*** (0.040)	0.130*** (0.040)	0.115*** (0.040)	0.138*** (0.040)	0.123*** (0.040)	0.142*** (0.040)	0.130*** (0.040)
수도권 여부	0.478*** (0.022)	0.477*** (0.022)	0.478*** (0.022)	0.478*** (0.021)	0.488*** (0.021)	0.489*** (0.021)	0.489*** (0.021)	0.489*** (0.021)
가구주 특성								
연령	0.038*** (0.004)	0.042*** (0.004)	0.041*** (0.004)	0.046*** (0.004)	0.033*** (0.004)	0.037*** (0.004)	0.036*** (0.004)	0.041*** (0.004)

〈표 VII-16〉의 계속

구분	(1)	(2)	(3)	(4)	(5)	(6)	(7)	(8)
(연령)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 (남=1, 여=2)	0.132*** (0.024)	0.131*** (0.024)	0.131*** (0.024)	0.132*** (0.024)	0.140*** (0.024)	0.140*** (0.024)	0.142*** (0.024)	0.145*** (0.024)

가구원 수(1명 = 1)

2명	0.244*** (0.029)	0.246*** (0.029)	0.251*** (0.029)	0.256*** (0.028)	0.251*** (0.029)	0.254*** (0.029)	0.260*** (0.029)	0.268*** (0.028)
3명	0.295*** (0.034)	0.295*** (0.034)	0.299*** (0.034)	0.300*** (0.034)	0.315*** (0.034)	0.316*** (0.034)	0.322*** (0.034)	0.325*** (0.034)
4명	0.231*** (0.037)	0.224*** (0.037)	0.231*** (0.037)	0.225*** (0.037)	0.257*** (0.037)	0.250*** (0.037)	0.261*** (0.037)	0.255*** (0.037)
5명	0.231*** (0.056)	0.219*** (0.056)	0.233*** (0.056)	0.222*** (0.056)	0.260*** (0.056)	0.249*** (0.056)	0.265*** (0.056)	0.256*** (0.056)
6명 이상	0.483*** (0.112)	0.469*** (0.112)	0.496*** (0.112)	0.487*** (0.112)	0.507*** (0.112)	0.494*** (0.112)	0.524*** (0.112)	0.518*** (0.112)

가구주 교육 수준(초등학교 이하 = 1)

중학교	0.089** (0.041)	0.099** (0.041)	-	-	0.079* (0.041)	0.091** (0.040)	-	-
고등학교	0.007 (0.039)	0.003 (0.039)	-	-	-0.014 (0.039)	-0.019 (0.039)	-	-
대학교	-0.069 (0.045)	-0.086* (0.045)	-	-	-0.113** (0.045)	-0.134*** (0.044)	-	-
대학원 이상	0.007 (0.070)	-0.006 (0.070)	-	-	-0.041 (0.070)	-0.057 (0.070)	-	-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 1)

임시·일용 근로자	0.127*** (0.031)	-	0.152*** (0.031)	-	0.146*** (0.031)	-	0.178*** (0.031)	-
고용원 있는 사업자	-0.265*** (0.055)	-	-0.268*** (0.055)	-	-0.274*** (0.055)	-	-0.278*** (0.054)	-
고용원 없는 자영자	-0.065** (0.033)	-	-0.055* (0.033)	-	-0.077** (0.033)	-	-0.065** (0.033)	-
기타	-0.086** (0.034)	-	-0.067** (0.033)	-	-0.067** (0.033)	-	-0.043 (0.033)	-

점유유형(전세 = 1)

보증금 있는 월세	-1.036*** (0.168)	-1.080*** (0.168)	-1.081*** (0.167)	-1.132*** (0.167)	-1.092*** (0.168)	-1.129*** (0.167)	-1.157*** (0.167)	-1.204*** (0.166)
--------------	----------------------	----------------------	----------------------	----------------------	----------------------	----------------------	----------------------	----------------------

〈표 VII-16〉의 계속

구분	(1)	(2)	(3)	(4)	(5)	(6)	(7)	(8)
보증금 없는 월세	-1.047*** (0.172)	-1.115*** (0.171)	-1.106*** (0.170)	-1.188*** (0.169)	-1.228*** (0.170)	-1.296*** (0.170)	-1.317*** (0.168)	-1.405*** (0.168)
주택유형(단독주택 = 1)								
아파트	-0.164*** (0.024)	-0.171*** (0.024)	-0.170*** (0.024)	-0.179*** (0.024)	-0.163*** (0.024)	-0.170*** (0.024)	-0.170*** (0.024)	-0.180*** (0.024)
연립주택	0.057* (0.034)	0.063* (0.034)	0.057* (0.034)	0.062* (0.034)	0.059* (0.034)	0.065* (0.034)	0.059* (0.034)	0.065* (0.034)
기타	-0.040 (0.048)	-0.061 (0.047)	-0.049 (0.047)	-0.073 (0.047)	-0.047 (0.047)	-0.070 (0.047)	-0.060 (0.047)	-0.088* (0.047)
상수	1.222*** (0.199)	1.193*** (0.192)	1.226*** (0.197)	1.235*** (0.189)	1.370*** (0.199)	1.385*** (0.190)	1.383*** (0.196)	1.450*** (0.188)
관측치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19,085
pseudo-R2	0.0742	0.0714	0.0735	0.0704	0.0694	0.0663	0.0684	0.0648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중 10만호에 포함될 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추정된 특정 가계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확률과 그 가계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의 순위를 정한 뒤, 첫 번째 관측치부터 해당 가계의 가중치에 앞에서 계산한 확률을 곱한 수치를 누적해서 더해 나간다. 이 누적된 합계가 10만보다 작은 가계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수혜 집단이 된다.

5. 종합효과

가.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

본 장에서 논의하는 세 가지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에 귀착되는

전체 현물이전 규모는 약 15.5만원으로 분석된다. 이 중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혜택이 9.3만원으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혜택은 약 3.3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약 2.9만원으로 분석된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살펴본 소득분위별 현물이전 혜택 규모를 비교하면, 소득 1분위의 평균 혜택이 약 9.1만원으로 다른 소득분위와 비교해 가장 낮다. 반면 소득 2~4분위와 10분위는 모두 18만원 이상으로 다른 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효과 분석 대상 정책별로 살펴보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혜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혜택이 점차 커진다. 이는 제Ⅶ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주는 생애주기상 고소득층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혜택은 2분위 계층에서 7.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분위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효과는 점점 감소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소득 1분위의 혜택은 5.2만원으로 소득 2~3분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등 다른 의료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 동 제도도입이 아니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혜택 또한 소득 2분위 계층에서 약 8.7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득 6~10분위 계층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소득 1분위 계층의 혜택 규모는 3.0만원으로 소득 2~5분위 계층보다 작는데,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으로 인해 입주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점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현물이전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분위별 혜택 규모를 경상소득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상소득 대비 혜택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I-17〉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경상 소득	정책 도입 전 현물이전	정책 도입 후 현물이전	정책 효과			
				합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전체	5,704.8	617.5	633.0	15.5	9.3	3.3	2.9
1분위	690.3	370.8	380.0	9.1	0.9	5.2	3.0
2분위	1,423.2	460.3	479.3	19.0	2.5	7.7	8.7
3분위	2,220.9	503.9	522.3	18.3	5.5	6.9	5.9
4분위	3,091.2	553.5	572.2	18.7	6.2	4.9	7.6
5분위	3,994.4	601.1	615.7	14.6	7.8	3.1	3.7
6분위	4,935.9	661.9	673.0	11.1	9.2	1.9	0.0
7분위	6,074.0	693.7	707.8	14.1	12.6	1.5	0.0
8분위	7,581.0	758.4	773.0	14.6	14.1	0.5	0.0
9분위	9,793.0	750.9	767.3	16.4	15.7	0.7	0.0
10분위	17,256.8	821.3	840.3	19.0	18.7	0.2	0.0

자료: 저자 작성

〈표 VII-18〉 소득 대비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비중
(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

소득 분위	경상소득 대비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합계	고교무상 교육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합계	고교무상 교육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전체	0.272	0.164	0.057	0.051	0.245	0.148	0.052	0.046
1분위	1.322	0.137	0.756	0.428	0.860	0.089	0.492	0.279
2분위	1.333	0.177	0.542	0.613	1.007	0.134	0.410	0.464
3분위	0.826	0.248	0.313	0.265	0.673	0.202	0.255	0.216
4분위	0.606	0.202	0.159	0.245	0.514	0.171	0.135	0.208
5분위	0.367	0.195	0.078	0.093	0.319	0.170	0.068	0.081
6분위	0.225	0.187	0.038	0.000	0.198	0.165	0.034	0.000
7분위	0.232	0.208	0.024	0.000	0.208	0.186	0.022	0.000
8분위	0.193	0.186	0.006	0.000	0.175	0.169	0.006	0.000
9분위	0.167	0.160	0.007	0.000	0.155	0.149	0.006	0.000
10분위	0.110	0.109	0.001	0.000	0.105	0.104	0.001	0.000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는 소득 분위별 현물이전 귀착을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살펴본다. 세 가지 정책으로 인한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소득 1분위의 혜택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하면 소득 1분위의 혜택 규모가 18.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효과가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분석하면 소득 1분위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구원 수를 통제 한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두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VII-19〉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규모(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만원)

소득 분위	경상 소득	정책 도입 전 현물이전	정책 도입 후 현물이전	정책 효과			
				합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전체	3,665.2	406.1	416.6	10.5	6.8	1.6	2.0
1분위	747.1	403.9	422.1	18.2	3.3	4.3	10.5
2분위	1,375.3	427.6	444.3	16.7	5.2	3.9	7.7
3분위	1,893.8	428.9	441.1	12.2	7.0	2.9	2.3
4분위	2,348.2	405.9	413.2	7.3	5.6	1.7	0.0
5분위	2,795.2	396.3	404.3	8.0	6.8	1.2	0.0
6분위	3,274.1	418.0	425.9	7.9	6.8	1.1	0.0
7분위	3,873.5	397.9	406.4	8.5	7.9	0.6	0.0
8분위	4,629.0	402.3	410.7	8.4	7.9	0.5	0.0
9분위	5,803.9	381.4	390.3	8.8	8.8	0.1	0.0
10분위	9,917.2	399.1	407.6	8.5	8.2	0.3	0.0

자료: 저자 작성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현물이전 정책 효과를 경상소득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혜택 비

율은 약 2.43%이며, 이는 소득수준과 함께 감소하여 소득 10분위의 이 비율은 0.09%로 분석된다. 본 장에서 분석한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현물이전 정책 효과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더라도 그 비율이 소득 1분위의 1.58%에서 소득 10분위의 0.08%로 소득수준과 함께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I-20〉 소득 대비 정책 도입으로 인한 공적현물이전 확대 비중
(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

소득 분위	경상소득 대비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합계	고교 무상 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합계	고교 무상 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전체	0.285	0.185	0.045	0.056	0.257	0.166	0.040	0.050
1분위	2.431	0.447	0.576	1.408	1.578	0.290	0.374	0.914
2분위	1.214	0.375	0.283	0.557	0.926	0.286	0.216	0.425
3분위	0.645	0.372	0.152	0.121	0.526	0.303	0.124	0.099
4분위	0.312	0.240	0.071	0.0	0.266	0.205	0.061	0.0
5분위	0.286	0.245	0.042	0.0	0.251	0.214	0.036	0.0
6분위	0.242	0.209	0.033	0.0	0.214	0.185	0.029	0.0
7분위	0.220	0.205	0.016	0.0	0.200	0.185	0.014	0.0
8분위	0.181	0.171	0.010	0.0	0.167	0.157	0.009	0.0
9분위	0.152	0.151	0.001	0.0	0.143	0.142	0.001	0.0
10분위	0.086	0.083	0.003	0.0	0.082	0.079	0.003	0.0

자료: 저자 작성

나.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

본 장에서 고려한 세 가지 현물이전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 효과를 살펴본다. 정책 효과는 정책 도입 전과 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분배지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득 분배지표로는 제Ⅵ장과 마찬가지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고려한다.

세 가지 정책 도입은 대체로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균등과 가구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세 가지 정책을 모두 도입하면 정책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는 각각 0.63%, 0.80%, 0.89%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장에서 고려한 세 가지 정책 중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다른 두 정책보다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해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는 각각 0.30%, 0.53%, 0.4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0분위 분배율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보다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10분위 분배율은 각각 0.03%가량 개선되지만 10분위 배수와 5분위 배수는 각각 0.04%와 0.02%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3~4분위의 소득을 고려하지만 10분위 배수와 5분위 배수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소득 1~2분위와 9~10분위만 고려하는 차이점이 있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경상소득 대비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혜택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하면, 소득 3~4분위가 소득 1~2분위와 소득 9~10분위보다 높다. 즉, 소득 3~4분위의 높은 혜택으로 인하여 10분위 분배율은 개선된다. <표 VII-18>이 보여주듯이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혜택의 비율이 소득 1~2분위보다 소득 9~10분위가 높다. 이로 인하여 10분위 배수와 5분위 배수는 악화된다.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다라도, 본 장에서 고려한 세 가지 정책 도입으로 인해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된 소득 분배지표 개선 정도와 비교해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경우 소득 분배지표 개선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 가지 현물이전 정책의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비균등화 가구 단위 분석과 비교해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분배지표 개선율은 10분위 분배율의 경우 0.63%에서 0.64%로, 10분위 배수의 경우 0.80%에서 1.65%로, 5분위 배수의 경우 0.89%에서 1.19%로 증가한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의 소득 분배지표 측정과 비교해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소득 분배지표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다른 현물이전 정책과 비교해 가장 커진다는 점이다.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면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는데, 가구원 수를 통제한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하면 이러한 계층은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분석할 때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비균등화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일부 분배지표가 악화되었지만,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하면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또한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계는 대체로 가구원 수가 많아 가구원 수를 일부 통제한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는 비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보다 낮은 소득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경우 가구 소득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가구원 수 등 가구원 구성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재분배 효과의 크기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앞의 두 가지 정책 변화와 달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화로 인한 분배지표 개선율은 비균등화 가구 단위 분석과 비교해 균등화 개인 단위 분석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의 수혜 계층이 저소득층이면서 동시에 가구원 수가 적은 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 저소득층에는 1~2인 노인가계의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I-21〉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비균등화 가구 단위)

(단위: 배)

분배 지표	경상 소득	처분가능 소득	정책 도입 전 조정 처분가능 소득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				
				합계	고교 무상 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수준	10분위 분배율	0,346	0,375	0,453	0,456	0,453	0,454	0,455
	10분위 배수	24,998	22,317	14,636	14,519	14,641	14,558	14,591
	5분위 배수	12,798	11,692	8,632	8,555	8,634	8,591	8,594
개선폭	10분위 분배율	-	0,029	0,078	0,003	0,000	0,001	0,001
	10분위 배수	-	2,680	7,681	0,117	-0,005	0,078	0,044
	5분위 배수	-	1,107	3,060	0,077	-0,002	0,041	0,038
개선율	10분위 분배율	-	8,327	20,793	0,634	0,034	0,297	0,304
	10분위 배수	-	10,722	34,419	0,799	-0,035	0,534	0,304
	5분위 배수	-	8,646	26,169	0,892	-0,020	0,480	0,437

- 주: 1.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2.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3.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4.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기존 현물이전 합계 금액을 합한 소득
 5.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에 해당 현물이전을 합한 소득
 6.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이 양수이면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
 7.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경상소득 대비
 8.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9.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자료: 저자 작성

〈표 VII-22〉 정책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분배지표 변화(균등화 개인 단위)

(단위: 배)

분배 지표	경상 소득	처분가능 소득	정책 도입 전 조정 처분가능 소득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				
				합계	고교 무상 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공급	
수준	10분위 분배율	0.643	0.691	0.851	0.857	0.853	0.853	0.854
	10분위 배수	13.274	12.383	7.868	7.739	7.851	7.836	7.788
	5분위 배수	7.408	6.923	5.020	4.960	5.010	5.004	4.985
개선폭	10분위 분배율	-	0.048	0.160	0.005	0.001	0.002	0.002
	10분위 배수	-	0.891	4.515	0.130	0.018	0.033	0.080
	5분위 배수	-	0.485	1.903	0.060	0.010	0.016	0.035
개선율	10분위 분배율	-	7.438	23.233	0.640	0.172	0.178	0.291
	10분위 배수	-	6.711	36.459	1.646	0.225	0.416	1.022
	5분위 배수	-	6.546	27.491	1.186	0.195	0.309	0.691

- 주: 1.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2.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3.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4.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기존 현물이전 합계 금액을 합한 소득
 5.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에 해당 현물이전을 합한 소득
 6.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이 양수이면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
 7.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경상소득 대비
 8.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9. 정책 도입 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개선폭과 개선율은 정책 도입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자료: 저자 작성

VIII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가계에 귀착되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현물이전 규모 추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추정된 현물이전 규모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함으로써 현물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교육은 유·초·중·고 등 공교육 지원 규모를 추정하였고, 보육은 영아에 보육지원 규모를 분석하였다. 의료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과 의료급여를 통한 지원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주거 관련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도입되거나 논의된 현물이전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현물이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지원 관련 현물이전을 추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다른 자료를 보완하여 추정하였다.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추정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의료혜택과 주거혜택을 추정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다른 별도의 미시자료인 『한국의료패널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현물이전 규모는 총 121.6조원이다. 이 중 교육이 65.7조원으로 가장 크고,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지원이 47.9조원으로 그다음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두 가지 지원이 전체 현물이전의 93.4%를 차지한다. 처분가능소득과 조정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를 비교할 경우 현물이전은 대체로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 여기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을 합한 소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소득 분배 지표로는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를 고려하였다. 교육혜택 등으로 인하여 현물이전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고소득층의 혜택 규모가 더 클 수 있지만, 현물이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더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물이전이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물이전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의 개선 정도는 소득 및 현물이전 혜택 규모의 균등화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 지원의 경우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의 분석보다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균등화 개인 단위보다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 측정할 경우 소득 불평등도의 개선 정도가 더 크다. 이는 교육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미성년 혹은 청년 자녀를 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의료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은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가구원 수를 통제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교육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 정도는 커지고 의료의 불평등도 개선 정도는 작아진다. 따라서 비균등화 가구 단위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다른 현물이전과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의 일부 소득 분배지표에서는 교육 지원을 통한 현물이전이 건강보험을 통한 현물이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크게 인하하였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전체적인 현물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 특히, 균등화 개인 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정책들 중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추정된 절대적인 현물이전 규모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경우의 30.9%에 불과하지만 그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하였는데, 비수도권에 공급할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의 임대료 차이가 수도권에 비해 작아 현물이전 규모가 감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물이전 정책 효과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고교 진학률이 높아진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해 당 정책의 현물이전 규모와 재분배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⁴³⁾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는 개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변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쳐 임대료 편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특정 진료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물이전 규모 추정에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물이전 관련 정책 효과 분석 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물이전 추정을 위한 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이를 분석하기 위한 현재 보다 더 자세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수도권 여부만 제공된다. 하지만 교육혜택이나 주거혜택은 지역별로 그 편차가 클 수 있어 지역 정보를 반영하여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수도권 여부보다 더 자세한 지역 정보가 제공된다면 더 정교한 현물이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현물이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도입될 것이라 생각된

43)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고교 진학률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다양한 제도 설계에 대해 그 효과를 비교 및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물이전에 대한 정책 효과 검토는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특히, 현물이전 관련 제도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석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가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경우 각 질병별로 보장률 등이 상당히 다른데 이러한 제도변화는 『한국의료패널조사』 등의 미시자료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물이전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9. 4. 9.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2018. 3.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2018. 4.
-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7. 11.
- 국토교통부,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보도자료, 2018. 8. 6.
- _____,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7.
- _____, 『주택 업무 편람』, 2019. 2.
-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2.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8』, 2018.
- 나민주·오창걸·이길재·차지철,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설정 모형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 박기백,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10, pp. 1~28.
- 박기백·김형준,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10.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연구보고서 06-01,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변종석·박민규·박인호·임경은·최재혁, 『다양한 출처 자료 처리 및 통계 생산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2013.
- 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도자료, 2019. 2. 1.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9. 7. 3.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7.
-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 63~94.
- 성명재·송헌재·전병목,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송기창·김상규·윤홍주·이선호·김지연·최유리,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2018. 12.
- 오종현·김우현,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오종현·윤성주·한중석·신상화·김문정,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1.
- 유경준·김서영·홍경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통계연구』, 제23권 제1호, 통계청, 2018, pp. 1~22.
- 유승동·김주영,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2017. 8, pp. 205~223.
- 이상엽·안중석,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14-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이은경·김종면·성명재·이창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6-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이은경·윤성주,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연구보고서 15-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이현주·김진·John Hudson·Stefan Kuhner·전지현,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연구보고서 2018-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연구보고서 2012-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보고서』, 2018a.
 _____,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확대 제공』, 보도자료, 2019. 4. 11.
 _____,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 보도자료, 2018b. 11. 2.
 한국교육개발원,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5.

Aaberge, Rolf, Manudeep Bhuller, Audun Langørgen, and Magne Mogstad,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Public Services when Needs Differ,”
Journal of Public Economic, 94(9-10), 2010, pp. 549~562.
 D’Orazio, Marcello, Marco Di Zio, and Marco Scanu, *Statistical Matching: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2006.
 D’Orazio, Marcello,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atching,” Seminar Presentation
 (http://www.eustat.eus/productosServicios/datos/Seminario_55_Slides.pdf), 2013.
 Gelman, Andrew, and Jennifer Hill,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통계자료 및 웹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타
 법개정,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0. 21.
 _____,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 제30143호, 2019. 10. 22,
 2019. 1. 15,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1. 15.
 _____,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②항,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1. 15.
 _____,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②항, 헌법 제10호, 1987. 10. 29,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1. 15.
 _____,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8호, 2017. 12. 27, 일부개정,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11. 1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의료급여통계』, 2018.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_____, 『주거실태조사』, 2017.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최종 검색일자: 2019. 10. 21.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main/>, 최종 검색일자: 2019. 10. 2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

복지로, 복지서비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9. 11. 15.

_____,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395>, 검색일자: 2019. 10. 21.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누리과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430>, 검색일자: 2019. 10. 21.

주택도시시기금, 개인상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검색일자: 2019. 10. 2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검색일자: 2019. 10. 2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통계연보』,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각 자치단체별 별도 자료, 2017.

_____, 『교육통계연보』,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각 자치단체별 별도 자료, 2018.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한국감정원, 규모별 전월세전환율,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 검색일자: 2019. 7.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조사』, 2011~201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리, 4.2.2.1.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시장금리, <http://ecos.bok.or.kr/>, 최종 검색일자: 2019. 10. 21.

_____,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2. 2.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9. 3. 4.

_____,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수혜금,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9. 3. 4.

_____,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9. 3. 4.

_____,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10. 4.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일반정부(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9.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검색일자: 2019. 10. 18.

e-나라지표,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검색일자: 2019. 10. 21.

OECD.Stat, National Account,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https://stat.oecd.org>, 검색일자: 2019. 10. 16.

〈법령〉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오종현 · 김우현 · 권성오

본 연구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현물이전 규모 추정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 의료패널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가계에 귀착되는 평균적인 현물이전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17.5만원이며, 이 중 교육 및 보육을 통한 지원이 336.1만원, 의료 지원이 262.0만원, 주거 지원이 19.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처분가능소득과 처분가능 소득에 현물이전을 포함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소득 분배지표를 비교해보면 현물이전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 무상교육은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평균 9.3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는 평균 3.3만원,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평균 2.9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 가지 정책 모두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easuring Social Transfers in Kind in Korea

Jonghyeon Oh, Woohyeon Kim, Sungoh Kwon

We estimate the magnitude of social transfers in kind regarding education, childcare, healthcare, housing in Korea. In order to measure social transfers in kind, we use a variety of data such as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Korea Health Panel”, “Korea Housing Survey”, and so on. As a result, the total benefit for each household is estimated to be 6,175 thousand won on average in 2017. Specifically, the benefit from education and childcare is 3,361 thousand won, the one from healthcare is 2,620 thousand won, and the one from public rental housing is 195 thousand won. When it comes to income distribution, social transfers in kind make income distribution more equal.

In addition, we conduct simulation analys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policies such as the implement of free high school education, the reduction of annual upper limit of deductible i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the supply of 100 thousand small public rental housing. As a result, each policy increases the average benefit for each household by 93, 33, 29 thousand won, respectively. Furthermore, all the policies decreases income inequality.

■ 저자약력

오종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평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황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이은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9-11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발행	행	2019년 12월 31일
저자	자	오종현 · 김우현 · 권성오
발행인	인	김유찬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2,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8-89-8191-322-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